

통일문답

1996



통일연수원

차 례

I. 통일정책

1.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통일의 목표 또는 통일조국의 미래상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 / 13
2.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핵심내용과 그 특징은 무엇인가 / 15
3. 남북관계 및 통일환경의 변화를 감안할 때 통일에 대한 전망과 시기는 언제인가 / 17
4.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우리 국민들이 가져야 할 바람직한 통일관은 무엇인가 / 19
5.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을 구현한다는 통일정책을 추진하면서 흡수통일을 않겠다고 하는 것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가 / 21
6. 통일의 접근시각으로서 '민족공동체'란 무엇이며, 정치통일에 앞서 민족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23
7. 남북간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의 이질화 실태는 어떠하며 이를 극복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 25
8. 통일정책 추진과정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 27
9. 우리의 '남북연합'과 '북한식 연방제'의 유사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 29
10. 독일이 통일이후 겪은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었으며, 이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인가 / 31

11. 남북 예멘의 통일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일단 통일을 이룬 후에 내전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 34
12. 독일은 통일후 과거 동독지역의 주민들을 위하여 어떠한 통합정책을 실시하였는가 / 37
13. 북한의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수용하지 못하는가 / 40
14.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통일을 추진하고 있으면서도, 통일정책 추진의 기본철학으로 자유민주주의 구현을 천명하고 있는데, 이같은 두 입장은 상호 모순되는 것이 아닌가 / 43
15.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집단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통일정책의 기조는 남북한 상호 체제의 인정을 전제하고 있다. 이같은 설정법과 통일정책 기조간의 모순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 45
16. 북한이 남한을 배제하고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은 무엇인가 / 47
17. 북한체제가 갑자기 붕괴될 경우 우리의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 50
18. 통일과정에서 군사문제 협상이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문제로 여겨지는데 우리의 협상대책은 무엇인가 / 52
19. 현재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납북자 수는 얼마나 되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 54
20. 통일대비 차원에서 앞으로의 통일교육은 어떻게 전개되어야 하는가 / 55

Ⅱ. 통일환경

21. 한반도 통일에 대한 미·일·중·러의 기본입장은 무엇인가 / 61
22. 탈냉전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의 특징은 무엇이며 평화정착의 가능성은 어떠한가 / 63
23.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PEC) 활동의 실질적 진전과 두만강 지역개발계획(TRADP) 등 아·태지역에서의 다자간 경제협력이 동북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 65
24. 중국과 일본의 군사대국화 추세가 동북아 정세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 68
25. 중국은 강택민 국가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우리와의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데,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 / 71
26. 북한이 미·일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관계개선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남북관계 및 주변정세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74
27. 북한의 대중·러 군사동맹관계의 현황과 변화전망은 어떠한가 / 77
28. 중국이 경제적 개혁개방을 추진하면서도 정치적으로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있는데 경제부문에서의 자본주의화가 사회주의 체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 79

Ⅲ. 남북관계 및 현안문제

29.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에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있는데 대북정책 추진의 기본방향 및 원칙은 무엇인가 / 83

30. 북한이 남한당국 배제전략을 고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85
31. 우성호 선원송환은 남북관계 개선에 하나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는데 북한의 내부상황 및 주변정세의 변화를 고려할 때 남북관계 개선전망은 어떠한가 / 87
32.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무엇인가 / 89
33. '남북기본합의서' 와 '부속합의서' 가 채택 · 발효된 상황에서 합의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 91
34. '남북간에 체제경쟁이 끝났다' 고 하는데 남북간의 체제역량을 비교하면 어떠한가 / 93
35. 대북교섭에 있어 창구일원화보다는 민간단체간의 접촉과 대화를 적극 권장하여 교착상태에 있는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 95
36. 남북 경제교류협력은 현재의 북한체제가 공고화되도록 돋는 것이 아닌가 / 98
37. 이산가족문제 해결에 대해 남북한의 기본입장은 어떻게 다른가 / 100
38. 남북간 TV 등 언론 · 출판분야의 교류협력 방안 및 전망은 어떠한가 / 102
39. 북한을 방문하거나 북한주민을 접촉하고자 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 104
40.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남북한의 입장과 우리 정부의 경협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 / 106
41. 남북협력기금의 적립 및 운용현황은 어떠한가 / 108

42. 남북한간에 물품을 반출·반입할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110
43. 남북교역으로 손실을 입었을 때 이에 대한 보상제도가 있는가 / 112
44. 남북간 물자교역시 물품의 수송·통관 및 대금결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 114
45. 남북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이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 116
46. 남북 경제교류협력은 정부가 관여하는 것보다 경제단체나 기업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 118
47. 환경보호분야에서의 남북 교류협력방안은 무엇인가 / 120
48. 쌀지원과 관련한 우리의 대북협상이 저자세라는 일부의 지적이
있었는데, 북한에 쌀을 지원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를 통해 얻은
정책적 효과는 무엇인가 / 122
49.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의 의의와 당면과제는
무엇인가 / 123
50.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남북한
상호사찰 조항과 핵안전조치협정상의 IAEA 사찰조항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 126
51. NPT란 무엇이며, 이는 결국 기존 핵보유국만이 핵무기를 갖겠다
는 강대국의 논리에서 나온 불평등조약이 아닌가 / 128
52.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성격과 역할은 무엇인가 / 130
53.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사이에 체결된 경수로

공급협정의 구체적 내용과 그 의의는 무엇인가 / 132

54. 대북 경수로 건설지원과 관련하여 한국, 북한, 미국, 일본 등 관련국의 기본입장 및 쟁점사항은 무엇인가 / 135
55. 북한에 제공될 '한국형 경수로'란 무엇이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 138
56. 대북 경수로 건설지원사업이 공급협정의 타결로 본격화되고 있는데 우리가 강조해 온 '중심적 역할'은 무엇을 의미하며 건설비용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가 / 140

IV. 북한실상

〈정 치〉

57. 북한이 말하는 소위 '우리식 사회주의'의 특징과 문제점은 무엇인가 / 145
58. 북한의 권력구조 내에서 '수령'의 위치는 어떤 것인가 / 147
59. 북한이 주장하는 '민족대단결 10대강령'의 내용은 무엇이며, 이를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149
60. 동구사회주의권 및 소련 붕괴 이후 북한의 통치이데올로기 변용의 배경과 내용은 무엇인가 / 151
61. 김정일의 공식적 권력승계 지연사유는 무엇이며, 승계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있는가 / 153
62. 김정일이 공식승계시 권력구조의 변화가능성 및 변화형태는

어떻게 예상되고 있는가 / 154

63. 북한체제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는 무엇이며, 붕괴 가능성과 그 생존전략은 무엇인가 / 156
64. 김정일 집권시 북한의 대내외 정책변화 전망은 어떠한가 / 158
65. 김일성 사망 이후 김정일이 천명한 통치이념은 무엇이며, 그의 리더쉽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가 / 160
66. 북한 권력체제내에서 개방엘리트가 차지하는 비율과 그들이 추구하는 개방정책이 성공할 가능성은 어떠한가 / 162
67. 북한내에도 반체제 활동이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그 실태는 어떠한가 / 164
68. 북한의 공무원 채용방법과 대우는 어떠한가 / 166
69. 북한당국과 북한주민들의 남한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 168

〈경 제〉

70. 북한의 경제개방과 관련 외자유치를 위한 조치는 어떤 것이 있으며 앞으로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 되리라고 보는가 / 170
71. 북한이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설치하여 외국자본을 유치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북한의 투자유치 실적 및 전망은 어떠한가 / 172
72. 북한은 대외무역 부진으로 외화난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북한의 대외 무역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무역제일주의'를 관철하기 위한 정책은 무엇인가 / 174

73. 북한이 식량난을 겪고 있는 근본원인은 무엇이며 향후 식량문제의 해결전망은 어떠한가 / 176
74. 북한의 경제가 6년 연속マイ너스성장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제난의 근본원인은 무엇이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북한의 경제정책은 무엇인가 / 178
75. 북한의 1995년 여름 수해는 어느 정도이고 국제기구 등의 원조활동 상황은 어떠한가 / 180
76. 북한의 협동농장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결산분배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 182
77. 생산수단의 국가 및 협동적 소유를 기본원칙으로 하는 북한에서 개인소유가 인정되는 재산의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 / 185
78. 북한의 '농민시장' 이란 어떤 것이며 배급체제인 북한에서 시장의 등장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 187
79. 북한의 화폐금융제도는 어떠하며 화폐는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가 / 189

〈사회·문화·교육〉

80. 최근 북한 주민들의 사회일탈행위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원인과 실태는 어떠한가 / 191
81. 최근 북한 주민들 사이에 자본주의적 가치관이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며,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가 북한체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 193

82. 북한주민들의 주거생활 실태는 어떠한가 / 195
83. 북한의 노동당 당원(간부 및 일반당원)과 일반주민들의 생활수준을 비교하면 어떠한가 / 197
84. 북한의 보건의료정책의 실상은 어떠한가 / 199
85. 남녀평등권을 보장받고 있다는 북한 여성들의 가정과 사회에서의 지위와 역할은 어떠한가 / 201
86. 북한주민들의 관혼상제 실태는 어떠한가 / 203
87. 자본주의적 가치관이 확산되면서 북한 주민들의 직업관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 205
88. 북한 청소년문화에 서구식 문화가 유입된 실태와 이에 대한 북한당국의 대책은 어떠한가 / 207
89. 북한 젊은이들의 결혼관은 어떠한가 / 209
90. 북한 주민들이 남한의 대중가요를 부르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의 대중문화가 북한에 유입되는 경로와 실태는 어떠한가 / 211
91. 북한 주민들의 여가생활의 형태와 실상은 어떠한가 / 212
92. 남북한 언어이질화 실태와 극복방안은 무엇인가 / 214
93. 북한의 언론실태와 그 기능은 무엇인가 / 216
94. 북한의 반종교정책은 과연 변하고 있으며, 진정한 의미의 신앙의 자유는 허용되고 있는가 / 218
95. 북한 주민들의 종교생활 실태는 어떠하며, 북한내에 지하종교는 존재하고 있는가 / 220

96. 북한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할 때 선발기준은 무엇이며, 학생들은 어떤 학과를 선호하는가 / 223
97. 북한 학생들의 과외활동은 어떠한가 / 225
98. 북한의 교원 양성제도 및 교원에 대한 처우는 어떠한가 / 227
99. 북한의 특수교육 및 외국어교육 실태는 어떠한가 / 229

〈군사〉

100. 김일성 사후 북한에서 군의 위상과 역할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 231
101. 북한의 전쟁 수행 능력은 어느 정도인가 / 233
102. 북한의 준군사조직의 종류와 규모는 어떠한가 / 235

I . 통일정책

1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통일의 목표 또는 통일조국의 미래 상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

통일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 먼저 분명히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앞으로 어떤 통일을 추구해 나가고자 하는가? 다시 말하면, 지향해 나갈 통일의 목표와 미래상을 어떤 것으로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를 이루는 것이다. 만일 이루고자 하는 통일의 목표나 미래상에 대한 국민 각자의 생각이 각기 갈라져 있거나 상충되는 경우, 통일을 추진해 나가는 주체들의 통일노력이 하나로 결집되지 못하고 그 전개방향이 상반되거나 분산되어 효과적인 통일정책의 추진이 어렵게 된다.

그런데 통일목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내는 일은 그리 쉬운 일 이 아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시점에서 통일에 거는 국민 각자의 기대와 견해가 너무나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통일을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닌 우리 민족 전체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기 위한 수단으로 추구해 나가는 것이란 점을 전제할 때 국민 모두에게 바람직한 통일의 미래상은 대략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칩약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우리 모두가 이룩해 나가야 하는 통일국가는 7천만 민족 구성원 모두에게 자유와 복지,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이 함께 보장되는 하나의 민족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민족의 분단을 거부하고 기필코 통일을 이룩하겠다고 다짐하는 이유는 남북한에 흩어져 살고 있는 민족 구성원 모두가 하나로 다시 모여 좀더 자유롭고 풍요로운 가운데 오손도손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이 땅에 건설해야 한다는 대의명분 때문

이다.

따라서 아무리 통일이 시급하고 절실한 과제라 할지라도 그 결과가 민족 구성원 전체에게 좀더 나은 삶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특정한 계급이나 계층에만 이롭고 좋은 것인 반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전체를 위한다는 미명하에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본적 권리와 자유가 유린되고 개인적 복지가 희생되는 어떤 정치이념이나 제도도 통일국가의 그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둘째, 우리가 건설해 나가려는 통일국가의 궁극적 형태는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는 민족 구성원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울타리 속에서 함께 공존·공영해 나갈 수 있는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의 완전한 독립국가이다.

우리 민족은 타의에 의하여 강요된 지난 반세기 동안의 분단사를 제외하고는 1300여년 동안 민족을 단위로 하나의 생활권과 체제 아래 살아온 특별한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다. 신라가 3국을 통일한 서기 676년 이래 금세기 중반에 이르는 유구한 역사를 통해 수많은 외침과 환난 속에서도 찬란한 전통문화를 꽂피우는 가운데 민족적 단일성을 유지해 왔던 것이다. 이러한 남다른 역사적 경험에서 사실상 두개의 국가가 병존하는 것을 의미하는 연방제나 국가연합방식의 통일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같은 민족이 하나로 통합된 이념과 제도 하에서 함께 살아갈 때 일종 역동적인 발전을 기할 수 있어 민족 전체의 복지와 자존을 드높여 나갈 수 있으며 인류 공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1990년대에 접어들어 탈냉전과 함께 새로운 국제적 조류의 하나로 등장한 ‘신민족주의’의 추세에서 시사되는 생생한 교훈이기도 하다.

2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핵심내용과 그 특징은 무엇인가

1994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천명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통일의 기본철학 : 자유민주주의
- ②통일의 3대원칙 : 자주 · 평화 · 민주
- ③통일의 과정 : 3단계의 점진적 · 단계적 통일
 - 제 1 단계 : 화해 · 협력(적대 · 대립관계 → 화해 · 협력관계)
 - 제 2 단계 : 남북연합(공존공영 · 평화정착 → 민족공동체 형성)
 - 제 3 단계 : 통일국가완성(1민족 1국가)
- ④통일의 미래상 : 자유 · 복지 · 인간존엄성이 보장되는 선진민주국가

이와 같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통일 민족사를 능동적으로 끌어갈 국민적 의지와 자신감을 토대로 그동안 우리 정부가 꾸준히 추구해 온 통일정책구도를 명확히 하면서 앞으로의 대북정책 추진방향을 분명히 제시한 데 그 의의가 있다.

- 다음으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①통일철학 · 통일원칙 · 통일의 미래상을 분명히 제시하였다.
 - ②민족공동체 건설을 통해 국가통일로 가는 단계적 과정을 분명히 하였다.
 - ③통일의 주체는 민족구성원 모두임을 분명히 하였다.

④ 점진적·단계적 통일이 기본 입장이지만, 예기치 않은 통일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분단종식을 위한 우리의 주도적 역할과 의지를 표명한 것이며, 나아가 남북관계의 새국면에 부응하는 종합적 통일정책구상을 천명한 것이다. 그리고 통일정책의 패러다임으로 '민족공동체'를 강조하면서 가공적인 국가체제의 조립보다 '더불어 살아가는 민족공동체 건설'에 우선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3

남북관계 및 통일환경의 변화를 감안할 때 통일에 대한 전망과 시기는 언제인가

한반도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첫째, 국제적인 여건과 대외적 통일환경의 성숙, 둘째, 남북관계의 변화와 대내적 통일환경의 성숙 셋째, 통일주도능력과 범국민적 통일의지의 결집이라는 3개 조건이 고루 성숙되어야 한다.

우선 국제적인 여건은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소련의 몰락으로 인한 탈냉전시대가 전개되면서 예멘·독일이 통일을 실현함으로써 우리에게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리고 대외적 통일환경은 우리의 북방정책의 성공으로 러시아·중국과 수교를 함으로써 주변국가의 한반도정책에 변화를 가져왔다.

다음으로 남북관계의 변화와 대내적 통일환경은 '남북한 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채택으로 통일실현의 기반을 마련하는 듯 하였으나, 북한이 합의된 내용을 실천하지 않음으로써 무산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한편 북한의 핵문제가 중대한 장애물이 되었고, 돌연한 김일성의 사망 이후 남북관계는 경색국면으로 치닫게 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북한사회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하는 것이 주요한 변수로 되고 있다.

끝으로 우리의 통일주도능력과 통일의지의 성숙은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문민정부의 출범으로 어느 때보다도 높이 평가되고 있다.

통일문답

통일전망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는 북한이 아직은 ‘우리식 사회주의’를 내세워 김정일체제 유지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김일성 사망과 세계사의 흐름, 국제정세의 변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개혁·개방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으리란 것이 일반적이다.

대통령자문기관인 21세기위원회의 통일전망을 참고로 소개하면 1995~2000년에 공존과 사회·경제통합단계, 2005~2010년에 정치통합단계, 2020년에 완전 통일단계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4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우리 국민들이 가져야 할 바람직한 통일관은 무엇인가

우리 민족의 통일은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당위적 통일조국의 미래상을 바탕으로 남북이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른바 우리식 사회주의에 집착하고 있는 북한체제의 변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바람직한 통일관 문제는 우리 국민이 어떠한 생각을 갖을 때 북한체제의 변화를 촉진시켜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느냐의 문제로 압축된다.

우선 온국민이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체제로 남북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통일조국의 당위적 미래상에 관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 인류문명 사적 차원에서 볼 때 20세기는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간의 치열한 이데올로기 경쟁의 세기였으며, 이 체제경쟁은 결국 공산권이 붕괴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로 일단락되었다.

노동자의 비참한 생활상 등 초기 자본주의 단계의 사회적 모순이 인류 문명사에서 사회주의 이념을 받아시키고, 이어 1917년 제정러시아에서 볼셰비키혁명이 성공하여 사회주의 정권이 처음으로 출범하여 스탈린시대를 거쳐 소련공산주의가 절정을 이루면서 지구상에 많은 사회주의 국가가 속출하였으나 경제발전면을 위시하여 사회주의체제의 한계성이 노정되면서 결국 소련과 동구공산권이 붕괴되고 중국이 개혁·개방정책을 추구함으로써 이데올로기 경쟁은 결국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로 종막을 고하고 말았다. 따라서 민족의 발전과 번영을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자

본주의 체제를 바탕으로 민족통일을 이루는 것이 민족사와 세계사적 당위이며 우리 국민들이 이같은 확고한 신념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바람직한 통일관이다.

다음으로 북한 대남전략의 실체에 관한 정확한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과 미국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남조선'의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키고 남북의 정당·사회단체 그리고 해외동포 대표들이 대민족회의를 개최하여 연방제로 통일하자는 북한의 통일방안은 전한반도를 공산화시키기 위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전략'의 일환임을 정확히 인식하여 북한의 교활한 대남 공산화 전략을 원천적으로 봉쇄시켜야 한다. 북한과 미국간의 평화협정 체결주장은 우리나라를 미제의 식민지로 몰아 국가적 정통성을 말살하려는 것이고, 주한미군의 철수 주장은 한반도의 군사력 불균형을 조성시켜 남침기회를 포착하려는 것이고, 국가보안법 철폐주장은 남쪽에서 공산활동의 자유를 보장받으려는 것이며, 대민족회의를 개최하여 연방제로 통일하자는 것은 공산화통일로 한발 다가서자는 것이다.

끝으로 바람직한 통일관 정립을 위하여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적 재도약과 민주정치의 선진화를 반드시 달성하여 아시아·태평양시대의 중심국가로 우뚝 서는 것이 민족통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확고부동의 신념을 갖고 이를 반드시 관철시키는 일이다. 우리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우뚝 선 선진국가로 부상하여 북한체제와의 차별성이 가속화되면 이는 필시 북한 당국으로 하여금 대남공산화 전략의 한계성을 자인하고 남북간의 발전격차를 메꾸기 위하여 북한체제 개혁을 촉진시키는 긍정적 기여를 할 것이며, 북한체제가 개혁·개방의 길로 치달을 때 민족통일은 가시권으로 들어올 것이기 때문이다.

5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을 구현한다는 통일정책을 추진하면서 흡수통일을 않겠다고 하는 것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가

흡수통일이란 용어는 사실 1990년 10월 3일 독일통일 직후인 1991년 신년사에서 김일성이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김일성은 “먹고 먹히우는 통일”을 흡수통일로 규정하여 거부하면서 연방제통일의 정당성을 강조했었다. 독일통일은 동구공산권이 전반적으로 붕괴되는 과정에서 동독지역에서 인민봉기가 일어나 동독주민이 서독으로 탈출하는 사태로 발전되면서 동독정권이 붕괴되고 마침내 동독지역에서 총선거가 실시되어 동독주민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하여 서독에 편입되어 통일이 이루되었으므로 분명 서독정부에 의한 강제적 통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서독이 일대일로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하여 이루어난 통일이 아니고 동독이 서독 헌법질서 아래 일방적으로 편입되어 이룬 통일이라는 점에서 김일성이 흡수통일로 단정할 만한 요인을 입증하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우리 정부의 통일방안은 화해협력단계, 남북연합단계를 거쳐 궁극적으로 하나의 통일국가를 건설하려는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으로서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체제하의 통일을 분명히 지향하되 결코 북한체제에 대한 의도적이며 강압적인 붕괴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결코 흡수통일정책이라고 말할 수 없다. 더욱이 우리의 통일방안은 남북한간의 교류·협력관계를 활성화시키고 남북연합을 실현 시킴으로써 민족경제, 사회·문화공동체를 형성시킨 바탕위에서 남북이

통일문답

공정히 참여하여 통일헌법을 제정하고 그 헌법절차에 따라 남북 자유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을 실현시키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북한체제의 강제적 붕괴를 추구하지 않는다.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은 북한체제를 조기 붕괴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북한체제의 점진적인 체제변화를 유도하여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이미 결론이 난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체제로 남북이 하나가 되어 민족의 발전과 번영을 보장받을 수 있는 체제로 통일을 이룩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통일정책이 흡수통일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통일된 조국의 체제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냐 아니면 사회주의 체제냐의 문제가 아니라 통일정책 추진과정이 일방적이냐 아니면 타협적이냐, 강탈적이냐 아니면 자발적이냐의 문제로 압축된다고 말할 수 있다.

6

통일의 접근시각으로서 ‘민족공동체’란 무엇이며, 정치통 일에 앞서 민족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다수의 인간들이 혈연이나 지역 등 상호간의 공통성을 기반으로 경제적 생활 등 일정한 목표를 지향하여 결집된 집단을 사회학적 개념으로 공동체(Community)라고 일반적으로 호칭한다. 예를 든다면 혈연을 기반으로 가족, 씨족, 민족공동체를, 지역을 기반으로 촌락, 부락, 국가공동체를 생각해 볼 수 있으나 그외에도 구성원간의 상호공통성과 지향하는 목적에 따라 종교, 문화, 예술 등 각 영역에서 수많은 공동체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간에는 상호간의 동질성을 바탕으로 강력한 정서적 일체감이 형성되어 심리적 안정이 유지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민족공동체는 오랫동안 민족사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민족의 동질성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로서 단일 민족공동체가 원칙이나 중국이나 미국 등 광역국가에서 볼 수 있듯이 여러 민족이 역사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다민족공동체도 물론 가능하다. 그리고 민족공동체는 민족경제공동체, 민족사회문화공동체 그리고 민족정치공동체 등의 구성요소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우리 민족은 실로 오랜 역사를 자랑하여 신라통일 이래만 따져도 1300년 가까운 통일 민족사를 면면히 이어 오면서 찬란한 민족문화를 꽂피워온 자랑스러운 민족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최근세에 이르러 국제정세에 어두워 서구선진문물을 재빨리 흡수하지 못한 잘못으로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되었으며, 해방후는 민족의 의사에 반하여 국제정치의 제물이

되어 분단을 강요당한 이래 어언 반세기가 넘어가고 있다. 그동안 남북 한간에는 이데올로기 대립을 바탕으로 완전히 이질적인 체제가 정착되면서 이제는 단일민족임이 무색할 정도로 민족적 이질화가 계속 심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그런데 남북간의 체제이질화가 계속 심화되어진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체제를 각각 채택하고 있는 정치적 요인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통일은 이제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정착된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체제를 통일조국의 당위적 미래상으로 설정하고 남북이 하나가 되어 경제적, 사회·문화적 그리고 정치적 민족공동체를 형성시키는 것이다.

이같은 민족공동체의 형성은 남북의 외형적·제도적 통일, 즉 정치적 통일은 물론 내면적·정서적 통합, 즉 사회·문화적 통합(Integration)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그런데 북한이 이른바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수하겠다는 한반도의 분단상황에서 하루아침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정치적 통일을 이룬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혹 기적적으로 정치적 통일을 이루었다고 하여도 사회·문화적 통합이 이루어져 남북한간의 고질적 적대의식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정치적 통일은 절대로 오래 지속되지 못할 것이다. 반면, 비록 정치적 통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오랜 민족문화를 바탕으로 남북한간의 사회·문화적 교류협력은 가능할 것이며, 또 상호간의 필요성에 따라 경제적 교류협력도 물론 가능할 것이다. 즉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공동체 형성을 바탕으로 정치공동체로 이어지는 것이 통일로 가는 순리이다. 그러므로 화해 협력단계, 남북연합단계를 거쳐 하나의 통일국가를 건설하려는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도 이같은 당연한 통일의 순리를 반영한 것이다.

7

남북간 정치, 경제, 문학, 교육 등 각 분야의 이질화 실태 는 어떠하며 이를 극복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오늘날 남북한간에 존재하는 이질화 현상은 오랜 분단으로 인한 ‘자연적 이질화 현상’도 있지만, 북한이 폐쇄된 사회에서 인위적으로 진행시킨 ‘인위적 이질화 현상’도 있다.

북한은 그동안 언어를 개조하고 미풍양속과 전통예절을 훼손시키는 등 우리 민족의 전통문화를 변형·말살시켜 왔다. 이른바 ‘공산주의적 새 인간 양성’이라는 목표 아래 인간개조교육과 사상학습을 실시함으로써 ‘교육의 이질화’를 심화시켜 왔다. 또한 북한은 주체사상이라는 유일사상과 김일성 부자의 우상화정책에 따라 독재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정치의 이질화’를 심화시켜 왔다. 뿐만 아니라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를 실시함으로써 ‘경제의 이질화’를 심화시켜 왔다. 그리고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 아래 북한주민들의 사고와 행동을 집단화·일체화시킴으로써 ‘문화의 이질화’를 심화시켜 왔다.

이와같이 남북한간에 심화된 이질화 현상을 극복하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은 ‘인위적 이질화 정책’을 과감히 탈피해야 하고, 한편 ‘자연적 이질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북한사회를 개방하고 다방면의 교류와 협력의 길로 나와야 한다.

둘째, 남북한은 언어와 풍습 등 공동체형성이 비교적 쉬운 분야에서부터 동질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기나긴 민족사의 맥락에서 볼 때 분단기간은 짧게 볼 수도 있다. 한 껏 줄의 민족성원간에는 아무리 단절된 분단세월을 살았어도,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민족의 동질성은 쉽게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8

통일정책 추진과정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정치이념으로서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 나라에 있어 정부의 모든 정책이 그려하듯 대북정책을 비롯한 통일정책의 전개는 국민적 합의와 참여가 뒷받침되어야 정책으로서의 정통성을 인정받게 되고 그 전개과정에 필요한 강력한 추진력을 갖추게 된다.

더욱이 한반도에서의 통일이 단순한 염원의 차원이 아닌 현실적 실천 과제로 등장한 오늘에 와서는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롯한 통일정책의 추진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참여의 확충문제는 더욱 요긴한 것이 되고 있다.

그러나 오늘과 같은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국민 각자가 가지는 문제의식이나 시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특정한 문제에 대해 모든 사람들의 뜻과 의견들을 모아 하나로 묶고 공감대를 넓혀 나가는 일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특히 사안이 개인적 또는 집단적 이해관계에 결부되는 것 이거나 개인의 장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될 경우 이에 대한 국민들의 주장이나 견해는 더욱 분분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통일정책 전개에 필수적인 요소인 국민적 합의는 어떻게 창출되는 것인가? 일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정부의 정책이란 합의된 국민여론의 수렴결과요 그 표출이기도 하다. 국민여론의 수렴은 그 과정에서 반드시 국민들의 개방된 논의와 토론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다양한 통일논의의 전개를 통한 광범한 의견의

통일문답

수렴과정이 없이는 국민적 합의의 창출이 거의 불가능하게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의 통일논의는 통일정책이 가지는 특수성과 복잡성 뿐만 아니라 이를 제약해 온 여러가지 현실적 여건 때문에 민간 수준의 경우 적지않게 침체되어 온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오늘에 와 이러한 논의를 제약해 온 종래의 현실적 여건은 크게 변화되었다.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 걸친 민주화의 추진과 함께 전향적인 대북 및 통일정책의 추진, 탈냉전의 추세에 따른 남북한 이데올로기적 대결의 완화 경향, 거의 무제한적인 언론자유의 향유 등은 일층 활성화된 국민적 논의를 보장해 주는 환경적 여건이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통일문제에 대한 각계각층의 논의는 더욱 개방화되고 활성화 됨으로써 대북정책을 비롯한 제반 통일정책의 수립과 그 추진과정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해 줄 국민적 합의기반의 확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9

우리의 ‘남북연합’과 ‘북한식 연방제’의 유사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우선 우리의 ‘남북연합’과 ‘북한식 연방제’의 개념과 성격부터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는 제2단계로 남북연합 단계가 설정되어 있다. 남북연합이란 남북이 통일을 지향해 가는 과정에서 한반도에 두개의 정치적 실체가 존재한다는 현실을 인정하는 바탕에서, 공존공영해 가면서 민족사회의 동질화와 상호 통합을 촉진해가는 과도적 단계이다. 즉 남북관계가 민족내부의 특수관계임을 전제로 한 정치적 체제연합인 것이다. 남북관계가 특수관계라는 것은 남북기본합의서 전문에 “쌍방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규정함으로써 남북간에 이미 합의되어 있다.

남북연합이 남북관계를 ‘민족내부의 특수관계’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간의 조약에 의한 국가연합과 그 성격이 다르며, 하나의 헌법에 의하여 국가의 최종형태로 나타나는 일반적인 연방제와도 또한 그 성격이 다르다.

우리가 남북연합을 통일과정의 중요한 단계로 설정하고 있는 것은 오늘날 남북간의 이념과 체제의 차이, 분단의 지속에 따른 이질화 현상 등을 고려할 때 일시에 정치적 통일을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단계를 통하여 남북이 우선 같은 민족이라는 입장에서 공존공영해 가면서 민족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민족

공동생활권을 형성하여 점진적·평화적 방법으로 정치적 통일의 기반을 구축해 가자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남북관계의 현실을 무시한 채 일시적·정치적 통일을 주장하고 있으며, 그러한 주장의 전략적 표현이 남북연방제이다. 북한이 연방제를 처음 제기한 것은 1960년 김일성의 8·15경축연설에서이며, 이때 북한은 과도적 조치로서 남북연방제를 하자고 했었다. 그후 1973년 6월 23일 '조국통일 5대강령'에 나타난 '고려연방제'를 거쳐, 1980년 조선노동당 6차대회에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으로 변형시키면서 '과도적 조치'가 아니라 '완결된 통일형태'라고 했다. 또한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주요내용은 '고려민주연방제'와 같이 하면서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에 기초한 연방제'라는 것을 제기하면서 "제도통일은 후대에게 맡기자"고 하였다. 그러니까 북한의 연방제는 '과도적 조치→완결된 형태의 통일국가→2제도에 의한 연방제'로 상황에 따른 전술적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북한이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영문으로 Confederation을 쓰고 있어서 '연방제(Federation)'인지 '국가연합'인지 모호한 점도 있지만, 그들이 완결된 통일형태로서의 연방제를 주장하고 있다면 남북연합과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른 것이며, 만약 그들이 국가연합적인 연방제를 주장하고 있다면 우리 방안의 과도단계인 남북연합과 유사한 점이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연방제 제의중에는 우리의 국가보안법 폐지, 공산주의 정당·사회단체 및 개인의 활동보장, 주한미군의 철수, 남한에서의 '인민정권' 수립 등 선결조건이 제시되어 있으며, 또 현실적으로 한 국가 안에서 두 체제 또는 두 제도에 의한 연방제는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

10

독일이 통일이후 겪은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었으며, 이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인가

독일이 통일후 겪은 심각한 문제들은 첫째, 정치적 과거청산 문제이다. 이것은 과거 동독 공산정권에 의한 피해자와 가해자에 관한 문제인데, 피해자 10여만명의 복권·보상을 위해 신청을 접수하여 조사·처리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공산당과 정권기관 등의 권력남용자로 분류된 6천여 명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원칙으로 처리하고 있다.

둘째, 동독지역에서의 행정·사법체계의 구축문제를 들 수 있다. 먼저 행정분야에 있어서 새로운 통일독일의 행정체계에 적합한 지방행정 인력의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동독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자격심사와 재교육을 거쳐 재임용하거나 일부 서독 공무원들을 파견·전보하여 해결하였다. 사법분야에 있어서는 동독지역 주민들의 법률적 보호와 사법적 공백현상을 방지하고 새로운 사법제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구 동독의 사법요원들을 재교육시켜 자격심사를 거쳐 선별 재임용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셋째, 동독지역의 경제를 재건하는 문제였는데, 통일후 시장경제체제에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들의 도산,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낙후와 부족, 신규투자의 미미, 실업자의 속출로 인하여 동독경제는 실제로 붕괴상태에 처해 있었다. 통일독일 정부는 신연방주 경제재건계획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다. 여기에는 막대한 경비가 소요되는데 통일에 필수불가결했던 경비(좁은 의미의 통일비용)와 동·서독 주민간

의 생활격차 해소를 위한 보조금뿐만 아니라 동독재건을 위한 시설현대화와 신규투자 등에 막대한 비용(넓은 의미의 통일경비)이 투입되고 있다.

넷째, 소유권 등 재산권의 처리문제를 들 수 있다. 소련 군정시 소위 점령고권에 의한 토지개혁으로 몰수된 재산권에 대해서는 보상을 원칙으로 하여 처리키로 함으로써 비교적 수월하게 해결해 가고 있으나, 그후 동독정부에 의하여 몰수당한 재산권에 대하여는 원소유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원칙으로 함에 따라 200만여건의 반환청구소송이 계류되어 있다. 이로 인한 소유권의 불확정 때문에 신규투자에 장애를 겪고 있다.

다섯째, 가장 심각한 문제는 히틀러 독재에 이어 계속된 동독정권에서 교조적·타율적 생활방식에 길들여진 동독 주민들이 새로운 민주주의 제도와 시장경제질서에 쉽게 적응하지 못함으로써 겪는 심리적 갈등문제이다. 재산권의 불확실로 인한 위기감, 실직, 그리고 서독 국민들에 대하여 2등국민이라는 열등감, 사고방식의 괴리 등으로 심하게는 사회심리적 병리현상까지 보인다. 이 문제에 관한 한 아마도 한세대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의견들을 모으고 있다.

그러면 이와같은 문제들이 왜 대두되었을까,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것은 첫째, 동독이 붕괴된 상황에서 동독의 자생력이 회복되지 않은 채 급속하게 통일한 때문이며, 둘째, 서독은 자신들의 경제력을 과신하고, 동독 주민들은 통일이 곧 풍요로운 생활을 보장한다는 환상을 가지고 안이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며, 셋째, 계속된 교류에도 서독이 동독의 경제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때문이며, 넷째, 통합후 동독 사회주의 체제의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에 수반되는 어려움을 과소평가한 때문이며, 다섯째, 서독정부가 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프로그램을 갖고 있지 못했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와같이 상대방에 대한 실태파악이 미흡하고 급작스런 통일에 대비한 준비가 불충분할 때, 상황에 떠밀려 통일하게 된다면 그 뒤에 따르는 문제와 혼란은 필연적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통일은 착실한 준비 속에서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하여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겠다. 통일문제를 현실 문제로 인식하고 어느날 갑자기 통일을 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 되었을 때라도 이에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놓아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대비가 미흡한 속에서 통일할 경우라도 통합과정에서 온 국민들의 슬기를 모으고, 통일에 따르는 고통을 분담하려는 의지를 다져야 할 것이다.

11

남북 예멘의 통일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일단 통일을 이룬 후에 내전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아라비아 서남부지역에 위치한 예멘은 아랍어를 사용하며 회교를 신봉해 온 같은 민족이 3000년이 넘게 함께 살아온 곳이다. 이곳이 자리적으로 남부지역(남예멘)과 북부지역(북예멘)으로 나뉘게 된 최초의 분단은 1914년 당시 양지역의 분할 지배국이었던 오스만 터키와 영국이 북예멘과 남예멘의 경계를 일방적으로 합의 확정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서로 다른 정치체제(북은 입헌군주제, 남은 사회주의 체제) 아래 민족적 분단과 이념적 갈등 속에 살게 된 시발은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후 북예멘지역이 오스만 터키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시나를 수도로 왕정을 선포하고, 이어 1962년 9월 26일에 군사쿠데타가 일어나 예멘아랍공화국을 수립한 이후부터라 할 수 있다. 그동안 남예멘지역에서는 1967년 11월 30일을 기해 1839년 이래 계속된 영국의 보호령에서 독립하여 사회주의 정권인 예멘인민민주주의공화국을 수립함으로써 양지역간의 민족적 분단은 체제적 분단으로 발전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분단배경을 가진 남북 예멘관계는 1972년 9월 이후 두 차례에 걸친 국경에서의 무력충돌을 비롯하여 갈등과 긴장이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양측 정치지도자간의 통일을 위한 협상이 18년동안 계속되어 왔다. 주로 양국 정상간 회담 형식으로 이루어진 통일협상은 1972년 11월 26일~28일 최초로 리비아 트리폴리에서 양측 정상이 만나 평화적 통일원칙에 합의함으로써 시작되었다. 그후 네차례에 걸친 정상회담과

양측 정치지도층간의 협상이 계속된 끝에 1990년 4월 19일 드디어 통일 선포와 과도정부 조직안에 쌍방이 최종 합의 서명함으로써 남북 예멘의 정치적 권력배분 방식의 합의통일은 동년 5월 22일을 기해 성취되기에 이른 것이었다.

그러나 통일된 예멘의 향후 진로는 순탄한 것이 못되었다. 통일이 된 후에도 가시지 않고 남아 있던 양측 정치세력간의 상호 불신과 기득권 수호를 위한 이해 대립은 구세력간의 갈등으로 비화되고, 이것이 급기야는 군사적 무력충돌을 야기함으로써 통일 4년이 채 안되는 1994년 5월 5일을 기해 남북 예멘간에 내전이 발발되기에 이르고 만 것이다.

남북 예멘이 합의통일을 이룬 이후 4년만에 이같이 내전으로 치닫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은, 첫째로 통합 당시 남북 예멘간 권력배분이 50 대 50의 분점상태였던 것이 통일 후 실시된 총선 결과 인구비에 있어 4 대 1의 열세에 있는 남예멘이 의회 총의석의 5분지 1밖에 차지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합의된 권력구도가 깨지게 되었다는 점과, 둘째로는 남북간의 권력의 지주가 되는 군대를 외형적으로는 하나로 통합하였으나 실질적인 지휘체계에 있어서는 통일 이전의 별도 체제를 유지한 채 같은 부대안에 병존하는 방식으로 유지케 함으로써 남북 예멘의 구정치세력의 영향권하에 둔 점이 내전을 격화시킨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내전을 야기한 근본적인 원인은 남북 예멘의 통합이 두 국가의 사회·문화적 통합이나 장기적인 민간 수준의 다각적인 교류·협력의 기회가 없이, 환연하면 국민 절대 다수의 참여가 없는 상태에서 권력 엘리트간에 기득권의 보호와 편의를 위한 정치적 합의에 의한 통합만을 서둘러 이룩된 것이었기 때문에 국민적 통합기반이 취약했던 때문이라 분석 되는 것이다.

이같은 예멘의 통일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통일 반대세력의 활동을 우려하여 정치지도자간에 통일협상을 비공개로 추진하고 서둘러 통일을 선포한 결과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 기반이 광범위하게 구축되지 못하였고, 이러한 국민적 합의의 뒷받침 없는 정치적 통합작업의 강행이 통일후 정치·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둘째로, 오랜 갈등관계에 있던 쌍방의 상호 불신과 대결의식이 청산되지 않은 채 정치적 타협을 통해 서둘러 맺은 통일합의는 실천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게 되어 원만한 통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셋째로, 통일전 각기 유지되었던 쌍방의 군대가 실질적으로 하나로 통합되지 못한 채 정치적 통일만 이루어지는 경우 이것이 불만 정치세력들의 영향하에 두어짐으로써 내전의 불씨로 남게 된다는 점이다.

12

독일은 통일후 과거 동독지역의 주민들을 위하여 어떠한 통합정책을 실시하였는가

통일과정에서 독일인들은 통일이후 구 동독지역에 소위 '라인강의 기적'에 펼칠 만한 '엘베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으리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통일 직후만 하더라도 서독인들은 스스로의 역량으로 민족분단을 극복해 냈다는 자부심과 함께 시장경제의 역동성과 자신들의 축적된 경제력으로 단 몇년이면 통일후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다. 구 동독인들은 그동안 TV를 통해서 보아온 서독인들의 물질적 풍요와 생동감 넘치는 자유를 그들 자신도 곧 누리게 되리라는 장미빛 환상에 빠져 있었다. 그 당시에는 오직 '독일은 하나다'라는 명제가 지배하고 있었다.

그러나 곧 당면한 실업문제, 재산권문제, 과거청산 문제, 통일비용, 사회심리적 문제 등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를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문제들 앞에서 양쪽 모두 높은 장벽과 깊은 골을 사이에 둔 커다란 거리감에 빠졌다. 특히 동독주민들의 서독주민들에 대한 열등감과 새로 적응해야 하는 환경 앞에서의 좌절감은 심각하였다.

그러면 통일독일이 독일주민 특히 동독주민들에 대하여 어떤 통합정책을 펼쳤는가? 어찌보면 독일정부가 통일이후 동독지역에 시행한 모든 정책이 다 주민통합정책의 고리를 이룬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동독지역의 재건을 위한 일련의 조치들 즉 경제재건을 위한 재정적 지원,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 조치들은 물론이거니와, 과거정권으로부터 피

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한 복권 및 보상조치나 사회심리적 안정감을 주기 위한 지도자들의 어루만짐 등이 모두 이에 속한다.

특히 사회심리적 갈등과 불만을 해소하고 국민적 통합을 조속하게 이루려는 지도자들의 노력이 특히 인상적이다. 그 중에서도 바이체커 대통령과 뒤이은 헤어초크 대통령 등은 중용에 입각한 포용력 넘치는 설득과 충고와 격려로써 여론분열의 위기 때마다 감동 깊은 호소력을 발휘하였다.

내각을 이끄는 콜 총리가 통합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분분한 여론의 포화속을 정면 돌파하여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장래에 대한 기대와 자신감을 고취시켰다고 하면, 바이체커 대통령은 한단계 높은 조망과 중도적 입장에서 동·서 양쪽의 독일국민들에게 위안과 격려, 그리고 책임과 독려를 함으로써 지도력을 유감없이 보여 주었다.

즉 동독인들에 대해서는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명예로운 시민혁명을 이룩하고 서독과의 통일이라는 현명한 선택을 하였으며, 사회주의 체제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이라는 사상 유례없는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있는데 대하여 찬사를 보내는가 하면, 서독이 누리는 번영과 자유는 3~4년만에 이룩한 것이 아니라 40년이 넘는 장구한 세월이 걸린 것임을 인식시키고 인내를 요구하였다. 반면 서독인들에 대해서는 동독인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하여 깊은 이해심을 가질 것과 통일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지원과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고 설득하였다.

근 반세기에 걸친 세월동안 유지돼 온 상이한 체제가 한 체제로 통일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모험이며 가히 전쟁과 다름없음을 인식하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가는 위업의 달성을 위해 상호 이해하고 양보함으로써 국민적 단합을 이룩해야 한다고 역설한 것이다.

독일 역사상 통일이라는 대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현명한 지도자를

만난 독일인들은 아마도 아주 빠르게 그리고 조화롭게 국민적 통합을 성취할 것으로 믿어진다.

13

북한의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수용하지 못하는가

우리가 북한측의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수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적으로 말해서 그 내용 자체와 시대적 상황에 따른 변용과정에서 드러난 논리적 허구성과 전술적 기만성 그리고 비현실성 때문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첫째, 상대방체제를 부정하는 선결조건을 제시해 놓고 이 조건이 성취돼야 비로소 연방제를 실시할 수 있다고 하면서,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그대로 두고 용인하는 바탕에서 연방제를 실시하자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자가당착이며, 더욱이 대화 상대방의 체제를 부정하는 것은 평화적 통일방안이라 볼 수 없다.

둘째, 통일된 뒤에 교류·협력하고 민족대단결을 도모하겠다는 '10대 시정방침'은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실현시켜야 할 남북한 사회개방과 교류·협력을 통한 민족공동체 형성을 거부하는 논리로서 통일방안이라기보다는 정치선전에 불과한 것이다.

셋째, 북한은 연방의 개념을 대외적으로는 공존지향적 통합유형인 Confederation을 쓰면서, '10대시정방침' 중에 민족연합군 창설이나 대외정책의 일원화, 즉 대외주권을 연방정부만이 행사하는 등 전형적인 연방제(Federation) 형태를 취하고 있다. 용어의 이중적 사용을 통하여 혼동을 야기하는, 결과 속이 다른 기만일 뿐더러 더구나 연방제에 필수적인 통일된 연방헌법을 부정하는 것은 그 자체가 허구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넷째, 선결조건을 문제삼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상과 제도가 서로 다른 체제간에 연방을 형성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으며, 역사적 선례도 찾아 볼 수 없다. 이는 연방제의 전형인 미국이나 러시아나 스위스나 여타 연방국가들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다섯째, 같은 민족간에 굳이 연방제를 실시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을 저들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다. 즉 북한의 '정치사전'에 보면, 연방제는 "문화, 풍습, 언어가 다른 이민족간에 실시하는 국가구조 형태의 하나"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들 스스로가 남북간에 연방제를 실시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란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북한은 1960년 8월 14일 김일성 연설을 통하여 '과도적 통일형태'로서 연방제 통일방안을 처음 발표한 이래, 1970년대초(1973. 6. 23)에는 '고려'라는 국호를 첨가하여 '고려연방제'를, 1980년대초(1980. 10. 10)에는 '민주'라는 첨가하여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제시하였다. 여기서는 과거와 달리 '통일의 최종형태'라고 입장문을 바꾸었다. 그러더니 1991년 신년사에서는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에 기초한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는 등 남북간 국력의 차이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어 왔다.

또한 북한은 1993년 4월에 개최된 제9기 5차 최고인민회의에서 대남 통일전선전술에 입각한 소위 '전민족 대단결 10대강령'과 '4대 전제조건'을 제시하였다. 이는 북한의 대남통일 공세가 점차 수세적·방어적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북한이 이렇게 꾸준하게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연방제 개념이 내포하고 있는 평화공존성을 부각시킴으로써 내외 여론을 혼혹시키려는 데 있으며, 또한 우리 사회의 감상적 통일논의를 부추기고, 우리의 국가안보태세를 약화시켜 선 남조선혁명,

통일문답

후 남쪽의 연공정권과 합작(연방, 연합, 연립)함으로써 적화통일을 성취하겠다는 시대착오적인 대남기본노선을 포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북한의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은 남북 평화통일방안이 아니라 대남적화전략에 입각한 위장된 평화전술에 불과한 것이라 단정하는 것이며, 여기에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근거가 있는 것이다.

14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통일을 추진하고 있으면서도, 통일정책 추진의 기본철학으로 자유민주주의 구현을 천명하고 있다. 이같은 두 입장은 상호 모순되는 것인가?

우리가 분단된 조국의 통일 성취를 포기하지 않는 한 폭력이나 무력에 의한 통일이 아닌 평화통일, 다시 말하면, 상대방인 북한과 대화와 협상을 통한 통일밖에 다른 대안이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왜냐하면 통일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행복과 발전을 현실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분단의 질곡에서 벗어나 좀더 풍요롭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해 나가기 위한 수단으로 추구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 통일의 결과가 많은 사람에게 더 큰 고통이나 희생을 강요하거나 지금보다 더 불행한 삶을 가져오는 것이라면 굳이 통일을 추구해 나갈 필요가 없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통일된 이후에 민족 전체의 삶이 더욱 복되고 풍요로운 것이 되려면 앞으로 건설해 나갈 통일국가의 정치체제는 적어도 다음 두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것이어야 한다. 그 하나는 민족 구성원 모두가 동격의 지위를 인정받고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며, 동등한 참여의 기회가 주어지는 민주질서가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민주체제를 존중하는 모든 사상이 허용되는 다원주의 정치체제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국가로서 갖추어야 할 양보할 수 없는 최소한의 기본조건으로서

위의 두가지를 능히 보장해 줄 수 있는 현존하는 지도이념으로는 자유민주주의가 있을 뿐이다. 정치이념으로서 자유민주주의가 비록 최고·최선의 것이라 할 수는 없을지라도 오늘날 전체 인류가 보편적으로 추구해 나가는 최고의 가치인 자유와 민주, 복지를 현실로 구현해 나가는 데 있어 지금까지 인류가 발견해 온 어느 제도나 이념보다도 우월한 것임이 이미 역사로서 입증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의 ‘자유’ 대신 ‘평등’의 이념을 앞세우고, ‘민주’ 대신 ‘계급의 독재’를 내세워 자유민주주의를 대체해 보려 했던 마르크스·레닌주의의 혁명적 시도는 1917년 러시아에서 ‘10월 혁명’을 최초로 성공시킨 이래 70여년 동안의 실험을 거친 끝에 비효율성이 완전히 드러나고 말았다. 1990년대에 접어들어 일기 시작한 소련을 비롯한 동구 공산권의 몰락은 인간이 좀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체제로서 사회주의가 대단히 부적합한 것이었음을 충분히 입증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공산권의 대붕괴라는 역사적 교훈 속에서 세계 모든 국가가 이념적 대결에서 벗어나 자유화, 민주화, 복지화를 지향해 나가는 국제정세의 큰 흐름에 부응해 나가기 위해 입안된 우리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통일추진의 목표와 기본철학으로 그 우월성이 입증된 자유민주주의의 구현을 천명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현대국가에서 인간 중심의 자유민주주의의 추구는 세계사적 대세요, 역사발전의 진행방향에 부합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비록 북한과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통일을 기본노선으로 하고 있으나 민족 전체의 장래와 운명을 좌우하는 통일국가의 지도이념과 체제의 선택까지를 정치적 협상과 타협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는 확고한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다.

15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집단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통일정책의 기조는 남북한 상호 체제의 인정을 전제하고 있다. 이같은 실정법과 통일정책 기간의 모순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협하는 내외의 도전세력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해 나가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서 그 법적 성격은 체제수호를 위한 안보관련 형사법임과 동시에 현행 형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형사 특별법으로 존재하는 것으로서 그 운용은 극히 제한적이고 방어적인 성격을 띤다.

현행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무조건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자행한 각종 행위가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들과 결부될 때 비로소 범죄 구성 요건상의 '반국가단체'로 간주되어 적대집단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만일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대남전략을 명백히 포기하는 경우 이 법이 규율하는 적대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다.

또 국가보안법은 주로 북한의 이중적 대남전략에 대응하는 방어적 목적의 형사법일 뿐 북한체제를 전복하거나 위협하려는 목적을 가진 적극적이고 공격적 법률이 아니므로 북한을 사실상의 정치적 실체로 인정하고 있는 우리의 통일정책 기조나 남북한 기본합의서 제1조의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정신과 배치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 상대방의 체제를 하나의 정치적 실체로

통일문답

사실상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것과 실정법상 우리 체제의 안전과 생존을 위협하는 적대행위를 용납하지 않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16

북한이 남한을 배제하고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은 무엇인가

1945년 7월 27일 무조건 항복을 종용하는 연합국측의 포츠담선언을 일본이 즉각 수락하지 않음으로써 동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폭이 투하되자, 소련은 8월 8일 대일 선전포고를 하고 한반도로 물밀듯이 진격해 들어왔다. 이에 미국은 일본군의 항복을 접수하기 위한 잠정 군사분계선으로 38도선 확정안을 제기하였으며, 소련은 일본본토 분할점령계획과 홍정할 욕심으로 이를 수락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자, 1950년 6월 25일 김일성의 재의를 수락하여 한국전쟁을 일으켰다. 한국전쟁은 1953년 7월 27일 크라크 유엔군사령관을 일방 당사자로 하고 김일성 조선인민군사령관과 팽덕회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을 타방 당사자로 하여 정전협정을 체결함으로써 40여년의 장기 휴전으로 들어가 오늘날 한반도는 불안한 평화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정전협정의 당사자는 쌍방 군사령관으로 되어 있으며, 한국군은 전시 중의 ‘대전협정’에 따라 작전지휘권을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시킨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휴전반대정책에 따라 한국군사령관 명의로 정전협정에 별도의 서명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정전협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있으며 정전협정에 따라 소집된 1955년 제네바 정치회담에 참여한 아래 군사정전위원회에도 빠짐없이 참여해 왔던 정전협정의 직접당사자이다. 이러한 구구한 법적논쟁을 떠나서도 한국전쟁에 관한 정전협정에 한국이 당사자가 아니라면 도대체

누가 당사자란 말인가? 우리 한국이 만일 정전협정준수를 거부했었다면 정전협정은 벌써 효력을 상실하고 당연히 폐기되었을 것이다. 여하튼 정전협정은 오늘날 남북분단 상태에서 불안하게나마 한반도 평화의 확실한 법적 장치인 것이다.

그러므로 1992년 9월 17일 서명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부속합의서에서 남북한은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가 이루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성실히 준수한다."고 합의했던 것이다.

한편 김영삼 대통령은 1995년 광복 50주년 경축사에서, ①남북한을 직접 협상당사자로 하고, ②필요하다면 관련당사국이 남북한의 합의사항을 보장하여야 하며, ③'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 등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기본원칙을 제시하였다.

한편 북한은 정전협정을 남북한 평화협정으로 대치시키자고 계속 주장해오다가 월남전 당시 미국무장관 키신저와 월맹공산당 정치국원 래둑토간에 비밀리 진행된 월남전 종전협상 방식을 모방하여 1994년 3월 25일 북한과 미국만의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한 이래 이를 한사코 고집하고 있는바, 이것은 한국전쟁의 성격을 미제의 침략전쟁으로 만들고 대한민국을 침략전쟁을 방조한 이른바 반민족적 식민정권으로 전락시키며 다른 한편 김일성을 미제의 침략전쟁을 물리치고, "조선민족의 자주권"을 옹호한 민족적 영웅으로 부각시킴으로써 북한정권의 민족적 정통성을 확보하여 그 여세를 몰아 공산화통일을 주도하려는 이른바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전략'과 직결된 것이다. 그리고 미·북간의 평화협정이 체결되어 정전협정을 대치시킬 경우 대한민국의 존재를 인정하는 법적 장치가 없어짐으로써 이른바 '하나의 조선'이 현실화 되어 '남조선' 공산화

를 위한 유리한 여건이 조성된다고 보고 있다. 한편 북한은 제50차 유엔 총회 최수현 외교부 부부장 연설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대미평화협정 체결의 명분조작을 위하여 남북은 이미 불가침을 약속한 기본합의서가 체결되었다고 하면서 ‘대미평화보장체계’를 내세우고 있으나 평화협정 체결 주장과 본질적으로 하등의 차이가 없는 것이다.

17

북한체제가 갑자기 붕괴될 경우 우리의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1980년대말, 1990년초 소련과 동구 공산권이 사회주의 체제의 한계성으로 줄줄이 붕괴되고 아울러 동독이 붕괴되어 서독체제로 흡수통일되면서 우리사회에 북한체제 붕괴론이 대두되었다. 그 후 1994년 7월 8일 김일성이 돌연 사망한 후 그가 독점하고 있었던 조선노동당 총비서직과 국가주석직을 김정일이 아직 공식 승계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는 사회주의 경제권이 붕괴되고 실용주의 노선으로 정책이 전환되면서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의 경제지원이 중단되고 내부적으로는 ‘우리식 사회주의’의 한계성이 노정되면서 식량난, 에너지난을 비롯하여 북한경제가 전반적으로 파탄지경에 이르고 귀순자의 속출 등 사회일탈현상이 계속 보도되면서 북한체제 붕괴론이 대내외적으로 더욱 꼬리를 물고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체제의 붕괴여부를 속단하기는 극히 어려운 실정이다. 왜냐하면 북한은 정권수립 아래 거의 완벽한 폐쇄사회체제를 유지시켜 왔으며, 김일성이 살아있는 신으로서 일인독재체제를 고수해 온 특수사회로서 주민의 민주주의 정치의식이 전무한 상태이므로 동구공산권에서 일어났던 체제저항운동은 전연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위기의식을 느낀 당국이 주민에 대한 통제와 정치사회화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일·중 등 주변국이 북한체제의 붕괴를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의 저해요인으로 판단하여 대처하는 상황에서, 오늘날 북한이

직면하고 있는 난국이 곧바로 체제붕괴로 이어질 것으로 예견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북한당국이 생존전략 차원에서 불가부득 시도하고 있는 대외개방 경제정책이 필연적으로 수반하게 될 부분적인 북한사회 개방이 주민의 체제비교의식을 각성시킬 경우 체제저항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상정할 때 우리는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 만일 북한체제가 붕괴되면 일단 엄청난 난민이 발생할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난민은 만주로, 경우에 따라 바다건너 일본으로 이어질 것이고, 엄청난 난민이 휴전선을 넘어들어와 서울을 수라장으로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국경을 일시에 개방한 결과 통일후유증으로 난관을 겪고 있는 독일통일과정에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만약 북한이 붕괴되는 경우, 일정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남북한사회를 통합시켜 나가는 방안을 강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18

통일과정에서 군사문제 협상이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문제의 하나로 여겨지는데 우리의 협상대책은 무엇인가

남북한간의 군사문제 협상이란 남북한간에 상호 존재하는 군사적 위협에 대해 군비증강의 수단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군사력의 운용과 구조의 통제를 통해 그 위협을 보다 제한·감소시킴으로써 기습공격과 전쟁발발의 위험을 제거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다.

역사상 대부분의 전쟁발발은 잘못된 정보, 오해, 오판, 상호불신에서 비롯되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각종 군사정보를 교환하고 부대 이동이나 기동훈련 및 부대배치 상황 등 주요 군사활동을 상대방에게 통보하고 공개하여 서로 감시·확인케 한다면 전쟁발발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오해와 오판, 불신의 소지를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인 것이다. 이렇게 군사적 신뢰구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좀더 어려운 일인 전쟁발발능력을 감소 또는 제거하기 위한 군사력의 규모 및 구조의 통제도 가능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제까지 남북한간의 군사문제에 대한 북한의 주장을 보면 10만명 이하로의 병력 감축, 주한미군철수 등 신뢰구축과정은 도외시한 이른바 '결과로서의 군축'만을 강조해 왔다. 이는 군사력의 우위 특히 전차와 장갑차 같은 공격무기의 수량적 우위, 즉각적 동원이 가능한 병영화된 사회체제, 대남도발을 정당화하는 정치·이념체제 등을 배경으로 대남 혁명전략 차원에서 전개한 선전적 성격이 짙다. 따라서 통일과정에서 군

사문제 협상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문제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1990년대에 국제정세는 정치이념으로부터 탈피 및 자본주의 시장경제원리의 세계적 확산 등 급격한 정세변화를 가져왔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진행된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과 북은 '남북한 기본 합의서' 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채택·발효시킬 수 있었다. 또한 이의 후속조치로서 정치, 군사, 교류협력의 3개 분야별 분과위원회 및 공동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합의하고, '기본합의서' 해당부문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각각의 부속합의서도 채택·발효시켰다. 현재 북한의 일방적인 남북 대화 중단선언으로 남북고위급 회담, 분야별 분과위원회 및 공동위원회가 가동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나, 우리의 군사문제 협상에 대한 기본 입장은 이러한 남북간 협의·실천기구들을 하루 속히 가동시켜 이미 채택·발효시킨 '남북한 기본합의서'의 기조에 따라 남북한 화해·협력체제를 구축함과 동시에 전쟁방지를 위한 군사적 안전성을 증대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단계적·점진적으로 실현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런 입장에서 우리의 군사문제 협상의 대책방향은 '선 정치·군사적 신뢰구축, 후 군비감축'이라는 단계적 실천으로 나가려는 것이며, 군축방안에 들어가서는 ① 쌍방간 공격형 전력을 우선 감축한 후, 방어형 전력구조로 전환, ② 군사력 과다보유축이 상대방 수준으로 우선 감축 후 동수균형감축 방식으로 군축 추진, ③ 병력감축은 무기감축과 병행 추진하되, 상비전력에 상응하여 예비전력 및 유사 군조직도 함께 감축, ④ 현장검증과 감시를 실시하며 공동검증단과 상주감시단 구성·운영, ⑤ 쌍방 군사력의 최종 유지수준은 통일국가의 군사력 소요를 감안하여 결정한다는 대책방향에서 협상을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다.

19

현재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납북자 수는 얼마나 되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대한적십자가 1994년 8월 현재로 집계한 자료에 의하면 휴전이후 현재까지 납북자 수는 동진호 선원 등 총 438명이며, 그 중 사망자 7명과 남파간첩으로 침투된 후 입건된 2명을 제외한 실제 억류인원은 408명에 달한다. 북한의 남한국민에 대한 납북은 주로 해상에서 이루어졌는바, 납북자 총 438명 중 해상납북이 417명(어선 397명, 해군 I-2정 20명)이며 21명이 항공기 납북에 의한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북한에 억류된 납북자들을 송환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왔으며, 1980년 이후에만도 각종 성명, 담화, 대북전통문 등 수십차례에 걸쳐 이들의 조속한 송환을 촉구한 바 있다. 특히 문민정부 출범 이후에는 납북억류자의 송환을 비롯해 인도주의 문제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인모 노인을 조건없이 북한에 송환한 바도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납북억류자에 대한 북한의 긍정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정부는 북한에 의해 납북된 모든 억류자들의 송환을 위해 국제적십자사, UN인권위원회 등 국제기구를 통한 송환노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남북대화 재개시 인도적 차원에서 억류자 송환문제를 적극 제기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북한 억류자 송환문제를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다루어 나가기 위하여 ‘북한억류자대책 관계장관회의’를 구성하고 ‘관계부처 실무대책반’을 운영해 나가고 있다.

20

통일대비 차원에서 앞으로의 통일교육은 어떻게 전개되어야 하는가

통일이 한낱 염원의 차원에 머물러 있던 시기의 통일문제나 북한실상에 대한 교육내용과 통일이 눈앞의 현실적 실천과제로 등장한 오늘의 그것이 같은 내용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1980년대 이후 지금까지 ‘통일 안보교육’ 또는 ‘통일교육’의 가장 큰 약점은 통일 이전 시기의 상황만을 대상으로 상정해 온 나머지 통일의 앞날을 내다보며 이를 준비하고 대비하게 하는 교육적 노력이 거의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의 통일교육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통일의 과정과 이후까지를 전망하는 이른바 ‘통일대비교육’을 어떻게 강화해 나갈 것인가에 모아진다.

여기서 통일대비교육을 통일에 대한 국민적·민족적 차원의 수용성을 높여 나가는 정치교육적 노력을 총칭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이 교육이 앞으로 담당해 나가야 할 기본과제는 다음 두가지 영역으로 크게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그것은 첫째, 현실적 실천과제인 통일과업을 직접 담당해 나갈 국민들로 하여금 갈라져 있는 민족사회를 하나로 통합해 가는 과정과 그 이후에 실현될 공동체적 삶에 나타날 갈등과 혼란을 예견하여, 이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거나, 효과적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통일주체로서의 확고한 의지와 가치관, 바람직한 태도 등을 함양해 주는 것(통일준비 차원)이고, 둘째는 통일 이후의 민족 전체의 삶이 우리가 원

하는 바와 같이 평화롭고 복된 것이 되기 위해 통일국가의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도덕적 품성과 태도 등을 사전에 길러주는 것(통일대비 차원)이 된다.

그러면 이러한 통일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교육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어야 할 것인가?

먼저 통일에 이르는 과정과 이후의 변화된 삶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통일준비 차원의 교육은 일차적으로 구시대를 통해 길들여진 이데올로기적 적대감과 불신, 대결의식을 해소해 나가는 데 기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우리 모두는 지난 반세기동안 냉전적 대결구조와 이질화된 사회문화체계 속에 살아오면서 부지불식간에 상호 불신을 키워 왔으며, 북한동포를 더불어 살아갈 동반자가 아닌 대결과 적대의 대상으로 보는 데 익숙해져 있다.

이러한 민족간의 대결의식과 적대감을 씻어내지 않고는 상호관계의 실질적인 개선을 도모해 나갈 수 없을 뿐더러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향해 나가는 민족공동체의 건설을 통한 통일의 길에도 나설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교육을 통하여 국민의식 속에 상존하는 불신과 적대감, 대결의식을 없애는 일이야말로 통일을 추진하고 준비해 나가는 길에 가장 앞서는 선결의 과제가 된다.

통일준비교육의 두번째 과제는 서로 다른 체제와 이념 아래 장기화된 분단으로 말미암아 심화되어 온 민족의 이질화를 극복하고 같은 민족으로서의 민족적 동질성을 회복·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민족의 동질성을 되찾는 일이야말로 갈라져 있는 민족의식을 하나로 합쳐 나가는 길임과 동시에 분열되어 있는 남북한 사회를 하나의 공동체로 통합해 나가는 기반을 쌓는 일의 출발이 되는 것이다.

세번째로 개개인의 가슴 속에 하나의 민족공동체 속에 더불어 살아갈

구성원으로서의 성원의식을 심어주는 데에 기여하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 통일정책은 최종적인 통일에 앞서 둘로 단절되어 있는 남북한 주민의 생활권을 하나로 합쳐 우선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공동체적 삶을 회복하고, 이 바탕 위에 정치적인 통합을 실현함으로써 궁극적인 국가통일을 완성한다는 것을 기조로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우선 지향해 가는 민족공동체의 형성과 발전에 가장 기초가 되는 요소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성원들이 가지는 공동체에 대한 귀속의식과 참여의식의 강약 문제로 귀결된다.

따라서 민족공동체를 건설해 나가기에 앞서 앞으로 같은 공동체의 구성원이 될 남북한의 주민들에게 같은 민족으로서의 끈끈한 유대의식을 심어주고 같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심리적 융합을 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기본적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교육적 노력이 사전에 경주되어야 한다.

네번째로 통일에 따르는 희생과 고통을 올바로 인식하고 이를 감내해 나갈 수 있는 의지와 각오를 다져 나가는 것이어야 한다.

통일에는 영광과 기대만이 뒤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를 성취하는 과정과 이후에 많은 희생과 부담, 책임이 우리에게 안겨지는 것이라는 점을 사전에 확실히 인식시켜 나가야 한다. 통일과업을 담당해 나갈 통일주체 모두가 이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확고히 하지 않으면 통일을 도중에 포기하거나 처음부터 용기를 잃고 좌절에 빠지기 쉽게 된다.

끝으로 통일국가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바람직한 도덕적 품성과 태도를 심어주기 위한 통일대비 차원의 교육에서 특히 강조되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 그것은 주로 서로 다른 생활경험과 가치관, 행동양식을 가진 남북한의 주민이 하나의 공동체 속에서 삶을 영위해 나감에 있어 가장 긴요한 ‘함께 사는 원리와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될 것이다.

통일 이후의 삶을 예견해 볼 때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서로 다른 생활 경험, 이질적 가치관과 의식구조를 가진 남북한의 주민들이 함께 살아가면서 각자 자기의 주장이나 의견, 생활양식만을 고집하고 앞세울 때 야기될 개인적·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어떻게 극복하고 사회적 통합을 원만히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이다.

통일 후에 예상되는 이같은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고 각종 사회적 관계나 인간관계에서 야기될 갖가지 분쟁과 대립을 원만히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길은 결국 통일국가의 국민이 될 모두에게 타인들과 평화롭게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민주적 생활양식’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하는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통일을 대비하는 교육의 일환으로 ‘민주시민교육’의 강화 필요성이 최근 학계를 비롯한 관계 요로에서 새삼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Ⅱ . 통일환경

21

한반도 통일에 대한 미·일·중·러의 기본입장은 무엇인가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세계최대 해양국가인 미국·일본과 대륙국가인 중국·러시아에 둘러싸여 있는 곳으로, 1945년 세계 제2차대전 이후 미·소를 비롯한 연합국의 전후처리 과정에서 분단되었다. 따라서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데올로기에 의해 적과 동지로 나뉘어 대결·대립하던 냉전질서하에서 중국과 소련은 북한과 이념적 동지임과 동시에 그 배후세력으로서 '대북한 일변도정책'을, 반대로 미국과 일본은 '대한국 일변도정책'을 유지함으로써 한반도는 동서냉전의 최전방에 위치해 있었다.

그러나 1989년 이후 '동구공산권의 몰락'과 '구소련의 해체'로 인해 1945년 이후 형성되었던 냉전질서가 붕괴됨으로써 세계질서는 지각변동을 일으키면서 급변하고 있다. 즉 탈냉전 이후 형성되고 있는 신국제질서는 억압적이며 획일적인 질서가 아닌 다원화·개방화·자율화가 강조되는 민주적인 질서하에서 '이데올로기' 보다는 '개별국가의 실리'가 중시되면서 '긴장완화·화해협력'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세계정세는 동북아에도 영향을 미쳐 한반도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즉 과거 북한의 종주국임과 동시에 배후세력으로서 '대북한 일변도정책'을 유지해오던 구소련과 중국이 1990년 9월과 1992년 8월 각각 우리와 관계정상화를 이루게 됨으로써 과거의 적대관계가 선린 우호관계로 전환되었다.

이렇듯 탈냉전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과거 적대에서 화해 협력으로 개선되었지만 주변 4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기본입장은 '불통불란(不統不亂)'의 '현상유지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첫째, 탈냉전 이후 미국에게 있어 한반도의 전략적 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된 것은 사실이나, 아시아·태평양전략상 한반도의 중요성은 여전하다. 따라서 미국은 한반도문제에 균형자 역할 뿐만 아니라 주도적인 입장에서 우리의 통일노력을 비교적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일본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동북아의 안정에 필요하며, 북한이 남한에 위협으로 존재하는 한 일본에 대해서도 위협이 된다고 인식, '한·일 우호협력관계'를 한반도 정책의 기조로 삼고 있으며 한반도에서의 비핵화와 현상유지차원에서 남북대화와 남북간 평화공존을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러시아도 1980년대 중반이후 '대북일변도 정책'으로부터 '한반도 균형정책'으로 바뀌었고, 특히 러시아의 국내정치안정과 경제발전을 도모키 위해 '평화로운 주변환경' 조성 차원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기하고자 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중국 역시 1992년 1월 남순강화(南巡講話) 이후 가속화되고 있는 개혁·개방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평화적인 주변환경 조성 차원에서 한반도에서의 안정을 바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볼 때 주변정세는 북한보다 우리에게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여건을 창의적·능동적으로 주도하여 평화통일환경 구축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통일을 위한 국제적 지원을 확보하는 문제는 주변 4강국이 한반도 통일에 소극적일 수 있는 이유를 제거하는 차원에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22

탈냉전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의 특징은 무엇이며 평화정착의 가능성은 어떠한가

탈냉전 이후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국제질서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소련이 주도하던 공산주의 이념의 세계적인 퇴락현상과 동시에 자유민주주의 이념의 전세계적 확산이다.

둘째, 사회주의권과 자본주의권의 경쟁의식으로 인한 과거의 소모적인 대결의 지양과 상호의존적인 국제관계의 발전추세이다.

셋째, 탈냉전 이후 이데올로기에 의한 분쟁의 가능성은 줄어든 반면 냉전시대에 잠재해 있던 민족주의적 갈등이 탈냉전과 함께 표출되어 지역 분쟁이 빈발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넷째, 구소련을 비롯한 동구사회주의 국가들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그리고 중국의 사회주의시장경제 채택 등 시장경제체제의 전세계적 확산이다.

다섯째, 탈냉전 이후 형성되고 있는 국제질서는 군사·안보면이 강조되었던 냉전시대와는 달리 경제면, 즉 자국의 실리를 중시하는 추세가 나타나면서 ‘대결·대립관계’가 아닌 ‘긴장완화·화해협력관계’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지각변동 속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역시 냉전 시대의 상호적대적 관계에서 벗어나 자국의 실리에 바탕을 둔 협력적 상호관계로 발전, 동북아지역의 안보환경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즉 중·소관계 정상화(1989), 한·소수교(1990. 9), 한·중수교

(1992. 8) 등 탈냉전적 양자관계 재조정이 진행됨에 따라 역내에서는 다각적인 경제협력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동북아 지역에서 형성되고 있는 신국제질서는 전세계적 차원에서 형성되고 있는 국제질서와는 상이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동북아 지역에서 미·일·중·러 등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얹혀 있을 뿐 아니라 중국과 북한이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있어 기존의 냉전적 대립요인이 잔존하고 있으며, 또한 분단국 문제, 영토문제, 군비경쟁 등 냉전적 요소가 잔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강대국간 세력관계 변화 가능성으로 인한 유동성과 기존의 냉전적 구조와 새로운 탈냉전적 변화가 병존하는 이중성이 동북아지역 신국제질서의 전반적 성격을 규정하는 주요 특징이다.

결론적으로 동북아지역은 탈냉전 이후 역내 경제적 상호의존과 정치·군사적 불확실성이 동시에 고조되는 과도기적 현상이 계속돼 왔으나, 이 지역 최대 안보위협으로 주목받던 북한 핵문제가 미·북간 제네바합의(1994. 10. 21)로 해결의 '틀'을 마련함에 따라 정치·군사부문에서도 동북아의 탈냉전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23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활동의 실질적 진전과 두만강지역개발계획(TRADP) 등 아·태지역에서의 다자 간 경제협력이 동북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1980년대 중반이후 국가간의 보호무역주의 등 경제냉전이 심화되면서 세계가 경제블록화(EU:유럽연합,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등) 추세로 나감에 따라 아·태지역에서도 대경제권 형성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한국, 동남아 국가연합6국, NAFTA 3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중국, 대만, 홍콩, 파푸아뉴기니, 칠레 등 18개 회원국으로 이뤄진 APEC이 바로 그것이다.

APEC은 1989년 1월 보브호크 당시 호주 총리의 제안에 따라 한국과 호주의 주도하에 환태평양국가간의 경제협력과 무역증진을 목표로 창설한 아·태지역 최초의 범정부간 협력기구이다. 그러나 APEC은 창설초기 미국의 소극적인 태도와 말레이시아의 미국 참여 반대 등으로 난항을 겪었으나 1993년 11월 제1차 시애틀 정상회담을 계기로 큰 전기를 마련했다.

그후 1994년 11월 인도네시아 보고르에서 가진 제2차 정상회담에서는 APEC회원국간 무역자유화 등을 선언한 '보고르 선언'(선진국은 2010년, 개도국은 2020년에 무역 및 투자자유화조치 완료)으로 시애틀 정상회담을 더욱 구체화시켰다.

특히 세번째 정상회담인 오사카정상회담(1995. 11)에서는 1997년부터 무역 및 투자자유화를 시작한다는 '오사카 선언'을 채택함으로써 APEC이 이제 막연한 목표를 내걸고 실천계획도 없는 느슨한 모임이 아

니라 본격적인 자유화 추진기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즉 아·태 지역 무역자유화는 논의단계에서 ‘행동단계’로 진입, 점진적 역내 무역 자유화로 APEC경제의 역동성을 품안에 안을 수 있게 되었다.

아·태지역은 세계인구의 40%, 세계 GNP의 60%, 무역규모는 46%를 점하고 있어 21세기를 앞두고 가장 각광받고 있는 지역이다. APEC의 발전은 다양한 아태지역의 경제역량을 높이고 교육, 통신기술, 산업 협력의 증대로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많은 기여가 예상된다.

한편 중국, 러시아, 북한이 접경하고 있는 두만강지역은 부존자원, 산업구조, 기술면에서 상호 보완성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냉전시대의 정치논리와 열악한 투자환경을 이유로 서방기업들은 투자하기를 주저했고, 역내교역도 중·러간 국경무역을 제외하고는 크게 활성화되지 않아 동북 아국가간 총교역액에서 점하는 비중이 매우 낮았다.

그러나 1989년 이후 동서냉전체제가 종식되고 접경국가인 중국, 러시아가 시장경제지향형 대외개방정책을 가속화함에 따라, 동지역이 점차 동북아지역 개발권역의 핵심지역으로 부상되었다. 이에 따라 유엔개발계획(UNDP)의 주관하에 두만강지역개발계획(TRADP)이 추진되었는데, 동계획의 목적은 동북아국가간의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무역·투자면의 경협잠재력을 활성화함은 물론, 중장기적으로 동지역을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시키는 중계무역기지로 발전시킨다는 데 있다.

그러나 두만강지역개발계획은 두만강 접경3국은 물론이고, 한국과 일본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는 장기적 계획으로서 한국과 일본의 투자가 확대되어야 하고, 양국의 투자증가는 다른 나라들로부터의 투자를 유인하는 촉매제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무역의 확대는 주변에 생산설비의 투자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금융·관광 등 서비스산업의 급속한 성장을 초래

할 것이다. 따라서 두만강지역개발계획이 실현될 경우 접경3국 뿐만 아니라 몽골·한국·일본 등 동북아 6개국 모두에게 장기적 경제성장촉진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이는 남북관계는 물론 동북아지역의 정치적 불안정을 해소·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24

중국과 일본의 군사대국화 추세가 동북아 정세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동서냉전체제 붕괴후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러시아의 위협이 감소함에 따라 미국의 역할 또한 축소되는 등 ‘힘의 공백’이 생긴 틈을 타고 중국과 일본이 역내 주도권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은 원거리 작전능력의 강화 및 신속대응군 창설 등에 진력하고 있다. 아시아지역에서 유일한 핵강국인 중국이 1989년 아래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비를 매년 10% 이상 증액해 오고 있다.

특히 지난 1991년 걸프전 이후 미국의 첨단무기에 자극받은 중국은 소련으로부터 많은 군사장비를 사들여 대부분 1950~1960년대의 노후한 중국 해방군장비는 이때부터 대거 교체되었다. 최근 3년간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50억달러 이상의 무기를 사들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방군의 전력은 최소한 15년 이상 현대화됐다는 분석이다.

즉 중국은 50대의 러시아제 SU-27기를 사들여 공군의 원거리 작전능력을 높였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는 MIG-29와 MIG-30의 중간형인 ‘섬(殲)10 전투기’ 합작생산에도 합의함으로써 매년 50대씩 출고되면 공군의 전투력은 현재의 2배로 강화된다.

해군도 지난 1990년대 초 황색(黃色)해군에서 남색(藍色)해군으로 전략목표를 수정, 작전반경을 원양으로 확대하고 오는 2005년까지 함재기 40대를 갖춘 4만~5만톤급 중형항모를 자체 건조키로 했다.

특히 1995년 들어서 세차례의 핵실험을 강행한 데 이어 대륙간 탄도미

사일 ‘동풍(東風) 5’ 발사실험 및 대만에 대한 일련의 무력시위는 2차대전 종전후 지속되어 온 아시아의 평화구도를 흔들고 있다.

한편 일본은 동서냉전체제가 와해됨으로써 과거 가상적이었던 러시아(구소련)의 군사적 위협이 사실상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방대한 경제력과 첨단과학기술 능력을 바탕으로 군사대국화의 길을 걷고 있다. 일본의 이같은 군사대국화 전략은 자민당 일당지배의 ‘55년체제’ 붕괴에 따른 정치의 우경화, 균형자 없는 국제사회의 태동이라는 세계정세변화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특히 GNP 1%내에서도 아시아 최고수준인 방위비와 그뒤에 숨어있는 첨단과학기술은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가능케 하는 버팀목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군이 아닌 자위대를 가진 일본의 1995년 방위예산이 4조7천2백36억엔으로 세계 4위를 기록하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다.

이러한 절대적 방위비의 차원을 떠나서라도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향한 법적장치로는 1992년 PKO협력법을 제정, 자위대의 해외파병길을 열었고, 1994년 이후 재외 일본인 구출을 위해 자위대기(自衛隊機)를 파견할 수 있도록 자위대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떠받치는 기반은 군사장비의 첨단화계획으로 전역(戰域)미사일 방위(TMD) 구상을 위한 민관연구회(民官研究會) 발족, 정찰위성개발 착수, 차기다용도지원기(UX) 2기와 공중조기경보기(AWACS) 4기 도입결정, 차기수송기(CX)의 국산화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고속증식로 실용화, 핵폐기물 처리시설 완비, 다량의 플루토늄 확보 등 원자력 자급체제도 갖췄을 뿐만 아니라 고성능의 무인우주선 H2로켓 개발 등 운반수단기술을 갖춰 핵무기 개발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발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게다가 1995년 11월 19년만에 ‘방위계획대강’을 개정하여 일본의 국

제적인 군사공현 확대를 명문화하였다. 특히 이 ‘신방위계획대강’은 옛 대강에서 규정한 ‘침략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수동적인 미·일 안보체제의 목적이 ‘일본 주변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전의 확보를 위해서’라는 적극적인 표현으로 바뀜으로써 향후 일본 자위대의 역할은 더욱 강화되어 나갈 것이다.

이렇듯 동서냉전이 와해된 이후 동북아지역은 중국과 일본의 군비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나 문제는 중·일의 군사위협을 둑어들 만한 안전장치가 아직 없다는 점이다. 이는 주변국을 자극, 역내국가들의 군비증강으로 이어져 전세계적인 차원의 긴장완화, 화해·협력 추세와는 다른 냉전과 탈냉전적 변화가 병존하게 되는 상황이다. 특히 한반도에서는 김일성 사망과 심각한 경제난 등으로 인한 북한체제의 불안정성과 어우러져 탈냉전시대에 냉전지대화가 가속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25

중국은 강택민 국가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우리와의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데,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

강택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1995.11.13~11.17)으로 1992년 수교이후 경제협력이라는 제한된 범위에서 출발한 양국관계가 무역량 및 인적교류가 2~3배 이상 폭발하는 수준에 이른데 이어 이제는 정치·외교분야에서까지 폭을 넓혀 '동반자관계'를 형성하는 차원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양국정상회담(1995.11.14)에서는 일본의 과거사문제를 비롯, 한반도 주변정세, 양국간 경제협력 등의 공동관심사가 두루 논의됨으로써 1992년 수교 이후 '초고속'으로 발전하고 있는 양국관계를 한차원 높은 실질 협력관계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경제교류 협력에서 양국정상은 중형항공기 공동개발 조기착수, 원자력분야 협력강화, 러시아가스전협력, 북경직업훈련센타 건립 등 경제협력을 대폭 확대하는 데 합의함으로써 이미 산업협력단계로 진입된 양국간 경제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한반도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양국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특히 강주석은 궁극적으로 한반도에서 평화체제가 구축되어야 하나 평화체제가 구축되기 이전까지는 현정전체제가 유효하다는 중국의 기존입장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한반도 문제가 주변국의 이해와 협력하에 남북간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당사자 간 해결방식' 등에 원칙적인 합의를 봄으로써 한반도 주변열강들이 모두

우리의 평화정착노력에 동참하게 되었는바, 이는 향후 북한에 대해서도 적지않은 압력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남북한문제와 관련해 또하나 고무적인 것은 북한과의 군사동맹성격을 지닌 ‘친선우호협력조약’에 대한 중국의 견해다. 강주석은 방한직전 북경에서 가진 기자회견(1995.11.10)에서 “중·조간 친선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 조약의 목적이 중·조간 각 분야에 걸친 협력을 증진하는 것 이지 전문적으로 특정영역(군사분야를 지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함으로써 이 조약이 군사적 성격보다 포괄적 협력관계를 규정한 것임을 밝힌 바 있다. 또한 강주석을 수행, 방한한 진건(陣健) 외교부 대변인도 기자회견(11.14)에서 “동조약은 파병조약이 아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과거 중국은 북한에 경제지원을 했고, 앞으로도 할 수 있는 만큼 지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중국이 북한과 유지하고 있는 군사동맹성격의 동조약을 폐기하거나 개정할 의사가 없음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으로 가급적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제스처임과 동시에 한반도 평화와 안정유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적용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대북한 군사모험주의에 대한 간접경고로도 볼 수 있다.

강주석의 방한은 북한에 적지않은 충격일 수밖에 없다. 물론 외형적으로는 중국의 한반도정책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남북 당사자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전협정의 준수를 강조한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강주석은 남북한문제에 대해 “높은 위치에서 장기적 안목으로 한·중관계의 대세를 거스리지 않는 방향에서 인내를 가지고 임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는 북한을 흡수통일하려고 서두르지 말라는 얘기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중국의 최고통치자가 사상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했다는 그 자체가 매우 큰 정치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중국의 한반도정책의 변화로 해석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즉 중국이 등거리외교 원칙에도 불구하고 북

한보다는 한국을 비중있게 생각하고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6

북한이 미·일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관계개선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남북관계 및 주변정세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북한이 대미·일 관계개선을 적극화하게 된 배경은 1990년을 전후해서 사회주의 국가들이 몰락하였음은 물론 북한의 배후지원세력이었던 구소련(1990.9.30)과 중국(1992.8.24)이 각각 한국과 수교를 맺음으로써 북한의 입지를 크게 좁혀 놓은 데 있다. 뿐만 아니라 구소련의 북한에 대한 군사지원 감소는 물론 대소부채(약 50억달러)를 경화(硬貨)로 상환(1992.1.1부터)할 것을 통고하는 등 중·소의 원조가 대폭 감소됨으로써 북한경제가 결정적인 타격을 입게된 데 따라 생존전략상 북한은 대미·일 관계개선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북·미간 접촉은 1984년 9월 김일성이 대미관계 개선의 의사를 표명한 것이 계기가 되어 북경에서 미·북한간 참사관급 접촉회의가 개최된 이후 그간 33회(1988.12~1993.5)에 걸쳐 있었으나 북한의 핵의혹으로 진전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가 북·미 제네바 핵합의(1994.10.21)를 통해 단계적인 경제제재 완화와 경수로 건설지원 및 상호연락사무소 개설을 약속함으로써 북·미간 관계설정을 위한 궤도에 일단 들어서게 되었다. 그 결과 미국은 이미 통신 등 부분적 해제조치(1995.1.20)를 취한 바 있다. 또한 경수로 공급협정이 타결(1995.12.15)된 이상 금년 상반기중 북한 동결자산 해제와 함께 평양과 워싱턴에 연락사무소 개설 등 북·미관계 개선이 진전될 전망이다.

한편 북한의 대일 수교문제는 1990년 9월 일본의 가네마루 신(金丸信, 전 자민당 부총재)을 단장으로 하는 일본의 자민·사회당과 북한 노동당과의 회담에서 김일성이 수교를 제의한 데서 시작되었다. 북·일은 1992년 11월까지 여덟차례나 북경과 동경을 왕래하면서 수교회담을 진행하였으나, KAL기 폭파범 김현희의 일본어 선생인 '이은혜문제'로 결렬된 바 있다. 그러나 1995년 3월 28일 일본연립여당 방북단은 북한노동당과 수교교섭 재개에 원칙적으로 합의를 봄으로써, 지난 1992년 11월 중단된 북·일본간 국교정상화 협상의 실마리가 풀리게 되었다. 따라서 전후배상금 문제 등의 장애가 있으나 북·일관계도 북·미관계의 진전에 따라 머지않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북한은 제3차 7개년계획(1987~1993년)의 실패와 국제적 고립, 특히 작년 수해로 인한 심각한 식량난 속에서 생존전략상 대미·일 관계개선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대미·일 관계개선이 남북관계 및 주변정세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과 부정의 양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긍정적인 면은 남북한에 대한 교차승인이 완성됨으로써 남북평화공존이 제도적으로 정착되면 북한의 대남무력모험은 더 이상 어렵게 될 것이며 또한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이 증대될 것으로 지금까지 노력해 왔던 우리의 평화통일정책 실현에 긍정적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남북평화공존의 정착은 자칫 분단의 고착화 장기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이다. 미·일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의 대북한 경제지원은 북한독재체제의 생명력을 연장시킬 수 있음과 동시에 이는 북한으로 하여금 남북관계의 개선에 소극적 자세를 취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같이 양측면을 모두 고려해 볼 수 있으나 북한과 미·일과의 수교는

통일문답

결국 북한이 국제사회의 개방화라는 큰 흐름의 영향을 받게 될 것임을 감안할 때 한반도 및 동북아의 긴장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7

북한의 대중·러 군사동맹관계의 현황과 변화전망은 어떠한가

북한의 대중·러 군사동맹관계는 기본적으로 1961년 7월 6일과 7월 11일 각기 체결된 '조·소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조약'과 '조·중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조약'에 기초하고 있다. 우선 북·러관계는 구 소연방이 해체된 이후 러시아가 대외관계에서 구소련을 승계함으로써 '조·소우호조약'을 계승하였다. 동조약은 10년 유효시한을 두고 체약 일방이 시한 만료 1년 전에 해약희망을 표시하지 않으면 5년간 효력이 지속되어 유효 기간이 계속 연장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동조약은 1995년에 러시아측이 폐기의사를 북한측에 전달함으로써 사실상 사문화되었다. 러시아 외무부는 1995년 8월 7일 북한에 새로운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초안을 전달했으며, 북한외교부 대변인도 이 사실을 시인한 바 있다(1995.9.8 중앙통신회견). 따라서 북한과 러시아간의 '우호협력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에 의거한 군사동맹관계는 1996년 9월 10일을 시한으로 확실하게 해체되게 되었다.

한편 '조·중우호조약'도 유효시한이 10년으로 되어 있으며, 체약일방이 시한만료 1년 전에 해약희망을 표시하지 않는 한 5년간 효력이 자동적으로 연장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역시 한·중수교 이후 실질적으로 효력이 반감된 상황이라고 할 것이다. 단지 중국은 러시아와는 달리 사회주의 이념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과의 이념적 결속관계를 유지시켜 나갈 필요에서도 이 조약의 지속성을 외면할 수 없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으로서도 한·중수교 이후 가속화될 외교적 고립과 개방압력 등에 대한 대처는 물론 대미·일 관계개선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도 중국의 협조가 절실한 입장이다.

이러한 북한과 중국의 입장은 한·중수교 후 양국 관계자들의 첫 공식 반응에서도 잘 나타나는바, 한·중 수교일인 1992년 8월 24일 오전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중수교 후에도 북한과의 선린우호관계는 지속될 것이며 북한과 맺은 상호원조조약 등 이미 체결된 모든 조약과 협정은 앞으로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으며, 동년 9월 11일 북한의 뉴욕주재 유엔대표부 허종 차석대사는 요미우리신문과의 회견에서 한국과 중국간의 경제·무역 관계가 외교관계로까지 발전했다고 하여 북한과 중국간의 전통적 관계가 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런데 주지하는 바와 같이 ‘조·중우호조약’ 제2조에는 체약 일방이 무력침공을 받을 경우 체약 상대방이 지체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에는 체약 쌍방은 상대방을 반대하는 어떤 국가와 동맹체결이나 어떤 행동 또는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조항들은 사실상 한국과 중국간에 국교가 수립됨으로써 그 의미와 효력을 상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도 과거의 군사적 동맹관계에서 현저히 퇴조하여 실체에 있어서는 통상적 외교관계로 변화되는 과정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중 양국간의 수교와 관련한 공동코뮤니케 작성 실무협의 과정에서 중국이 북한과 맺은 협정들이 한·중관계를 적국관계로 규정할 위험이 높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북한과 중국간의 군사동맹관계 역시 재해석과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상황이다.

28

중국의 경제적 개혁·개방을 추진하면서도 정치적으로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있는데 경제부문에서의 자본주의화가 사회주의 체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1976년 모택동 사망후 중국은 국내 정치·경제의 심각한 위기상황을 극복·해결하기 위해 과거 모택동시대에 추진해 온 소련식 계획경제와 모택동식 자력갱생정책을 수정하고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또한 1969년 소련과의 국경충돌 이후 소련의 안보 위협 증대로 인해 미국·일본 등 서구와의 관계개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중국의 이러한 인식이 새로운 지도부로 하여금 대내개혁과 대외개방을 추구도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1976년 모택동 사망과 4인방 숙청 이후 등소평 등 실용주의노선의 개혁파들은 개혁·개방정책 추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왔던 모택동사상을 재평가하였다. 즉 실사구시(實事求是)와 '실천만이 진리를 검증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라며 모택동과 좌파의 이론·정책·제도를 부정하는 이념체계의 수정을 통해 중국공산당 제11기 3중전회(1978.12)에서 개혁·개방정책을 채택·추진해오고 있다.

그 결과 중국경제는 지난 10여년간 연평균 약 10%에 이르는 고도성장을 이루하여 소득의 증대를 가져와 국민의 기본적인 경제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단계에 진입하게 되면서, 1992년 이후 그간 경제범주만을 수정하던 '사회주의 상품경제'와 같은 소극적 개혁에서, 기존의 공유제를 혼합형 소유제로 바꿔 유지할 뿐, 나머지 부분은 자본주의 경제원리와 거의 유사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로의 개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렇듯 중국은 경제적으로는 마르크스·레닌의 이론을 수정하면서 자본주의 요소를 대폭 수용하였으나 정치적으로는 ‘4대 기본원칙’을 견지하는 대전제하에서 정치개혁은 정·경분리와 간부제도 개혁 등 극히 제한적인 범위내에서만 이루어졌다. ‘4대 기본원칙’이란 첫째,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모택동사상 견지, 둘째, 사회주의노선 견지, 셋째, 중국공산당의 영도 견지, 넷째, 인민민주주의 독재 견지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소위 중국식 사회주의의 보편적 성격을 특징 지워 주는 기준이 되는 동시에 각종 정책의 출발점이자 귀결점이 되는 것이다. 등소평도 만약 이 4대 기본원칙중 어느 하나를 동요시키면 전체 사회주의사업과 전체 현대화건설사업을 동요시킬 것이라고 각 기본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정치반우·경제반좌(政治反右·經濟反左)’의 사회주의체제를 유지·공고히 할 수 있는 첨경은 정치민주화보다도 경제발전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중국의 정치개혁은 등소평 등 혁명 1세대가 존재하는 한 ‘4대 기본원칙’의 범위내에 국한되어 추진될 것으로 보이며, 사회주의 생산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환경조성이라는 차원에서 과거 경제개혁 추진을 저해해왔던 제반요인을 제거하는 데 두고 정치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중국은 데오 줌머(독일 ‘디차이트’지 발행인)가 ‘21세기의 세계전망’에서 “한국과 대만에서 보듯이 국민소득이 일정수준에 오르면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요구합니다. 시기를 예측할 수 없지만 중국도 이런 역동적인 움직임을 겪게 될 겁니다.”라는 전망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특히 마르크스가 ‘정치경제학 비판’에서 ‘경제체제가 변하면 정치체제는 따라 변한다’는 지적외에 사무엘 헌팅턴 교수도 ‘제3의 물결-개발도상국의 민주화’에서 지적했듯이 ‘경제발전이 결과적으로 정치민주화를 가져온다’는 역사적 경험의 밖에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을 수는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Ⅲ. 남북관계 및 현안문제

29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에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있는데 대북정책 추진의 기본방향 및 원칙은 무엇인가

대북정책의 일관성 문제는 통일방안과 사안별 수시정책의 일관성 문제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북한의 통일방안이 1960년대 이래 외견상 연방제방안으로 일관성을 유지해 오고 있는 듯이 보이는데 반하여 우리의 통일방안은 건국이래 유엔감시하에 북한만의 총선방안, 유엔 감시하에 남북한 자유총선방안, 그리고 1972년 7·4남북공동성명 이후 1982년의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3단계 3기조 통일방안,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 등으로 외견상 모습을 달리하였고, 또 사안별 수시정책에서도 가령 경제인, 종교인 등 민간차원의 남북간 교류·협력의 경우 당시의 정책상황의 차이에 따라 신축성을 보여 왔던 것이 사실이다.

물론 일인 독재체제를 지속시키고 있는 북한의 경우와는 달리 선거에 의하여 정권이 정기적으로 교체되는 우리의 경우 당시의 정책환경의 변화에 따라 통일방안이나 수시정책의 내용이 외견상 모습을 달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기본방향이나 원칙상의 일관성이 무너지지는 않았다. 우리나라의 통일방안이나 수시정책은 어느 경우에도 북한 공산독재체제와 우리의 자유민주체제간의 대결이란 기본여건의 범주하에서 가능한한 가장 합리적이며 현실적인 방안과 정책이 강구되었기 때문이다.

우리 통일방안의 기본방향은 우선 우리 민족의 발전과 번영을 보장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체제하의 통일실현이란 통일조국의 당위적 미래상을 실현시킬 수 있는 하나의 민족통일국가의 완성을 일관성 있게 추구하는 것이다. 이것은 남북한간의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그대로 둔 상태로 미완성 통일의 연방을 통일이라고 고집하는 북한의 입장과 기본적인 차이를 보이는 점이다. 그리고 남북 주민간에 신뢰가 조성되지 않은 단계에서 일시에 연방제 통일을 실현시켜 남북간에 끊임없는 마찰을 잉태하게 될 정치적 통일보다는 남북 주민간의 사전 교류·협력관계를 활성화하여 그 동안 이데올로기와 체제의 대립과 갈등으로 파괴된 민족 공동체를 복원시키면서 궁극적으로 하나의 민족국가를 완성시켜 정치적 통일로 접근하려는 점진적·단계적 통일실현 등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통일방안의 기본방향과 더불어 우리 정부는 사안별 수시정책 추진과정에서도 원칙상의 일관성을 견지하고 있는바, 가령 미국과 북한 만의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등 대남 적화전략을 위하여 북한이 고집하고 있는 일련의 강탈적 주장을 철저히 봉쇄시키고, 또한 대남 통일전선형성 차원에서 강행되고 있는 우리 정부와의 협상배제전략과 우리 정부와 미·일 등 우방과의 이간전략도 철저히 봉쇄시킨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무리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민족의 전면적 파멸을 자초할 무력수단이 아니라 인내로서 대화를 통하여 언젠가는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키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켜 궁극적으로 민족통일을 반드시 실현시키고 말겠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대북정책에 임하고 있다.

30

북한이 남한당국 배제전략을 고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북한은 지난해에 이어 '당보·군보·청년보의 공동사설'로 대체해 밝힌 1996년도 신년사에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고 통일을 실현하는데서 선차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는 우리와 미국 사이에 새로운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그후 이어진 각종 사회단체 간부들의 지지담화 및 집회를 통하여 이른바 '연방제방식에 의한 범민족 통일국가 창립'을 주장하면서 "도적의 왕초가 권력의 자리에 앉아 있는 한 통일대화가 진행될 수 없고 남북관계가 개선될 수 없다."고 강변하는 등 남한 당국 배제전략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대남태도는 기본적으로 그들이 대남적화혁명노선을 고수하고 있는 입장에서 최근의 사회주의권 와해라고 하는 국제정세의 변화와 한·소 수교 및 한·중 수교 등에 따른 국제적 고립 심화 및 극심한 식량난을 비롯한 경제난 그리고 특히 김일성이라는 카리스마가 소멸된 상황에 처하여 체제유지에 최우선 역점을 둘 수밖에 없는 그들의 궁색한 처지에 기인한다고 할 것이다.

사면초가에 둘러쌓인 북한은 남북대화를 재개할 경우 이는 곧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과 실천의 장으로 발을 들어놓게 되고 이럴 경우 소위 남한의 '평화적 이행전략'이 현실화된다고 판단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우선 대미·일 관계개선을 통하여 외교적으로 체제보장을 확보하면서 경제적 실리획득으로 경제난 해소를 도모하는 한편, 대남

면에서는 도리어 남한당국체제 및 주적화 전략을 추구함으로써 그들 내부의 체제결속을 통해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이어지는 유일독재자체제를 공고화하는 이른바 '정권안보'에 이용하려는 것이다.

결국 북한의 현 체제에 변화가 없는 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그들의 필요에 의한 전술적 변화는 있을지언정, 근본적인 그들의 대남정책에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311

우성호 선원송환은 남북관계 개선에 하나의 계기가 될 것 으로 보이는데 북한의 내부상황 및 주변정세의 변화를 고 려할 때 남북관계의 개선전망은 어떠한가

북한이 1995년 말 우성호 선원을 전격적으로 송환한 것은 억류방침을 고수함으로써 '남쪽인민'에게 미칠 부정적 이미지를 의식한 측면도 물론 있겠지만, 경수로 및 한국전 미군유해 송환 협상, 나아가서 대미평화협정 체결과 대미수교 등 일련의 대미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목적으로 취해진 유화 제스처로 분석된다. 우리 한국이 미국 및 일본의 대북한 접근속도를 남북대화의 진전속도와 연계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과정에서 우성호 선원송환을 강력히 요구했을 가능성이 짙다. 그런데 북한은 판문점을 통한 우성호 선원 송환과정에서 인수창구를 미군측으로 한정하여 우리 당국을 철저히 배제시킨다는 입장을 관철하였다.

북한은 1994년 7월 8일 김일성 사망후 남쪽당국이 인민의 방북조문을 방해하였다는 구실을 걸어 김일성 생존시 합의 본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하여 일체의 남북 당국간 대화를 거부하고 있으나, 사실은 1992년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남북기본합의서)발효 직후부터 남북 당국간 대화를 외면하고 대화창구를 미국으로 돌렸던 것이다. 북한은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른 불가침 합의를 구실로 한반도 '평화체계'의 내용을 북·미협정으로 몰고가면서 한국을 미제의 식민지로 호도하려는 대남전략적 발상에 집착하고 있다. 북한은 이같은 전략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핵카드'를 교묘히 활용하여 1994년 10월 21

일 제네바 ‘미·북한기본합의서’를 이끌어내는 데 나름대로 성공하였으며 그에 따라 지금 경수로 협상과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협상이 진행중이다.

한편, 미국은 동서 냉전체제 붕괴 이후 국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대 과제는 ‘핵비확산조약’ 체제를 지속시켜는 것으로 보고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냈으며, 뿐만 아니라 ‘원원(Win-Win)전략’(한반도와 중동지역의 2개의 전쟁을 동시에 승리로 이끌려는 전략)의 다른 대상지역인 중동에 북한의 미사일수출을 차단시키기 위해서도 북한과의 협상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보다 장기적으로는 중국이 가상적으로 부상할 가능성 대비한 일종의 대중 봉쇄정책의 일환으로 북한을 중국의 영향권에서 분리시켜 미국품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도 협상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이와 같이 미국과 북한의 필요에 따라 일단 협상정국이 열리기는 하였으나 북한은 남한당국 배제전략을 고수하려 할 것이므로 미국, 나아가서 일본의 대북한 접근속도를 여하히 남북간 당국대화의 진전속도와 연계시키느냐가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개선의 관건으로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우방 미·일간의 정책적 공조체제를 견고히 유지하는 것이 당면과제로 제기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남북대화의 전망이 좌우될 것이다.

32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무엇인가

북한문제에 접근할 경우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역시 북한의 변화일 것이다. 냉전 이후의 새로운 세계질서 구축이라는 흐름에서 본다면 북한의 변화는 불가피하다. 문제는 변화가 바람직스러운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점에 있다. 물론 우리는 북한과의 협진적 교류로 북한의 개방을 유도함으로써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통일의 문턱에 다가서려고 노력한다.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북한 지도부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왜냐하면 변화는 북한이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희망대로 북한이 변한다고 믿는 자기중심적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북한에 대한 철저한 현실인식에 기초하여 대북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현단계에서 북한 지도부가 최대 당면과제로 삼는 것은 일단 정치보다는 경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들도 통치를 이데올로기애만 의존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은 이데올로기를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밥을 먹고 산다. 그리고 경제적 위기의 극복과 발전을 위해서는 개방과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개방의 물결이 필연적으로 몰고 올 외부세계의 영향과 그로 인한 북한체제의 붕괴이다. 따라서 북한은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까지만 개방하고자 할 것이다. 북한은 이미 김일성 생존 당시부터 어느 정도 협진적인 변화를 모색하여 왔다. 그러나 김일성의

사망으로 북한은 미래의 가능성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고 권력 승계, 식량난 등의 내부요인 때문에 별다른 정책변화가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 그것은 개방 자체가 체제위협 요인이라고 우려하는 시각이 북한 지도부 내부에서 비중있게 작용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 점은 1995년 10월 8일자 노동신문에서 '수령의 전사'라는 제목의 정론을 통해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가 "로동계급의 수령이 서거한 이후… 그의 권위를 헐뜯는 안팎의 원쑤들의 공격과 배신으로 시작된다."고 지적한 것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렇다면 북한이 개방과 변화에 자신감을 갖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여기서 한가지 고려해야 할 것은 최악의 상황을 초래할지도 모를 북한의 붕괴를 전제로 대북정책을 수립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북한체제의 돌발적 붕괴는 우리가 상정하는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며, 미국의 동북아 안보구상의 기본틀에 비추어 보아도 결코 바람직 스러운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의 대북한 전략은 북한을 국제사회 의 일원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북한이 국제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급격한 충격을 통해 폭발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보고, 이른바 '연착륙' (소프트 랜딩)이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요컨대 북한의 붕괴나 전쟁으로 인한 갑작스런 통일은 그 비용이 일시불로 요구되기 때문에 그 보다는 개방을 통해 북한 주민들을 자본주의화하는 단계적, 점진적 방법으로 통일비용을 분할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우리가 '연착륙'을 위해서 북한의 모든 요구를 무조건 수용할 수는 없음도 분명하다.

이렇게 볼 때 현실적 대북 정책수단은 북한의 돌발적 붕괴를 막는 동시에 남북경협의 확대, 신뢰회복과 시장지향적 경제변화의 필요성을 인식 시킴으로써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유도하는 것이 될 것이다.

33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가 채택·발효된 상황에서 합의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1992.2.18~2.21. 평양) 기간중인 1992년 2월 19일에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는 서문에서 남북화해, 남북불가침, 남북교류협력에 관해 향후 남북한이 실천해야 할 사항을 법적 권리와 의무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기본합의서는 내용상 통일 이전의 남북관계를 잠정적 특수관계로 규정하고 통일에 이르기까지의 과도기중 남북간 화해, 불가침, 교류협력 의무를 규정한 ‘잠정협정’의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1992.9.15~9.18. 평양)에서는 화해, 불가침, 교류협력 등 3개분야의 부속합의서와 ‘남북화해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됨으로써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기본틀이 마련되고 그것의 구체적 협력방안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북한측은 같은 해 10월 31일 대남 전화통지문을 통해 한·미 간의 연례적인 군사훈련을 구실로 12월 21일~12월 24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한 제9차 남북고위급회담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특히 1993년 3월 이래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북한의 핵 문제를 통해서 남북관계의 개선보다도 대미접근과 협상을 노리는 북한측의 태도가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이러한 전후사정에 비추어 볼 때, 남북기본합의서의 합의내용이 이행되지 않는 이유를 우리는 일단 합의서에 대한 양측의 인식 차이에서 찾고 있다.

우리측이 기본합의서를 화해와 협력시대의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문서

로 인식하는 데 반해, 북한측은 최고인민회의에서 비준절차까지 밟은 남북기본합의서를 통일전선전술 차원의 대남공작을 합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북한측은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주한미군 철수, 군축 실현, 팀스피리트훈련 중지, 보안법 철폐 등을 합의서 이행의 선결문제로 제시함으로써 합의서의 이행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1994년 북한이 군사정전위에서 일방적으로 철수하면서 정전협정의 실효성을 주장한 것은 남북기본합의서에 위배되는 것이다.

정전협정을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문제는 남북한 당사자원칙에 따라 남북기본합의서의 틀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다. 즉, 남북간 평화체제가 정착될 때까지는 정전협정을 지켜야 하며 그것의 대안은 남북기본합의서상의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특히 북한이 남한은 정전협정 서명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는 미국 역시 유엔을 대표해서 서명한 것이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의 서명당사자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이상의 입장차이는 기본적으로 우리를 배제한 채 미국만을 상대하려는 북한의 태도에서 비롯됨을 알 수 있다.

34

‘남북간에 체제경쟁은 끝났다’고 하는데 남북간의 체제역량을 비교하면 어떠한가

1994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김영삼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친명하였다. “이제 한반도에서도 냉전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남북한 사이의 체제경쟁도 이미 끝났습니다. 사회주의·공산주의의 실험이 실패로 귀결된 20세기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20세기를 지배해 온 양대 이데올로기의 실험적 경쟁이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로 끝난 데서 오는 당연한 귀결로서 “남북한 사이의 체제경쟁은 이미 끝났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단지 남북관계의 현실만이 아니라 이러한 역사적인 큰 흐름을 반영한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하다.

남북한의 체제역량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남북한 체제역량 비교
(1994년 기준)

구 분	단위	북한(A)	한국(B)	배율(B/A)
1. 인 구	천명	22,953	44,543	1.9
2. 경 상 GNP	억달러	212	3,769	17.8
3. 1인 당 GNP	달러	923	8,483	9.2
4. 경 제 성 장 률	%	-1.7	8.2	-
5. 대 외 경 제				
• 무 역 총 액	억달러	21.1	1,983.6	94.0
(수 출)	”	8.4	960.1	114.3
(수 입)	”	12.7	1,023.5	80.6

구 분	단위	북한(A)	한국(B)	배율(B/A)
(무역총액/경상GNP)	%	10.0	52.6	-
• 대 미 환 율	원/달러	2.198	803.62	-
• 외 채	억달러	106.6	568.5	5.3
(순 외 채)	"	-	103.1	-
(외채/경상GNP)	%	50.3	15.1	-
6. 예 산 규 모	억달러	188.8	538.2	2.9
• 군 사 비	"	56.6	130.3	2.3
7. 에 너 지 산업				
• 석 탄	만ton	2,540	744	0.3
• 발 전 용 량	만kw	724	2,875	4.0
• 발 전 량	만kwh	231.3	1,650	7.1
• 원 유 도 입 량	만ton	91	7,803	85.7
8. 농수산물생산량				
• 곡 물	만ton	412.5	574.4	1.4
쌀	"	150.2	506.0	3.4
• 수 산 물	"	99.8	347.7	3.5

※ 출처 : 한국은행, 『1994년 북한GNP 추정결과』(1995)

이와 같은 체제역량의 판도는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을 고려해 볼 때 우리의 '신경제 5개년계획'이 끝나는 1998년에 이르면 남한은 1인당 GNP가 14,076달러에 도달하게 됨으로써 남북한 체제역량의 격차는 더욱 크게 벌어질 전망이다.

35

대북교섭에 있어 창구일원화보다는 민간단체간의 접촉과 대화를 적극 권장하여 교착상태에 있는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우리 정부는 통일실현에 있어서 남북한 당국간 뿐만 아니라, 각 분야의 민간참여를 통하여 인적·물적 교류와 협력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확고히 하고 있다. 이는 각 분야에 걸친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이 화해와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나아가 민족동질성 회복과 민족 공동번영의 길을 확연히 열어 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남북 민간교류 활성화정책의 일환으로 1988년 '7·7선언'을 통해 "남북한간 각 분야의 상호교류를 적극 추진한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한 후,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1990년 8월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및 '동법률 시행령'을 제정하였고, 이 법률과 시행령에서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관하여 통일원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중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1994년 11월 '남북경제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는 첫째, 남북한 간의 인적 왕래와 물적 교류협력을 개방한다. 둘째, 종전까지 통치행위의 차원에서 다루어 오던 남북 교류협력을 법적으로 보장한다는 데 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은 그 누구라도 법적 절차를 밟아 북한주민과 접촉하거나 또는 북한을 방문할 수 있고, 북한과의 교역이나 협력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다음으로 ‘남북경제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 이유는, 1994년 북·미 제네바 핵협상의 타결로 북한 핵문제 해결의 돌파구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하고, 대북 경수로 지원 및 북한과 관련국가와의 관계 개선 등 한반도 주변상황의 전개에 따라 남북한간 경제협력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진전시켜 나갈 시점에 이르렀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 정부가 법적 장치를 마련해 가면서 민간차원에서의 남북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남북관계를 보다 진전시키고 궁극적으로는 통일을 향한 민족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하도록 하자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보다 효율적이며 바람직한 교류협력을 위한 질서를 구축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사업과 이를 위한 접촉과 대화에는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으되 정부가 법으로 정한 절차와 테두리안에서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침을 ‘창구일원화’라고 한다면, 이것은 민간차원의 접촉과 대화에 아무런 장애가 될 수 없다. 일부 식자들이 양자가 모순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정부가 취하고 있는 창구일원화 방침은 모든 접촉과 대화를 정부가 독점하고 민간차원의 참여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 하도록 하는 것이며, 정부측의 관점에서는 남북관계 진전과 교착, 북한의 태도와 그들 내부의 사정에 비추어 그때그때 속도를 조절하고 조장 또는 억제를 적절히 배합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남북간 정치·군사적 대치상태가 아직도 지속되는 상황이어서 어느 개인이나 단체가 북한측과 접촉·대화 또는 교류협력을 자의적으로 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나 사회적 혼란, 그리고 그로 인한 남북관계의 파행을 예방하는 일은 당국의 당연한 책무이며, 이에 대비한 제도와 방침이 ‘창구일원화’라고 보아야 한다. 즉 정부는 교류협력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이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며, 이를 바탕으

로 하여 실제적인 교류협력과 이를 위한 접촉과 대화는 각 분야의 민간인들이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예를 보아도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것들은 당국과의 진밀한 협조하에 이루어진 것들이었음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36

남북 경제교류협력은 현재의 북한체제가 공고화되도록 돋는 것이 아닌가

남북 경제교류협력이 결과적으로 북한체제를 공고화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정작 북한 주민들의 생활향상이나 통일을 앞당기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과거 서독에서도 제기되었던 것으로서 단기적·부분적으로는 그러한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보다 시야를 넓혀 장기적이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남북 경제교류협력은 북한을 개방시키고 변화시키는 것은 물론 우리의 숙원인 통일을 앞당기는 데에도 크게 기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

남북한이 평화통일을 실현해 나감에 있어서는 남북간의 경제적 격차 해소와 북한의 개혁·개방이 필수적인데 북한은 남북 경제교류협력에는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지만, 인적교류나 기타 사회문화분야 교류에 대해서는 그들의 체제유지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소극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는 남북한이 서로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북한이 수용 가능한 분야부터 교류와 협력을 실시하고 점차 다른 분야로 확대·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그런 점에서 경제분야가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경제교류협력은 처음에는 물자교역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그것이 위탁가공교역으로, 다시 경제협력사업으로 발전되면서 인적교류, 수송, 통신 등의 교류가 수반되고 다른 분야의 교류협력을 유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이 외부세계의 정보에 접할 기회가 증대될 것이며, 이것이 북한사회의 개방과 변화를 앞당기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통일이 실현된 다음 짧은 기간내에 남북간의 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엄청난 통일비용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에서 볼 때 통일 이전부터 남북 경제교류협력을 통해 북한지역의 산업 및 사회기간산업 전설을 추진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통일 이후에 일시적으로 소요되는 막대한 통일비용을 분산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남북 경제교류협력은 북한체제의 강화보다는 북한사회의 개방과 변화의 촉진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북한이 남북 경제교류협력을 정치·군사적 목적에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북한의 군수산업이나 기타 체제공고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의 교류협력 보다는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 주민의 생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를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37

이산가족문제 해결에 대해 남북한의 기본입장은 어떻게 다른가

우리 정부의 이산가족문제 해결의 기본입장은 다음과 같다.

이산가족문제는 남북간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면한 과제이다. 즉 분단고통의 극복과 인간의 기본권인 가족권의 보장을 확보하는 것은 인도주의의 문제로서 더 이상 어떠한 이유로도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특히 이산가족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가족상봉의 실현을 위하여 우리 정부는 그동안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다. 그러나 북한의 형편상 당장 실현이 어려울 것을 감안하여 차선책으로 우리 정부는 판문점에 '이산가족면회소'와 '우편물교환소'라도 설치·운영하는 문제와 '고령자 고향방문단'을 우선적으로 선발하여 상호 방문을 실시하자는 제의를 해 놓고 있다. 만일 이 문제도 여의치 않으면 제3국을 통한 서신교환 및 가족 상봉을 위한 노력과 국제적십자사나 UN 등 국제기구를 통한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을 위해 상호 노력하자는 제안도 내놓았다. 이러한 우리 정부의 제의는 이미 '남북기본합의서'와 '교류협력에 관한 부속합의서'에서 쌍방간에 합의된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이산가족문제에 대한 기본입장은 이미 합의된 내용을 실현할 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산가족문제를 정치문제와 결부시키면서 '통일만 되면 이산가족문제는 자연히 해결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이 소극적인 입장을 고수하려는 이유는 폐쇄적인 북한사회가 이산가족들의 자유왕래로 인하여 북한체제의 유지에

부정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을 크게 우려하는 데 있다.

38

남북간 TV 등 언론·출판분야의 교류협력 방안 및 전망은 어떠한가

남북한은 1991년 12월 13일 합의한 '기본합의서'에서 다음과 같이 TV 등 언론·출판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즉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제2장 제9조) 그러나 북한은 이미 합의된 '기본합의서' 및 '교류협력에 관한 부속합의서'의 실천을 거부해 왔다.

일찌기 동서독은 1972년 12월 21일 '기본조약' 체결 이후 제반협정을 체결한 이래 TV 및 언론분야의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해옴으로써 결국 통일실현의 꿈을 달성할 수 있었다. 이러한 독일의 교훈을 거울삼아 이제라도 당장 남북한 TV자유시청, 언론인 상호주재, 출판물 교류 등을 실시하는 것이 민족공동체의 구성과 동질성 회복은 물론 통일로 가는 지름길임이 분명하지만, 북한은 그들의 폐쇄사회 고수와 독재체제유지에 불안요인으로 인식되는 한 TV 및 언론·출판의 교류와 협력을 계속 거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차지하는 매스컴의 놀라운 위력 앞에서 북한은 개혁·개방으로 변화를 시도하지 않는 한 끝까지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북한에는 현재 중앙TV, 만수대TV, 개성TV 등 3개의 TV방송국이 있으며, 중앙방송, 평양방송(대남용), 구국의 소리방송(대남용), 평양FM 방송(대남용) 등 지방라디오 방송까지 14개국이 있다. 그리고 신문은 로

동신문, 민주조선, 평양신문 등 14개 신문이 발행되고 있다.

만약 TV자유시청과 같은 교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선 남북한 방송 시스템의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TV시스템은 'NTSC방식'인데 반하여 북한의 TV시스템은 'PAL방식'이기 때문이다.

39

북한을 방문하거나 북한주민을 접촉하고자 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현재 우리 내부에서 남북간의 교류협력을 규율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령’에 의하면 남북한 주민이 상대지역을 방문하거나, 서로 접촉 하려면 사전에 정부의 승인 등 소정의 법적절차를 거쳐야 하도록 되어 있다. 물론 앞으로 남북간에 왕래 및 통신 등에 관한 세부합의가 마련되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나 그때까지는 우리의 법령이 정한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남한주민이 북한지역을 방문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원장관이 발급하는 ‘방문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방문증명서 발급신청서, 신원진술서 및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여기서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증하는 서류라는 것은 북한 당국 또는 권한있는 기관에서 작성한 초청장이나 각서의 원본을 말한다. 앞으로 남북간에 통행에 관한 세부합의 절차가 마련될 때까지는 방문신청자 스스로 이런 서류를 갖출 수밖에 없다.

다만 재외국민중 외국에서 영주권을 얻었거나 장기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은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고 해당 공관장에게 신고하고 북한을 방문할 수 있다.

북한지역 방문시 방문기간은 1년 6개월 이내이나 필요한 경우 최초의 방문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남한주민이 북한주민과 접촉하려면 통일원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여기서 접촉이라는 것은 남북한 주민이 직접 면담·회합하거나 또는 통신(전화, 전신, 팩스, 편지) 등을 통하여 상호간 의사 를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승인을 얻으려면 북한주민접촉신청서, 신원진술서, 기타 통일원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남북한 주민의 접촉신청은 사전 승인을 받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국제행사에 참가한 사람이 그 행사와 관련하여 북한주민과 접촉하는 경우, 외국에서 우발적으로 북한주민과 접촉하는 경우, 외국에서 가족인 북한주민과 접촉하는 경우, 교역을 위하여 긴급히 북한주민과 접촉하는 경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승인 없이 접촉하는 경우에는 우선 접촉 후 7일 이내에 신고하면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이처럼 우리 법령은 남북한 주민의 상호왕래나 접촉을 적극적인 입장에서 보장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능한 것이다.

40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남북한의 입장과 우리 정부의 경협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

남북한은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와 '교류협력에 관한 부속합의서'에서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과 합작투자 등을 실현해 나가기로 합의함으로써 경제협력을 추진해 나가자는 기본방향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남북간에는 여전히 경제협력의 실천문제에 대하여 기본적인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우리는 남북간에 교류협력을 통한 신뢰구축과 민족동질성 회복 등 민족공동체 형성의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통일국가를 건설하자는 입장인데 반해서 북한은 정치·군사문제 우선이라는 형식적인 논리와 그들의 폐쇄체제 유지라는 실질적인 이유로 선(先)교류협력을 반대하는 입장을 고집해 왔다.

그런데 최근 북한은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근본적인 입장변화는 아니지만 파탄지경에 있는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서방국가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외자도입 관련 법체제를 정비하는 한편 남북간의 경제협력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자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당국간의 경제협력제도 마련은 외면하면서 우리 기업인을 상대로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이중성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를 실질적인 협력관계로 진전시켜 나가면서 민족경제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하여 남북 경제협력을 활성화시키기 위

한 조치들을 취해 나가고 있다.

우선 민간차원의 기업인 방북 등 남북 경제계 인사 상호방문을 허용하고 위탁가공교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술자 방북 및 시설재 반출을 허용하였으며, 시범적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하고 민간차원의 북한지역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활성화 조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남북경제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과 ‘국내기업 및 경제단체의 북한지역 사무소 설치에 관한 지침’ 및 ‘남북한 교역대상 물품 및 반출·반입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개정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민간주도의 남북 경제협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남북 당국간의 협의를 거쳐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분쟁해결장치’ 등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41

남북협력기금의 적립 및 운용현황은 어떠한가

남북협력기금은 1991년 최초로 정부출연금(政府出捐金)으로 250억원을 조성한 후 1992년부터 3년간 매년 정부출연금 400억원씩을 1995년에는 2,400억원을 조성하여 정부출연금 총액 3,850억원을 적립하였다. 또한 민간인의 출연금액은 한국걸스카웃연맹의 1,907만원 등 7건에 1억 2,354만원이다. 기타 운용수익금으로 341억 800만원이 있다. 따라서 1995년말 현재 기금 총조성액은 4,192억 3,200만원에 이르고 있다.

앞으로 남북 교류협력이 활성화되어 동기금의 지원 필요성이 증대될 경우에는 정부출연금의 증액은 물론 장기차입이나 채권발행 및 민간 출연의 확대 등 다각적인 재원조달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남북협력기금의 조성과 기본적인 운용·관리업무는 통일원에서 관장하고 다만 그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수출입은행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다.

남북협력기금의 지원방법으로는 무상지원외에 손실보조, 자금대출, 채무보증 및 관련 은행에 대한 지원 등이 있다. 기금에서 무상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남북한 주민으로서 남북 왕래비용의 부담이 어려운 경우와 문화·학술·체육 등의 남북 협력사업을 시행하는 데 자금이 부족한 경우이다. 또 남북교역이나 경제협력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 손해를 보조해 줄 수 있으며, 남북 교역업자나 협력사업자는 필요한 자금을 기금에서 용자받거나 채무보증을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남북협력기금의 지원실적은 1991년 남북한 탁구 및 축구단 일팀 구성·출전경비 지원으로 9억 5,000만원, 쌀 5천톤 직교역에 따른 손실보조금 12억 6,800만원이 있고, 1992년 이산가족 노부모 방문단 및 예술단 교환사업 준비금 보전으로 5억 5,100만원이 지급되었고 1995년 대북 쌀지원사업 경비지원으로 1,824억 367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총 5건에 1,851억 7,200만원을 지원하였다. 따라서 총조성액에서 지원액 및 위탁수수료(12억 6,000만원)를 제외한 잔액(1995년 말 현재)은 약 2,328억원이다.

앞으로 남북 교류협력이 활성화되면 기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럴 경우 동기금을 대폭 확충하여 수요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42

남북한간에 물품을 반출·반입할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남북한간에 교역을 하기 위하여 교역당사자가 물품을 반입 또는 반출 하려면 대상물품, 거래형태, 대금결제방법에 관해서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교역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외에 무역업의 허가를 받은 무역업자로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교역당사자가 정부의 직접적인 반출입 승인을 받는 것은 제한승인품목에 한하고 기타 자동승인품목은 외국환은행장의 승인을 받으면 된다. 이렇게 정부가 자동승인품목에 대해서 외국환은행장에게 승인권을 위탁한 것은 남북간의 교역을 가능한 한 자유교역의 원칙에 따라 폭넓게 개방하려고 한 것이다.

특히 남북한간의 교역은 민족내부거래라는 특수성이 있고 또 남북교역을 촉진한다는 차원에서 북한지역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및 기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부과금을 면제하는 ‘무관세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무관세원칙은 남북간에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남북한은 남북교역의 무관세원칙을 국제사회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해서도 수출에 준하는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남북교역은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면서 물론 궁극적으로 남북관계 개선, 나아가 통일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질서있게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관계법령과 정부의 지침을 따라서 질서있

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남북교역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남북교역의 특수성과 북한체제의 특수성 등에 따른 어려움을 감안할 때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북한과 교역을 하려는 경우에는 세심한 사전준비가 필요하고 특히 교역상품 선정에는 여러가지 여건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교역을 시작하기 위한 북한상사원 접촉은 믿을만한 중개상을 확보한 후 접촉예정 20일 전에 접촉신청을 해야 한다. 남북교역을 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 체결인바 계약상대방 선정에서부터 계약서 작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약 조건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명기하지 않으면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견본제시 요구, 원산지 표시, 운송방법, 대금결제방법, 선적기일 등을 물론 가격결정에 있어서도 신중히 검토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물품운송에 있어서도 외국항구 경유 운송과 직항로 등의 장단점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선박을 보낼 때는 물품준비상황 확인 후 조치 하지 않으면 입항료, 체선료 등 손해를 보게 된다. 북한측은 납기를 위반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특히 주의하고 원산지 증명도 철저히 하지 않으면 위장반입의 낭패를 볼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이 남북교역에는 신중하고 철저한 주의를 기울여서 추진해야만 일어날지도 모르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43

남북교역으로 손실을 입었을 때 이에 대한 보상제도가 있는가

남북간에 교역을 하는 경우, 우리측 교역당사자는 남북교역의 특수성 때문에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북한은 경제체제가 폐쇄체제이고 무역관행 등이 서방국가와는 달리 불합리한 점이 많으므로 사전준비가 철저하지 못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도 남북교역의 추진과정에 발생하는 분쟁에 대하여 남북간에는 아직까지 아무런 분쟁해결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남북교역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서는 남북협력기금법 등 국내법의 구제방법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남북협력기금법에 의하면 우리측 교역당사자가 남북교역 추진과정에서 반출한 물품대금 회수불능, 대금회수 지연 또는 대응물품의 반입불능 혹은 반입지연 등으로 인해서 손실이 발생하고, 교역당사자의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그 손실액을 남북협력기금으로부터 보조받을 수 있다. 손실을 보조받으려면 남북교역을 시행하기 전에 정부와 손실보조약정을 체결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손실보조 약정자는 손실이 실제로 발생하였을 경우에 사실증명서류와 함께 손실보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부는 정당한 손실보조금신청에 대하여 실제 발생한 손실액의 100분의 90이내의 범위에서 남북협력기금으로부터 손실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민족내부거래라는 성격을 갖는 남북교역과정에서 발생한 손

실에 대하여 일반상사 관련법령이나 수출보험 관련법령과는 별도로 남북 협력기금법은 손실보조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다.

44

남북간 물자교역시 물품의 수송·통관 및 대금결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남북한간 물자교역이란 남한과 북한간 물품의 반출·반입을 말하며, 반출·반입이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간의 물품의 이동(단순히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포함)을 의미하며 이런 물자교역에는 단순한 반출외에 연계교역, 임기공 교역 등 여러 형태가 있다.

이러한 남북교역은 민족내부거래로 인정되기 때문에 원산지가 북한지역으로 되어있는 물품을 반입할 경우에는 무관세로 통관된다. 반면 북한지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관세환급 등 통관절차가 일반수출과 동일하다. 이처럼 정부는 남북교역을 촉진하기 위해서 반출입품에 대해서 각기 유리한 통관절차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남북한의 외국과의 무역물품 운송형태를 보면 남한은 해상운송이 주로 이용되고 필요에 따라 항공운송이 이용되고 있으나, 북한은 육상운송에 대한 의존도가 크고 해상운송은 지리적 여건상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이용된다. 남한은 육상운송에서도 도로수송의 비중이 크지만 북한은 철도수송의 비중이 크다. 따라서 앞으로 남북 직교역시 물자수송에는 상호간 육상수송에 있어서도 도로와 철도의 조정·연결이 필요한 실정이다.

남북간 수송망 연결에 대하여 교류협력에 관한 부속합의서에서는 경의선 등 철도와 문산-개성간의 도로 등을 연결하고 인천, 부산, 포항항과 남포, 원산, 청진항간 해상운송로의 개설 그리고 김포공항-순안비행장

간의 항공로 개설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남북관계의 현실적 여건으로 보아 남북간에는 현재 해상운송이 우선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육로 및 항공수송의 실현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동부속합의서에서는 필요한 경우 '임시교통로'를 개설하여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남북한간 교역된 물품의 대금결제방법은 남북 경제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외국환관리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일반 수출입시의 대금결제와 거의 같으며 외국환관리법에 의해 허용된 결제방법과 결제통화의 사용이 가능하다.

현재 주로 행해지고 있는 남북간 간접교역에 있어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대금결제방법은 제3국 중개인 앞으로 신용장(L/C)을 개설하는 일반신용장 방식이다. 그런데 남북한은 앞으로 남북간 물자교역에 대한 대금결제는 청산결제(清算決濟)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쌍방이 합의하여 다른 결제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합의해 놓고 있다(교류협력에 관한 부속합의서 제1조 ⑧항). 또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도 이러한 방법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45

남북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이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남북 경제협력사업은 남북관계의 특수한 성격을 전제로 하여 추진되는 만큼 어디까지나 남북관계의 개선에 기여하는 방향에서 질서있게 분쟁없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협력사업자는 사업시행중 법령이 정한 절차를 존중하여야 하고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공공질서 및 공공복리를 저해해서는 안될 것이다. 만일 법령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절차위반의 조치를 받아야 할 것이며 때로는 사업승인이 취소될 것이다.

우리측 협력사업자가 북한과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특별히 유의해야 할 것은 투자업종 및 투자방식 선정문제 그리고 입지선정, 출자, 자금 및 원자재 조달, 기타 생산제품 판매문제 등이 될 것이다.

즉 북한과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할 경우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어느 업종에 투자할 것인가 하는 문제일 것이다. 그런데 북한과 협력사업을 추진할 때 업종결정권은 우선적으로 북한측에 있으므로 북한의 투자희망분야를 참작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북한측이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에 제출한 투자유치 희망분야 리스트를 참고해야 하고 나진·선봉지역의 경우에는 북한이 발표한 나진·선봉투자대상 가이드북이 참고가 될 것이다.

투자방식은 북한의 외국인투자관련법에 정한 합영, 합작, 외국인투자(독자) 방식이 있으므로 어느 방식을 선택할 것인가를 신중하게 비교검

토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또 북한과 같이 행정에 있어서 자의성이 강하게 작용하는 곳에서는 협력사업 상대자의 선정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입지선정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용수, 전기, 항만 및 육상교통 등 사회기반시설이라 하겠는데 북한측은 합작기업의 경우 입지선정에 제한이 없으나 외국인기업의 경우 자유경제무역지대로 한정되어 있고, 합영기업도 입지선정에 많은 제한을 하고 있다.

북한의 외국인투자관련법에는 등록자금이나 출자총액에 대한 규정이 없어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 합영기업의 출자비율도 중국이나 베트남과는 달리 명문규정이 없이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하게 되어있어 오히려 북한측의 자의로 규제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남북 경제협력사업 경영에 필요한 외화자금 조달은 북한의 열악한 외환시장을 고려할 때 북한에서의 대부는 어려울 것이므로 우리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 원자재 조달은 남북한 또는 인접국가에서 지리적 근접성 등을 고려하여 구입해야 할 것이다.

북한에서 제품이 생산될 경우 목표시장 선정도 중요하다. 북한내 판매, 남한으로의 반출, 아니면 해외에 수출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고 해외 수출시에는 어느 국가를 목표로 할 것인가를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46

남북 경제교류협력은 정부가 관여하는 것보다 경제단체나 기업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우리 내부에서 남북 경제교류협력을 규율하는 남북교류협력 관련법령은 남북간에 경제교류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승인 등 법적절차를 거쳐야 하도록 하였다. 물론 남북관계가 정상화되고 기타 여러가지 여건이 호전된다면 남북간에 경제교류협력은 물론 모든 교류협력이 민간 자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남북관계로 보아 남북 경제교류협력을 완전한 민간자율로 실시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시기상조라고 생각된다.

우선 남북 경제교류협력의 상대인 북한의 경우 정치·군사는 물론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국가가 주도하고 있으므로 엄밀히 말해서 북한에는 순수한 민간분야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남북 경제교류협력의 완전자율화 주장은 북한의 실체 등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외면한 것이며 국내에서도 경제활동에 많은 규제입법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 경제교류협력의 목적이 단순한 경제적 실리 추구외에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민족경제공동체를 건설하고 나아가 민족통일을 촉진한다는 의의를 고려할 때 정부가 교류협력의 기본원칙을 수립하고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더욱이 초기단계에서는 남북관계의 조화와 체계적인 경제교류협력을 위해서 정부의 조정이 불가피한 것이다.

특히 북한의 대남전략에 변화가 없고 상하층 통일전선전술을 계속해서 구사하고 있는 현실과 우리 기업들이 중국과 러시아에의 진출과정에서 보였던 과당경쟁이 남북 경제교류협력 과정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정부와 민간기업의 상호 협조체제가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앞으로 남북간에 정치적 장애물이 제거되고 통행, 통신, 통상 등 기본적 교류협력제도가 마련되면 민간자율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47

환경보호분야에서의 남북 교류협력방안은 무엇인가

남북한은 유사한 지리적 환경으로 인해서 상호 환경오염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으면서도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환경보호에 대처하는 방식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환경에 대한 인식이 낮으며 따라서 환경오염은 그들의 경제수준에 비하여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의 경제개발과 함께 환경오염이 더욱 심화될 경우 통일후 북한의 산업시설을 국제적 환경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막대한 환경관련 투자비용이 소요될 것이 틀림없고 그럴 경우 통일한국의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 환경보호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의 조기 모색은 남북 통일 후 환경문제에 따른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이다. 남북한이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장기적으로 남북한 경제통합을 목표로 하면서 주어진 여건하에서 상호보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런데 남북한은 공해를 보는 시각, 환경에 대한 자료수준, 환경을 다스리는 법 및 행정기구 등에 있어서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교류협력을 증진시키는 것이 매우 어려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래도 실체적으로 남북한은 환경오염 규제기준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 환경보호 교류협력의 대상사업으로는 첫째, 대기오염의 장거리 이동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하며, 둘째, 지역환경문제

의 공동조사를 실시하고 환경오염의 감소대책을 수립하며, 셋째, 공해산업과 유해폐기물의 지역간 이동 규제를 위한 공동감시체계를 구축하며, 넷째, 남북한간에 환경기술협력 및 정보교환을 위한 남북한 환경보호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같은 남북한 환경보호협력은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민간주도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남북한이 환경보호를 위한 교류협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환경관련투자를 선진국 수준(GNP 대비 1~2%)으로 늘려나가야 할 것이며, 특히 남북한 환경보호협력은 통일비용의 사전부담 차원에서 정부와 기업이 장기적이고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할 것이다.

남북한은 남북관계의 발전단계에 따라 상호 정보교환 등의 단순교류단계에서부터 북한의 환경보호를 위한 산업구조 조정 등 장기협력단계를 거치는 단계적인 교류협력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48

쌀지원과 관련한 우리의 대북협상이 저자세라는 일부의 지적이 있었는데, 북한에 쌀을 지원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를 통해 얻은 정책적 효과는 무엇인가

지난해 우리의 대북 쌀지원은 동포애적 차원에서 추진해 왔던 사안으로, 김영삼 대통령은 1994년 8·15 광복절 경축사와 1995년 3월 7일 베를린 연설 및 5월 15일 서울 IPI 총회 연설 등을 통해 북한주민의 식량난을 덜어주기 위한 대북 곡물지원 용의를 수차 표명해 왔다.

따라서 지난번 쌀 15만톤을 북한에 제공한 것은 어떤 반대급부를 바라고 한 것은 아니며, 오직 북한주민의 어려운 식량사정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순수한 동포애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치이다.

북한은 한 때 우리의 대북 쌀지원을 전후하여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을 자제하는 등 완화된 대남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는 물론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났으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남북관계를 내다 볼 때, 특히 통일과정이 북한주민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민족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길'이라고 하는 시각에서 통일문제를 바라볼 때, 이는 언젠가 남북간에 쌓여있는 불신의 벽을 허물고 화해와 신뢰를 쌓을 수 있는 큰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국적기 계양 및 쌀의 생산지 표시문제 등 협상과정에서 우리가 지나친 저자세였지 않느냐는 일부의 지적도 이상과 같은 대국적 견지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라 할 것이다.

49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의 의의와 당면과제는 무엇인가

남북한은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판문점에서 3차례의 남북고위급회담 대표접촉을 갖고, 1991년 12월 31일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채택·서명한 후, 1992년 2월 19일 평양에서 개최된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이를 발효시켰다.

동 ‘비핵화공동선언’은 전문과 함께 6개항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그 주요내용은 ①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 등을 금지하는 비핵8원칙, ②핵에너지는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 ③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농축시설의 보유 금지, ④핵통제공동위원회가 규정하는 절차, 방법에 의한 상호사찰의 실시 등이다.

핵통제공동위원회에서 논란이 된 것은 제1차 회의에서 우리측이 사찰규정으로 ‘남북상호핵사찰 실시에 관한 규정(안)’을 제시하고 토의할 것을 주장한 데 반해, 북측은 ‘비핵화공동선언’의 1~3항의 이행을 위한 이행합의서와 동 합의서의 부록으로서 ‘사찰규정’을 제시하고 그들의 안을 중심으로 토의할 것을 주장한 데 있었다. 즉 우리측은 ‘비핵화공동선언’의 1~3항 자체가 집행적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별도의 합의서 없이 바로 사찰규정 토의에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데 반하여 북측은 사찰규정을 이행합의서의 부록문건으로 처리함으로써 이행합의서 채택을 사찰규정의 전제조건화 하면서 ‘비핵화공동선언’ 합의시 철회했던 주장을 재론하려는 입장이었던 것이다.

‘비핵화공동선언’의 제5항 “공동선언이 발효된 후 1개월 안에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는 조항에 따라, 이 위원회의 구성·운영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고위급회담 대표접촉이 7차례 있었으며 1992년 3월 14일 제7차 대표접촉에서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되었다. 이에 따라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가 구성되고 1992년 3월 19일 판문점에서 제1차 회의를 가진 이래 13차에 걸친 핵통제공동위원회 회의와 8차에 걸친 위원접촉을 가졌으나, 사찰규정을 마련하지 못한 채 1993년 1월 위원장 접촉을 마지막으로 회의 및 접촉이 중단된 상태이다.

이러한 ‘비핵화공동선언’에 담겨진 의의는 첫째, 남북쌍방이 핵무기가 없는 한반도를 선언함으로써 핵없는 세계를 지향하고 있는 오늘의 국제적 조류에 부응해 나가면서 북한측이 주장해오던 한반도 비핵지대화라는 비현실적 주장을 사실상 철회케 하고, 우리측의 거듭된 비핵화정책을 구체화하고 명시적으로 합의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기여하도록 하는 데 있다.

둘째, 당시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안전조치협정에의 서명, 비준과 엄정한 사찰을 수용하지 않은 시점에서 ‘비핵화공동선언’ 채택과 함께 1992년 1월 30일 IAEA의 핵안전조치협정을 수용, 동 협정에 서명하였고, 그후 IAEA의 사찰을 받았다는 점에서도 큰 의의가 있다.

셋째, ‘비핵화공동선언’ 내용에 남북 상호사찰 조항을 명문화했다는 점이다. 특히 남북 상호사찰은 ①남북한이 원자력산업 분야에서 서로의 협력을 원활히 하기 위해 남북한 핵시설의 완전한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②‘비핵화공동선언’의 이행을 보장하고 존속시키기 위해서는 상호사찰이 실시되지 않으면 안되며, 이는 곧 ‘비핵화공동선언’을 사문화시

커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이것이야말로 한반도문제를 남북한 당사자가 해결한다는 선례를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것이며, ③한국이 상호사찰의 실현을 포기할 경우 '비핵화공동선언'의 이행을 둘러싸고 한·미간에 마찰이 예상되며, ④IAEA사찰과 함께 상호보완적으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국제공조체제하의 별도 남북 상호사찰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상호사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협상과정에서 남북한은 상호 입장차이를 보였다. 즉 우리는 '상호동수원칙'에 의거한 대청사찰을 요구하고 있는데 반해 북한은 '의심동시해소원칙'에 의거한 비대칭사찰을 주장하였다. 이렇듯 북한이 비대칭사찰 입장을 견지하는 이유는 한반도 핵 문제의 근원이 마치 미군의 핵무기와 핵기지에 있는 것처럼 부각시킴은 물론 '비핵화공동선언' 합의이행의 회피,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시키면서 남북 상호사찰을 회피하려는 데 있었다고 보여진다. 특히 북한이 남북 상호사찰을 지연 또는 회피하려는 태도를 취하는 근본이유는 북한사회의 개방에서 오는 체제불안의 두려움과 남한당국 배제전략 때문이며, 국제 여론에 반하여 핵무기개발 의혹을 증폭, 또는 개발을 시도해보려는 의도로 보여지기도 한다.

그러나 북한이 남북 상호사찰을 조속히 받아들여 핵개발 의혹과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야말로 남북한간 민족차원에서의 실질적인 협력이 촉진됨은 물론 더 나아가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대미·일 관계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국제공조 등의 방법을 통해 꾸준히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50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남북 한 상호사찰 조항과 핵안전조치협정상의 IAEA 사찰조항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IAEA의 핵안전조치협정은 범세계적인 핵화산금지체제로서 국제적 장치이며, 남북한 상호사찰제도는 현재 이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한반도를 비핵화하기 위해서 남북 쌍방의 합의(1992.2.19. 발효)에 의한 사찰제도이다.

IAEA 사찰은 해당 당사국이 IAEA에 수시 및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핵물질량과 그 국가 내에 현존하는 핵물질량이 같은지를 비교·확인하고, 핵물질이 핵시설의 외부로 반출되지 못하게 주요 위치에 감시용 카메라의 설치 및 봉인을 하며 연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그러나 IAEA 사찰은 정보와 장소에 대한 접근에 제한을 받게 되는 한계가 있다. 사찰관은 신고된 시설의 약정된 장소에만 접근이 허용되고, 협정 당사국이 동의한 범위 내에서만 사찰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특별사찰제도가 있기는 하나 이 역시 당사국이 동의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즉 UN의 제재방식에 의하지 않고는 강제사찰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또한 사찰대상이 기본적으로 핵물질에 국한되기 때문에 핵물질이 개입되지 않는 핵탄설계 및 제조공정 또는 고풋실험 등에 대한 사찰은 실시할 수 없다. 아울러 NPT나 IAEA의 핵안전조치협정은 당사국의 재처리 시설이나 농축시설의 보유를 금지하지 않기 때문에 당사국의 이러한 시설의 가동과 핵무기개발 가능성을 막을 수 없고, 뿐만 아니라 핵무기를

반입했을 경우에도 사찰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남북합의에 의해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는 이와 같은 IAEA 사찰에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문제를 추가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고려된 사찰제도이다.

첫째,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남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의 시험, 제조, 접수, 보유, 배비, 저장, 사용 등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관련한 의심되는 모든 장소 특히 군사기지도 사찰대상으로 포함된다. 따라서 핵무기에 대한 사찰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핵무기 제조에 필수적인 핵폭발장치, 즉 기폭장치 등에 대한 사찰도 가능하게 한다.

둘째, 비핵화선언은 남북한으로 하여금 핵재처리시설과 농축시설의 보유를 금하고 있기 때문에 핵무기 제조의 원인을 그 짝부터 제거하게 되며, 이는 NPT나 IAEA 사찰체계로는 전혀 접근할 수 없는 측면이다.

셋째, 우리측이 제안한 남북 상호사찰의 내용에는 특별사찰제도가 그 핵심내용으로 되어 있다. 특별사찰은 남북 쌍방간에 서로 의심되는 지역과 시설에 대한 사찰을 할 수 있게 해주어 '비핵화' 의무이행을 상호 확인하는 효과적인 제도로서, IAEA 사찰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한반도 내에서 핵무기의 개발과 보유를 감시하는 데 있어서 IAEA 사찰의 한계점을 보완, 극복할 것으로 기대되었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현재 사찰규정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51

NPT란 무엇이며, 이는 결국 기존 핵보유국만이 핵무기를 갖겠다는 강대국의 논리에서 나온 불평등조약이 아닌가

핵확산금지조약(NPT)은 핵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1968년 UN총회에서 결의안으로 채택되어 1970년 3월 5일 발효된 국제조약이다. 이 조약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한 5개국(미국, 구소련, 영국, 프랑스, 중국) 이외에 비보유국가들의 핵무기보유를 억제함으로써 핵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다자간 조약이다. 12개항의 전문과 11개조의 조문으로 구성된 핵확산금지조약의 골자는 ①핵무기의 수평적 확산(새로운 핵보유국의 등장) 방지, ②핵무기의 수직적 확산(기존 핵보유국의 질적, 양적 증가) 방지, ③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등이다.

NPT의 주요 내용과 그 실효성을 평가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핵확산금지에 관한 것으로 핵보유국의 핵무기 개발지원과 비핵국의 개발시도를 금지한 내용이다. 이는 대체적으로 이행되고 있으나 5개 핵보유국과 원자력 선진국들이 정치적·상업적 동기에 의해 핵잠재국들의 핵무기 개발을 지원하고 이라크와 북한 등 신흥 핵개발국들이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을 시도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둘째, 안전조치에 관한 부분은 비핵국의 NPT준수 검증으로 비핵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IAEA 사찰로 나누어져 있다.

셋째,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부문은 핵보유국과 비핵국들간에 이해가 침에하게 대립되고 있다.

넷째, 군축부문은 핵무기의 수평적 확산금지와 수직적 확산금지를 연계

하려는 비핵국들의 요구로 핵보유국들의 입지가 약화되었다.

다섯째, 비핵국의 안전부문은 비핵지대 창설과 안전보장으로 세분된다. 핵보유국은 비핵국의 안전보장을 제공하고 있으나 비핵국들은 보다 완벽한 안전보장을 원하고 있다.

여섯째, 조약의 개정, 이행 및 연장을 규정한 부문은 조약의 개정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개최는 없었으나 '조약이행평가회의'는 1975년부터 5년마다 개최되었고, 1995년 연장회의에서는 NPT체제를 지속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이 조약내용에서 핵보유국과 비핵국의 의무는 불평등하게 되어 있다. 예컨대 비핵국은 핵무기의 제조나 보유를 할 수 없고 IAEA의 사찰을 받을 의무가 있으나, 핵보유국은 IAEA의 사찰을 받을 의무도 강제 조항이 아니다. 바로 이같은 점들이 조약의 불평등성을 제기케 하는 것들이다.

1995년에는 프랑스와 중국의 핵실험이 세계여론의 지탄이 된 바 있었다. 그러나 더이상 핵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핵보유국이 늘어나지 않도록 해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감시체제로서 IAEA의 사찰을 받도록 하는 것은 불가피하고 당연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더 적절한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 앞으로 핵보유국들은 보다 효과적인 핵기술 이양 및 보유 핵무기의 감축 내지 철폐를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하며 이를 보장할 제도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금년에 핵실험금지조약(CTBT: The Comprehensive Test Ban Treaty) 체결이 추진되며, 비핵국에 대한 안전보장의 구체적 명문화 등도 시도되고 있다.

52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성격과 역할은 무엇인가

KEDO는 제네바 기본합의문에 규정된 대로 대북 경수로사업의 재정과 공급을 담당하는 다국적 콘소시엄형태의 기구로서 1995년 3월 9일 정식 설립되었으며, 동년 7월 20일 뉴욕에 본부사무실을 개설했다. KEDO의 집행이사회는 원회원국인 한국, 미국, 일본 3국으로 구성되어 최고의사결정기관이 되며, 전원합의제 형태로 지도적 역할을 맡는다.

사무국에는 최고위직인 임기 2년의 사무총장 1명(미국인 보스워스 총장)과 사무차장 2명(한국:1명, 일본:1명)을 두며, 정책기획, 계약사업관리, 예산재정 및 행정담당 4개 부서의 25~30명 정도의 요원이 이미 공식업무에 들어갔다. 직원채용은 재정분담률에 맞추어 그 수가 정해진다.

1995년 7월 31일과 8월 1일에 개최된 첫 총회에서 유럽, 아·태, 중동 지역의 32개국과 EU가 참여하여 KEDO의 사업현황과 향후 대책을 논의하였다. KEDO 설립협정에 명시된 목적은 1000MWe 용량의 2기 한국표준형 원전을 북한에 제공하고, 폐연료봉 처리와 경수로 1호기 완성 시까지 대체에너지 공급문제를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이다. KEDO는 경수로건설의 총사업규모를 정하고 경비산출과 제공비용의 회원국 각출규모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중에 있으며, 또한 우리기업인 '한전'과 경수로 상업계약 체결교섭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총회는 북한의 핵문제가 갖는 국제적 성격을 감안하여 가능한 한 많은 나라를 참가시키기로 하였다. 우선 회원국으로 영국, 카나다, 뉴질랜드, 호주, 핀란드 등이 가입하였으며, 이들 국가들은 일부 기여금을 납부하

였거나 납부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경수로 사업을 KEDO라는 국제기구를 통해서 추진키로 한 것은 북한이 남한과의 직접대화를 기피하며 형식적이라도 미국을 통하여는 저의에 기인한 것이다. 어쨌든 KEDO는 경수로사업 추진과정에서 향후 발생될 수 있는 남북간의 대립과 충돌을 완충시키는 국제적인 보장 장치로서 역할이 가능하게 되었다.

53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사이에 체결된 경수로 공급협정의 구체적 내용과 그 의의는 무엇인가

지난 1995년 6월 13일 쿠알라룸푸르에서 미국·북한간의 합의결과에 따라 12월 15일 뉴욕에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간에 대북 경수로공급에 관한 국제조약성격의 협정문이 정식서명되었다. 이는 전문 18개조와 4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에 체결된 경수로 공급협정의 의의는 그동안 우리가 주장했던 ‘한국표준형 원자로’ 공급과 ‘한국의 중심적 역할’ 수행이라는 경수로 사업의 원칙이 재확인된 점과, 북한 핵문제 해결에 진일보한 것이다. 북한 핵 문제 해결의 핵심요소인 경수로사업의 기본골격이 만들어지고 지금까지의 정치적 합의사항이 국제법적 의무사항으로 전환되었으며 앞으로 IAEA의 임시·일반사찰이 재개되며, 장기적으로 남북한간의 교류협력과 긴장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지난 12월 26일 북한측의 우성호 선원 송환도 그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협정문의 구체적 내용중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첫째, 공급범위에 있어서 우리측은 경수로 원전건설과 이에 필수불가결한 사항에 한해 부담하게 되었다. 부지준비, 부지내의 공사용 도로, 공업용수, 공사관련 인원 숙소 등 건설개시에 필요한 공사와 냉각수 취·배수용시설, 바지선 물양장, 수중보를 포함한 양수시설 등 원전운영에 필수적인 사항과 기타 모의훈련대 등 원전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 등 통상적인 원전건설에 포함되는 범위내로 한정하였다.

북한은 당초 ‘시작에서 끝까지’ 일체의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종국적으로는 시운전 전력 등 북한측 부담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부속서2’에 동의하였으며 송배전시설, 항만시설 개선, 핵연료성형공장, 사용후 연료 영구저장시설 등 처음의 무리한 요구는 결국 철회하였다.

둘째, 상환조건에서도 북한은 흑연료 기투자분 탕감요구도 철회했으며 경수로 각 호기별로 ‘3년거치 17년상환’의 무이자 조건으로 합의하였다. 북한은 당초 흑연료 투자분 탕감과 10년거치 30년상환을 요구했었다.

셋째, 사업진행에 긴요한 사항인 통신·통행, 사무소 설치문제로 통행로(해·공로)는 북한측이 지정하되 KEDO와의 합의가 필요하며 기존 통신시설에 대한 방해받지 않는 이용 보장과 KEDO 및 KEDO측 사업자의 독자적 보안통신수단 설치도 허용되었고, 사무실 설치문제는 현장 사무소외에 공항 등 직접 관련지역에 추가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넷째, 사업참여자간 효율적 접촉과 협력을 위해 사업자간 접촉이 허용되었고 각종 허가발급 및 KEDO, 계약자, 임직원의 세금과 관세 등도 면제되며 신변보장과 영사보호를 수용했으며 또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원칙이 확보되었다.

다섯째, 핵활동 관련 의무사항으로 북한은 NPT잔류, 핵동결 및 해체, 폐연료봉 국외반출, IAEA 임시·일반사찰 재개, 안전조치 전면 이행 등 의 의무를 지게 되었다.

여섯째, 법률적인 사항으로 KEDO의 독립적·법적 지위가 인정되고 분쟁해결 절차에서도 중재위원회의 권능을 인정받게 되었다.

앞으로 한·미·일·KEDO간 경수로 및 관련사업의 재정분담 협의와 시행세칙을 위한 ‘별도약정’ 관련 KEDO-북한 후속협상, 한전-KEDO

통일문답

간 상업계약 체결, 부지조사 등이 본격화되고 핵안전 관련사항이 진행될 것이다.

54

대북 경수로 건설지원과 관련하여 한국, 북한, 미국, 일본 등 관련국의 기본입장 및 쟁점사항은 무엇인가

한국은 대북 경수로지원과 관련하여 법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을 설치·운영(1995.1.22)하고 있으며, 이 사업과 관련한 우리의 기본입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수로 지원과정에서 우리가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비용부담에 상응하게 경수로건설 계약 및 이행단계에서 우리의 주도적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경수로 지원은 반드시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북한에 대한 경수로 지원은 민족내부간에 이루어지는 협력사업이라는 성격을 갖기 때문에 교류협력법과 남북협력기금법 등 국내 법질서와 부합되게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공동체의 건설과 민족복리의 증진이라는 '민족발전공동계획'의 시작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경수로지원은 북·미합의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추진되어야 한다. 경수로지원을 위해서는 북한의 핵동결 조치와 함께 IAEA의 핵안전 조치협정이 이행되어야 한다. 즉 북한의 핵투명성이 보증되어야 하며, 뿐만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의 이행과 남북대화 재개 등 북·미 기본합의서에서 합의한 사항이 경수로 지원과정과 연계되어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에만 집착하며 한국을 배제하려는 기본전략에서 줄곧 협상에 임해왔다. 북한은 노형 선정문제에서 한국형 경수로의

안전성 결여를 평계로 거부하였으나 현실적으로 한국표준형 이외의 다른 대안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어 결국 받아들였다. 인허가 절차에서도 북한법에 따른 자의적 절차를 주장하다 ‘안전심사분석보고서’에 기초한 우리측 허가절차를 수용하였다. 북한은 경수로 공급범위에서도 일체의 비용부담에 반대하며 송배전시설, 항만시설 개선, 핵연료성형공장, 사용후 영구 저장시설 등 무리한 요구해 왔으나, 협상과정에서 이를 철회하였다. 당초 북한은 대금상환 및 제반 의무사항 등 부담을 다소나마 줄이고자 하였으나, KEDO측이 제시한 3년거치 17년 무이자 분할상환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포기할 수 없었으며, 김일성의 유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북한은 자기들이 비난했듯이 한국형 경수로가 북한사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트로이의 목마’라고 여기는 측면이 있다. 남한 기술자가 북한을 왕래하게 되면 북한 주민들에게 미칠 정치적 파장을 우려하여 북한은 가급적 한국측 인력들이 북한주민과 접촉하지 않도록 원자력 발전소 건설지역인 신포를 경수로특구로 지정하여 다른 지역과 분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핵개발 계획을 동결하고 과거핵 의혹을 규명하여 NPT 체제를 유지하려는 것이 기본입장이며, 북한의 갑작스런 붕괴보다는 점차적인 개방에 의한 변화와 한반도의 질서와 안정을 바라고 있다. 1996년 11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북관계에서 시끄러운 문제의 발생을 원치않기 때문에 북한의 요구에도 무조건 거부할 수 없는 입장이다.

앞으로 한·미·일·KEDO간에 경수로 지원 재정분담을 위한 협의가 계속되겠지만 미국은 적성국교역법, 수출법, 핵비확산법 등의 제약 등 국내법상의 규제를 이유로 경수로 건설을 직접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당초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1996년도 50만톤의 중유비 부

담 비용 5천만달러 가운데 1천9백만달러를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다. 경수로 지원자금은 한국과 일본이 주로 부담하고 미국은 콘소시엄 형성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일본 역시 북한의 핵위협을 줄이기 위해서는 경수로 건설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원칙에는 찬성하고 있으나, 자금부담에는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은 특히 북한과의 수교협상이 구체적으로 진척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금을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이같은 입장은 북한과 수교를 할 경우 일제 식민지지배에 대한 북한의 배상요구를 들어주어야 하는데 이 문제와 경수로 지원을 연계시켜 해결하려는 의도 때문이다.

대북 경수로지원은 KEDO에서 담당하기로 한·미·일 3국이 합의하였지만 앞으로 계속 경수로 및 관련사업 재원분담 및 재원조달 협의가 쟁점이 될 것이며 KEDO-북한간의 공급협정문의 후속 이행약정의 협상을 위해 KEDO-북한간의 부지인수절차, 영사보호, 상환절차, 구체적 공급 등 10여개 사안을 대상으로 1996년부터 협상이 본격화될 것이다.

55

북한에 제공될 ‘한국형 경수로’란 무엇이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대북 경수로공급에 관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간 협정문 제1조의 노형 및 공급발전소에 관한 규정은 KEDO가 북한에 2개의 냉각재유로를 가진 약 1,000메가와트 용량의 가압경수로 2기로 구성되는 경수로 사업을 일괄 도급방식으로 제공한다고 되어 있다. 노형은 KEDO가 선정하며 미국의 원설계와 기술로부터 개발된 개량형으로서 현재 생산중인 것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합의문은 북한에 제공될 경수로에 관해 ‘현재 건설중인 두 개의 냉각재유로를 가진 1,000메가와트 가압경수로 2기’라는 기술적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표준형 원자로의 제원(諸元)들이며 일체 다른형은 배제된 것이다. 노형은 KEDO가 선정한다는 규정도 이미 한·미·일 3국간에 한국표준형 경수로로 합의된 사항이다.

KEDO와 우리 기업인 한전간에 경수로 상업계약(주계약) 체결교섭이 곧 본격화되어 약 1년정도의 소요기간이 예상된다. 즉 한국형 경수로란 미국 컨버스천 엔지니어링사(CE)로부터 기술도입한 경수로(영광 3,4호기)를 우리의 실정에 맞게 개량하여 우리 기술로 설계한 경수로를 칭하며, 현재 건설중인 울진 3, 4호기가 한국형 경수로 1호기다. 울진 3,4호기는 1985년부터 정부가 본격적으로 추진해 온 원전 자립계획의 소산물로 영광 3, 4호기와는 기술적으로 1백여 항목의 차이를 보이며 가동률과 안정성이 크게 향상된 것이 그 특징이다. 오는 1998년 울진 3호

기가 완료되면 현재 93.3%인 우리의 원전기술 자립도는 거의 1백%에 육박할 것이다.

한국형 경수로가 서방의 기존 원자로와 견주어도 전혀 손색이 없고 러시아형보다 월등하다는 것은 모든 전문가들이 입증하고 있으며, 북한에서도 인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번 계기는 우리의 원자력 기술능력과 기술향상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다.

56

대북 경수로 건설지원사업이 공급협정의 타결로 본격화되고 있는데 우리가 강조해 온 '중심적 역할'은 무엇을 의미하며 건설비용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가

대북 경수로공급에 관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간 협정문 제1조 3항에 기술수준에 있어 KEDO가 선정한 노형에 적용된 기술기준을 인정함으로써 경수로 발전소의 설계·제작·시공·시험·시운전·운전 및 유지보수뿐만 아니라 안전물리적 방호, 환경보호 및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에도 적용된다는 규정은 우리가 강조해 온 중심적 역할을 의미한다.

경수로 제공에 있어 주계약자 문제가 핵심쟁점이었다면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협정 당사국인 한·미·일 3국간에 한국기업이 주계약자가 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인식을 공유한 기준합의와 협정문 규정이 뒷받침한다. 즉 한국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은 경수로의 설계, 제작, 건설을 한국이 모두 맡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기업이 주계약자 입장에서 공식 국제기구를 통해 지원하는 형식이다. 현재 경수로의 국산화율(자립도)이 설계 95%, 제작 98%, 시공 100% 정도이며 나머지 부문을 미국기업 등에게 용역과 하청을 줄 수 있다. 경수로 건설은 방대한 사업이기에 원가절감을 위해서라도 해외에서 싼 부품을 구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술부분은 북한도 인정했으며 한국형 경수로가 빠지면 북한 핵문제 해결의 전체구도가 와해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여있다.

1994년 11월 KEDO 설립회의로부터 한국기업이 KEDO와 주계약자

가 된다는 합의는 한국이 중심적 역할을 한다는 것이며 협정문은 이를 재확인한 셈이다. 우리 정부가 현재 고려중인 경수로 전설비용 부담은 총비용의 상당부분으로 판단하고 있다. 참고로 참조발전소인 울진 3, 4호기의 총공사비는 43.5억불이 들어간다. 이러한 막대한 재원마련에 정부는 가능한 한 국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최종 결론은 나지 않은 상태이다.

앞으로 KEDO-북한간에 경수로의 공급범위와 공급가격, 공급협정의 세부사항이 결정되어야 총공급비용이 산출되게 되고, 이에 따라 한·미·일 등 경수로 사업 참여국가간의 협의를 통해 관련국간의 비용분담비율이 확정될 것이다. 동합의시 우리의 부담부분은 국민대표기관인 국회의 동의를 받아 확정시켜야 할 것이다.

IV. 북한실상

57

북한이 말하는 소위 '우리식 사회주의'의 특징과 문제점은 무엇인가

'우리식 사회주의'란 주체사상을 기초로 하여 북한의 현실을 정당화하기 위해 만든 북한 특유의 사회주의를 일컫는다. 이 용어의 연원은 이른바 '우리식 대로 살자'라는 구호에서 찾을 수 있는데, 1978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책임간부협의회에서 김정일이 '우리식 대로 살아 나가자.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당이 중요하게 내세우고 있는 전략적 구호'라고 말한 것과 관련된다. 그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 수행에서 주체사상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해 나갈 것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그후 1989년 당시 '근로자' 10월호에서 '우리식 대로 살아 나가는 것은 우리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 있는 전략적 방침'이라는 제하에서 동구에서의 민주개혁을 신랄하게 비난하면서 전체주민이 '우리식 대로 살아 나갈 것'을 강조했다. 그러나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김정일이 1991년 5월 5일 행한 담화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뛸승불패이다'와 1994년 11월 1일에 발표한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라는 논문에서 이론적으로 정식화 되었다.

1991년 5월의 담화에서는 우리식 사회주의의 특징을 3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주체사상을 구현한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이다. 주체사상은 노동계급의 혁명사상이며, 개인주의보다 집단주의를 강조하는 사상임을 밝히고 있다.

둘째, 집단주의에 기초한 조직화된 사회로서 정치생활과 사상생활을 중요한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특히 사회주의 사회의 사상생활은 노동계급의 혁명사상에 기초한 사상생활이며, 노동계급의 완성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상생활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 수령·당·대중이 일심단결된 불패의 사회주의이다. 인민대중은 사회를 건설하는 주체이긴 하지만 당과 수령의 ‘두리’에 하나로 굳게 단결하여야 혁명의 주체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사회주의는 과학이다’에서도 3가지의 특징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선행 사회주의 이론은 주로 물질경제적 요인에 의한 변화발전을 주장하였는데 반해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의 주동적인 작용과 역할에 의하여 발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둘째, 사람을 육체적 생명과 사회정치적 생명을 가진 존재로 규정하고 전자보다 후자를 더 중요시 여겨야 한다고 강조한다. 즉 물질보다는 정치사상적 생명을 더 귀중히 여기고 있다.

셋째, 능력있는 지도자보다 인덕있는 지도자를 더 강조하여 김정일을 인덕있는 지도자로 선전하고 있다.

한마디로 주체사상에 바탕을 둔 북한식 사회주의는 정치적·이념적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일반 당중심 사회주의보다는 수령 1인중심의 전체주의 성격이 부각되고 있으며, 개방화·민주화 시대에 전근대적 가부장적 통치규범을 기본으로 하고 있음이 그 한계이다. 특히 오늘날 탈이념적이고 경제실리 위주의 개방사조와는 동떨어진 고립적·폐쇄적 이념이란 점이 문제이다.

58

북한의 권력구조 내에서 '수령'의 위치는 어떤 것인가

북한 권력구조의 가장 큰 특징은 '수령의 유일지도체제' 라 할 수 있다. 그동안 북한에서 김일성의 절대 권력을 보장해 주던 메카니즘은 바로 '수령제' 였다. 북한의 '백과전서'에 의하면 수령은 인민대중 속에서 최고의 영도적 지위를 차지하는데 그 지위는 절대적이라고 하며, 수령은 무엇보다도 근로인민대중의 최고 뇌수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다른 표현은 노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는 당과 혁명의 최고 영도자라고 한다. 한마디로 수령은 인민대중에게는 최고 뇌수이며 당과 혁명투쟁에서는 최고 영도자이다.

그런데 수령의 지위는 당과 국가기관의 지위를 차지한다고 하여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수령은 인민대중에 의하여 추대되지만 그들 중에서 나온 모든 특출한 개인과는 달리 인민대중 전체의 의사와 염원, 이해관계를 대변하여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인민대중 전체를 영도한다고 한다. 그러나 사실 김일성 수령은 소련공산체제의 도움으로 권력을 인계받고 피의 숙청을 통해서 권력을 잡았다. 인민대중으로부터 추대받은 것이 아니다.

수령제도는 김일성 1인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상징적 지위임이 틀림없다. 이것이 등장한 시점은 항일빨치산파들이 숙청을 통해서 권력을 잡은 1960년대 후반, 즉 1967년 당중앙위원회 제4기 15차 전원 회의에서 반당 수정주의 분파를 분쇄하고 나서 당의 영도방법을 수령의

통일문답

영도방법으로 전환하게 되었다고 하는바 이것은 북한의 권력체계가 공산주의식 당중심의 권력체계라기보다는 1인의 전체주의적 권력체계에 역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9

북한이 주장하는 ‘민족대단결 10대강령’의 내용은 무엇이며, 이를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북한이 주장하는 ‘민족대단결 10대강령’이란 1993년 4월 7일 최고인민회의 9기 7차 대회에서 김일성이 직접 작성하여 발표한 것으로서,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민족대단결→자주·평화·중립적 통일국가 창설, ②민족애·민주·자주정신에 기초한 단결, ③공존·공영·공의로 통일위업에 복종하는 단결, ④분열과 대결을 조장시키는 정쟁을 중지하는 단결, ⑤복침·남침위기를 제거하고 신뢰하는 단결, ⑥주의·주장이 다르다하여 배척하지 않는 단결, ⑦개인·단체의 재산을 보호하고 통일에 기여하는 단결, ⑧상호접촉·대화·왕래를 통한 단결, ⑨북과 남, 해외동포의 연대성을 강화하는 단결, ⑩통일위업에 공헌한 사람들을 높이 평가하는 단결 등이다.

북한은 그동안 ‘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지지하는 평양시 군중대회를 비롯하여 전국에 걸친 지지·관철 군중대회를 대대적으로 개최하였고, 우리측 재야단체들과 종교인들에게 ‘이 강령의 취지에 호응을 촉구’하는 편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북한은 이 강령이 “전민족의 대단결을 도모하기 위한 리론·실천적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힌 민족단결의 대현장”이라고 선전하면서 “남조선과 해외, 각당, 각파, 각계각층 동포들의 애국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며 그들과 련대·련합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공동행동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선전하였다.

북한은 이 강령을 향후 통일투쟁의 선전구호화하려는 의도에서 채택하였고, 아울러 남조선과 해외동포들과의 통일을 위한 공동행동을 강조함으로써 남한의 좌경세력과 해외친북세력과의 통일전선전술을 전개할 목적으로 채택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이 강령은 북한의 대내적 체제결속의 도모에 이용하려는 목적에서 채택되기도 하였다.

60

동구사회주의권 및 소련 붕괴 이후 북한의 통치이데올로기 변용의 배경과 내용은 무엇인가

1945년 해방후 소련 점령정책하에서 출범한 북한정권은 당연히 마르크스·레닌주의를 통치이념으로 하였으나, 1955년 12월 28일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하여'란 김일성 연설을 계기로 '주체사상'으로 전환되면서 주체사상의 내용과 강조점이 정책환경의 변화에 따라 미묘한 '변용'을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례를 듣다면 이른바 혈맹관계인 중국이 실용주의 노선에 따라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자 북한은 주체사상의 핵심개념을 이른바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으로 포장하였다. 인간에게 육체적 생명이 있듯이 수령·당·인민대중의 통일체인 사회정치적 생명도 뇌수인 수령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는 '수령론'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은 김일성 독재론으로 발전한다. 이와 같이 북한의 통치이념인 주체사상의 내용이 변용된 것은 중국을 비롯한 공산권에서 노도와도 같이 확산되어 가는 개혁·개방 물결의 유입을 차단시켜 김일성·김정일 유일독재체제를 유지시키려는 정책적 요청에서였다.

그런데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소련 및 동구공산권이 붕괴되는 실로 충격적인 사태가 발생한다. 이에 김일성은 통치이념의 혜석권을 김정일에게 부여해왔던 그때까지의 관례를 깨고 1991년 8월 1일 '우리민족의 대단결을 이루하자'라는 연설을 한다. 김일성은 이 연설에서 자기는 공산주의자, 국제주의자임과 동시에 민족주의자라고 자처하고 민족이 있고

서야 계급이 있을 수 있다고 호언하면서 민족통일을 위한 '민족대단결'을 주장하고 나섰다. '주체사상'을 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 이탈·북한은 이미 1972년 개정된 사회주의 헌법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란 용어를 완전히 삭제시켰다. - 시켜 민족주의로 포장한 것이다.

한편, 1994년 7월 8일 김일성이 급사하자 20여년간 후계구축 작업을 진행시켜 왔음에도 불구하고 김일성과의 카리스마 격차로 노동당 총비서직과 국가주석직을 즉각 승계할 수 없는 통치위기 상황에서 김정일은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등 인민의 사상강화를 위한 논문을 연이어 발표하면서 1996년 신년사-당보·군보·청년보 공동사설-는 경제적 진지, 군사적 진지와 더불어 정치사상진지라는 개념을 도입하였고, 이보다 앞서 1995년 12월 15일 발표한 김정일의 혁명선배 존경 운운의 논문에서는 난데없이 혁명선배 속에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 스탈린을 포함시키되 모택동, 등소평은 거론조차 하지 않으면서 수정주의노선을 격렬히 비난하고 있다. 국제공산권이 붕괴되거나,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고, 김일성마저 사망한 통치위기 상황에서 북한정권이 발버둥치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61

김정일의 공식적 권력승계 지연사유는 무엇이며, 승계시기 는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있는가

김정일의 당 총서기직 및 국가주석 승계시기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견해가 있으나, 주목할 만한 것으로는 '3년상 탈상'을 근거로 한 1996년 또는 1997년 승계전망이 있다. 우리의 전통적 풍습에 따르면 그 시점은 1996년 7월이다. 그러나 3년 탈상을 1997년 7월로 보는 견해도 있어서 주목된다.

그렇다고해도 김정일은 무난히 권력을 승계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다만 현재 승계시기가 지연되는 것은 유훈통치, 경제난, 카리스마 보완, 건강문제, 미국과의 관계개선 등이 중첩되어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결코 김정일의 권력기반이 취약하고 불안정해서가 아니라 북한 전체 권력구조에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미 김정일이 실질적 권력을 장악한 상태라면 공식직함이 그렇게 필요한 것은 아니며 한편으로는 현재와 같이 어려운 시기에 유훈통치를 강조하는 것이 책임을 회피하는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왜 공식승계가 지연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이러한 설명들은 제한된 정보의 범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그 정확성에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62

김정일이 공식승계시 권력구조의 변화가능성 및 변화형태는 어떻게 예상되고 있는가

김정일은 1995년에 두개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하나는 '조선로동당은 김일성동지의 당이다'이며, 다른 하나는 '혁명선배를 존대하는 것은 혁명가들의 숭고한 도덕의리이다'인데, 이 두편 논문에서 공통적인 것은 '정치적 수령'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북한 권력구조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으나, 김일성 없는 북한의 권력구조에 부분적인 변화는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북한의 권력엘리트들도 국제적 이미지, 김일성 체제의 정통성, 남북한 대결상황을 감안하여 김정일 체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최선의 권력형태를 만들려고 할 것이다. 이미 1992년 4월에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 김일성의 무제한 권력행사를 제도화했던 주석제도를 개정하여 실질적인 최고권력직이었던 주석직을 상징적인 직위로 변화시켰다. 이것으로 권력의 축이 당중심의 권력체제로 정상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 경제관리를 정무원 책임제로 하여 효율성을 촉진하는 등 전문성을 요하는 부문에 대해서는 역할을 분담토록 조치한 것도 변화의 모습이다.

따라서 북한의 '수령의 유일적 지도체계'의 형태는 당분간은 지속되더라도 내용상의 변화는 시도될 것 같다.

첫째는 집단지도체제의 가능성이다. 김일성 사망 이후 '당정치국' 또는 '당중앙위'의 위임을 받아서 연설을 행했던 점과 중·소가 집단지도체제의 형식을 띠고 있었던 점은 좋은 선례를 제공할 것으로 본다.

둘째는 최고지도자 역할의 제도화방안으로 중국의 등소평의 통치모델과 일본 천황과 같은 모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중국식은 최고지도자로서 인정되어지기 위하여서는 지도자가 반드시 국가의 직위를 가져야 한다거나 지배당의 공식적 지도자이어야 한다는 당위성이 필요없다. 최근 김정일의 논문 '혁명선배를 존대하는 것은 혁명가들의 숭고한 도덕 의리이다'에서 지도자의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즉 당과 국가의 지도적 지위를 차지한다고 하여 지도자가 되고 인민의 지지와 존경을 받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니며, 지도자는 품격과 자질을 갖추고 지도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식 모델을 연상케 하고 있다.

'만수로프' 교수에 의하면 북한관료들이 일본식 천황제의 모델을 거론한다고 한다. 최고지도자로서 김정일의 이상적 역할은 그의 아버지와 같이 국가의 단합을 상징하는 것이지만 그가 경제 및 외교문제에 대한 실제적 경험을 결여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정책결정과정을 초월한 입장에 정치적 분쟁의 최종중재자로서, 그리고 헌법질서의 수호자로서의 역할만을 하면된다는 것이다. 현재 경제·외교를 전문가에게 맡기고 있는 것으로 보면 추정해 볼 수 있는 대안이다.

63

북한체제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는 무엇이며, 봉괴 가능성과 그 생존전략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위기’는 유동적인 제요인이 체제존속에 침략을 가져오거나 또는 체제에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도전적 원인이 나타날 때 인식되어지는 상황의식과 관련된다. 현재 북한의 상황을 위기로 인식케하는 제정후가 나타나고 있다. 체제내적으로는 식량난과 함께 경제적 어려움, 대홍수의 피해 그리고 김일성 사망 등이다. 전자는 경제적 문제이고 후자는 정치·사회적 문제이다.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구조적 결함과 동구 사회주의국가와의 교역단절 그리고 군사비 과다지출 등으로 만성적 경제난과 식량난을 겪고 있으며, 1995년부터는 식량부족이 누적되어 적대국에게까지 쌀지원을 호소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였다. 더욱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백년 만의 큰 수해까지 당한 북한은 민심까지 뒤숭숭할 정도로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북한은 경제난·식량난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일부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개방하고, 미·일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외교전략에 부심하고 있다.

김일성의 뜻밖의 사망은 북한체제에 어떤 것보다도 위기감을 주었으리라고 본다. 김일성 사망 이후 1년 7개월이 경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김일성 유훈통치를 지속하고 있는 것을 보면, 북한전체에 미친 영향이 얼마큼 큰 것인가를 짐작케 한다.

북한은 김일성 사망의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 금수산의사당에 김일성 시신을 생전의 모습으로 보존케 하여 1996년 벽두부터 북한의 지도급 인사들에게 순례케하는가 하면 ‘김일성은 영원히 살아 있다’는 구호를 만들어 주민들을 선동하고 있다. 그렇지만 김일성의 사망이 북한체제의 전망을 어둡게 하는 위기의 원인임은 틀림없다.

대외적으로는 구소련의 붕괴와 동구 사회주의국가의 개혁·개방이 북한에 위기의식과 고립감을 갖게 했다. 이것은 단순히 심리적 차원이 아니라 경제분야에 막대한 타격을 주었다. 1990년에 북한과 소련의 무역량은 24억불이었으나 1992년에는 5억불로 급감하였다. 그리고 동구의 개혁·개방으로 북한은 사회주의국가의 시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소련과 동구의 체제붕괴는 북한의 대외환경구조에서 위기의 핵심이다.

또한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관련한 미국과의 갈등이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시도와 NPT 탈퇴선언은 동아시아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핵화산을 저지하려는 미국의 정책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었다. 미국과 주변강대국들은 북한의 핵개발저지를 위해 압력을 가했으며 이러한 갈등상황은 북한의 경제·외교관계를 더욱 어렵게 했다. 이것은 위기의식을 격화하게 되었다. 결국 북한은 1994년 10월의 제네바협상을 통해 미·북관계의 극단적 상황은 해소했으나 북한의 핵의혹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이 북한은 대내외적으로 외교·경제적 위기를 핵개발 중단, 경제적 대외개방 등을 통해 미·일과 국제적 협력을 유도하면서 해소하고 있으나 현정권의 당면한 위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본다. 또한 북한의 붕괴 가능성 여부는 금년의 식량난을 어떻게 견디는가에 달려 있다고 본다.

64

김정일 집권시 북한의 대내외 정책변화 전망은 어떠한가

금년에는 김정일의 권력승계가 제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년은 김일성이 사망한지 3년 탈상이 되는 해이며, 경제적으로는 1994~1996년을 완충기로 설정하여 농업·경공업·무역체일주의 경제정책 추진의 마지막 해이기도 하다. 따라서 김정일이 정식으로 수령으로 등극할 수 있는 여전이 조성될 것으로 보아진다. 이러한 상황과 관련 정책변화 전망은 어떠한가

① 대내정책 방향

1996년 공동사설에서도 김일성의 유훈통치와 우리식 사회주의의 고수, 혁명전통의 옹호·고수를 강조하는 것으로 보아 체제안정의 유지에 최대 역점을 두면서, 김정일의 권력기반 구축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 체제유지와 관련 '공동사설'에서 정치사상·경제·군사부문의 3대진지를 불패의 보루로 다지기 위한 투쟁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주민들을 상대로 한 사상교육 강화와 김정일이 군의 지지와 충성을 바탕으로 하는 통치방식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경제진지를 언급하는 것을 보면 경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체제내적 개혁이 없는 한 큰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폐쇄된 사회체제에서 권력을 효과적으로 유지해왔던 북한체제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개방을 제한시켜 왔다. 따라서 김정일의 앞으로 과제는 정치의 통제성과 경제의 개방성이라는 배타적 관계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이다. 즉 두마리 토끼를

잡느냐 못잡느냐이다. 한편 김정일의 우상화를 위한 인덕정치, 광폭정치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② 대외정책 방향

북한은 남한과는 적대적 관계를 견지하면서 서방국가와의 관계개선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국제적 고립을 탈피함과 동시에 경제난을 해소해 나감으로써 체제의 공고화를 추구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어느 서방국가보다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데 1996년 1월 10일부터 하와이에서 미군 유해 송환협상을 이유로 미·북 군사접촉을 하는가 하면, 미국과 약속했던 북의 핵연료봉 전식보관작업을 미국의 기술지원으로 착수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 북한은 일본과 역사적, 정치적으로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으나, 일본과도 국교정상화를 피하여 '배상금' 등 경제원조계획을 획득하기 위한 기회를 포착하려 부심하고 있다.

북한은 대외관계에 있어서는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는 실용주의 노선으로 이행할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북한은 김정일이 공식적으로 권력을 승계하더라도 대내적인 측면에서는 김일성 유훈을 강조하는 한 큰 변화가 없으리라고 보이며, 대외정책에서는 체제유지와 경제난 해결을 위해 실리외교를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65

김일성 사망 이후 김정일이 천명한 통치이념은 무엇이며, 그의 리더십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가

김일성 사망 이후 김정일은 1994년 11월 1일 ‘사회주의는 과학이다’에서 그의 통치노선을 밝혔다. 이 논문에서 사회주의 정치는 본질에 있어서 인덕정치라고 하며, 참다운 인덕정치를 실현하자면 인민에 대한 사랑을 지닌 정치지도자를 내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정일은 이 논문에서 정치지도자를 2가지로 구분하여 ‘능력이 있는’ 정치지도자와 ‘인덕이 있는’ 정치지도자를 언급한다. 전자보다도 후자를 더 높이 평가하고 있다. 즉 “사회주의 정치지도자가 능력이 부족하면 사회주의 사회의 발전을 지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인덕이 없으면 인민을 배반하여 사회주의를 망하게 하는 결과까지 가져올 수 있다”고 한다. 현재 김정일의 리더쉽의 특징을 ‘인덕정치’로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선전물에서 보면 단천의 철광산에서 안전사고로 부상당한 노동자를 치료케 했다는 것, 노인들에게 환갑상·생일상을 차려준 일, 복잡한 계층에 속한 어떤 지식인을 차별없이 보살펴 준 사례들을 열거하면서 사랑과 믿음의 정치를 선전하고 있다. 정치가 폭이 넓지 못하면 각 계각층 군중을 다 포섭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광폭정치를 운운한다.

광폭정치는 북한의 복잡계층의 이탈을 막고 체제결속을 다지기 위한 수단으로 강조되고 있지만, 이로 인해서 출신배경을 따지지 않고 현재의 사상과 행동을 중요시함으로써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즉 내부결속을 위해 계급노선을 완화함으로써 복잡계층 내에서의 이탈자 증

가와 같은 역기능이 예상된다.

김정일이 리더쉽에서 '인덕'을 제일의 가치로 강조하는 것을 보면 김 일성과 같은 대중적 인기를 유도하는 활달하고 대중적 지도능력은 없는 것 같다. 즉 김정일은 세습체제에서 권력을 물려받을 장자로서 권력세습자에 불과하다.

앞으로 김정일의 리더쉽은 정치적 우상화보다는 경제난을 해결하여 명 실상부한 인덕정치를 해야만 확고하게 자리잡을 것이지만 그것이 용이하지는 않을 것이다.

66

북한 권력체제내에서 개방엘리트가 차지하는 비율과 그들이 추구하는 개방정책이 성공할 가능성은 어떠한가

현재 북한의 통치구조는 군사령관 지휘체계로 변칙으로 운영되고 있다. 즉 경제난과 외교적 고립, 지도자 승계위기 속에서 북한 군부가 위기 관리정권의 중추를 이루고 있으며 경제부문은 정무원에 맡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당중앙위 구호에 의하면 경제사업에서 정무원 책임제, 정무원 중심제를 강화하고 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 지도를 확고히 보장하자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근거에서 보면 현 북한정권은 군부엘리트와 경제엘리트들의 연합체가 주도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1993년 12월의 당중앙위원회의 엘리트충원 실태를 보면 군부엘리트 9인을 보강하는데 기술관료 5인을 충원하는 것을 보면 전례없이 군부의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또 김일성 사망 이후에 김광진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백학림 사회안전부장 등 군의 차수급 엘리트들이 권력서열 100위 안팎에서 20위 안팎으로 급상승하고 있다. 그리고 김정일이 ‘사상사업을 앞세우는 것은 사회주의 위업수행의 필수적 요구’라고 하는 점을 보면 정권과 체제유지에 안간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개혁·개방보다는 기존의 정책노선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근거에서 보면 이념주의자들이 아직까지는 개방적 전문가 엘리트 보다는 상대적으로 우세한 입장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개방정책의 성공여부도 당과 군에 어느 정도 개방적 엘리트가 영향을 미치는 문제와 관련된다. 앞으로 북한은 경수로 문제해결과 미·일과의

관계개선 속에서 개방 엘리트의 입지가 좋아질 가능성은 있으나 군사체제의 지속과 사상혁명을 강조하는 상황에서의 개혁·개방정책은 한계를 갖게 될 것이다.

67

북한내에도 반체제 활동이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그 실태는 어떠한가

북한체제는 1990년 이후 인접한 중·소의 개혁·개방과 멀리는 동구의 개혁·개방에 영향을 받아 주민들의 동요가 있어 왔다. 그것은 탈북자 및 남한으로 귀순자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서 알 수 있다. 과거에는 휴전선을 넘어오는 것이 고작이었으나 최근에는 국경탈출자, 벌목공 이탈자, 해외주재원 등의 망명이 급증하고 있으며, 점차 군, 관료, 무역상사의 고위직 및 고위층 자녀들이 가세하고 있다. 또한 작년 수해후에 북한군인이 집단이탈했다는 보도도 있는 것으로 보면 북한내부의 동요가 심상치 않음을 짐작케 한다.

특히 귀순자의 증언에 따르면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정치는 경제의 반영인데, 경제만큼은 자본주의가 우월하다.”라는 인식이 팽배하고 있어 체제에 대한 위기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북한당국의 지식인에 대한 통제도 그만큼 강화되고 있다고 한다.

김일성 사망 이후 김정일의 통치하에서 이상과 같은 반체제적 요소들을 억제시키기 위해 체제단속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일성도 사망직전에 탈출자를 막기 위해서 경제를 재건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현재 북한은 반체제적 ‘복잡군중’ 계층의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포섭하는 ‘광폭정치’를 김정일의 정치지도력의 특징으로 선전하는 등 체제붕괴를 막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또 최근 북한당국은 주민들의 동요를 우려하여 말단 통제조직인 인민

반장들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였다. 개인 또는 가족단위의 이동이 있을 때 과거에는 파출소에 신고했으나 지금은 인민반장에 먼저 신고해야 한다고 하며, 군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 군대규율을 강화할 것을 특별명령 하였다고 한다. 이런 점에서 북한내부는 불평·불만은 누적되고 있으나 사상교육·조직적 통제 등으로 반체제적 집단운동이 당장은 불가능한 것 같다. 그러나 현재 북한은 체제에 반대하거나 불순한 사상을 갖고 있는 주민들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정치범수용소'에 수용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이 수용소를 특별독재대상구역이라 부르고 있다.

특별독재대상구역에 일단 수용되면 공민증을 압수당하고 수용된 날부터 선거 및 피선거권, 배급, 의료혜택 등 모든 기본적 권리가 완전히 박탈당하게 되는데 함남, 함북, 자강도 등 5도의 10여개 수용소에 약 20여 만명이 격리 수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밖에도 북한은 반혁명적대분자들을 강제이주시켜 감시하는 '49호 대상지역', 과거의 종교인·지식인 가운데 북한체제에 동조하지 않은 인사들을 정신병자로 규정하여 집단수용하는 '49호 보양소' 등을 운영하고 있는바 잠재적 반체제 인사들은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68

북한의 공무원 채용방법과 대우는 어떠한가

북한은 노동력동원계획에 따라 정무원 노동행정부에서 인력수급을 확정하여 해당인력을 각 분야별 수요대로 할당·배치한다. 사회주의헌법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만, 본인의 희망과 재능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과 정권기관의 조정·통제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사실상 직업선택의 자유는 없다.

결국 공무원의 채용방법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북한에서 특별히 공무원이란 별다른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와 같이 공무원과 일반 기업체의 회사원을 구분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해당자의 채용여부는 해당직장의 당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성분과 당성이다. 그리고 정치적 신임도 역시 중요하다. 학력, 자격, 실무능력, 활동력 등이 고려되기는 하나 부차적이다. 즉 북한에서 관료충원의 원칙은 정치적 기준 70%, 실무적 기준 30%라는 비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공직의 주요부서에 채용될 대상자에 대한 성분검사가 까다롭고 매우 복잡하다. 그리고 중요기관의 책임자에 대해서는 당중앙위 비서국이 인사권을 행사한다.

북한에서 대학졸업생들이 제일 선호하는 직업은 외교관이나 무역일꾼이다. 다음으로 선호하는 직업은 권세를 누릴 수 있고 권한과 혜택이 뒤따르는 당간부, 행정간부 등이다. 대학졸업생의 직장배치는 대학 간부과에서, 전문대학졸업생은 각 도의 노동처에서 전담한다.

북한의 행정사무원들은 고정월급제에 의해 생활비를 지급받는데 기술직보다 액수가 적다. 왜냐하면 공장·기업소의 생산노동자들은 도급임금제에 의해 생활비를 지급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액임금은 당·정기관, 사회단체의 행정사무원들에게 적용되며, 도급임금은 협동농장원, 건설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 적용된다.

69

북한당국과 북한주민들의 남한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북한의 대남인식은 분단 이후 지금까지 ‘조선은 하나다’라는 논리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이 존재하고 있으며 휴전선 이남의 “남조선은 미제의 완전한 식민지이며 침략적 군사기지”이고 “미제는 남조선을 정치·경제·군사적으로 완전히 예속시켰다.”고 선전해 왔다. 그러기에 북한은 대한민국을 그들의 체제에 흡수되어야 할 미군점령의 미수복지구내의 한 사회단체로만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우리 정부를 가리켜 “남조선에 수립된 력대통치기구는 미제의 식민주의 통치를 가리우기 위한 병풍에 지나지 않는다. 력대 괴뢰정권은 모두 그 어떤 자주권도 행사하지 못하는 허수아비 정권이었으며 식민지 적이고 예속적이며 지주·매판자본가들과 반동관료배들의 리익을 대변하는 반인민적 반동정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북한의 시각이 ‘하나의 조선’으로 귀결됨을 알 수 있다.

또한 북한은 남한사회의 모순을 민족적 모순과 계급적 모순으로 분류하여 설명하면서 사회계층간의 관계를 적대적 대립과 갈등의 구조로 규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시각에서 보면 결국 남한은 ‘미제의 예속으로부터 벗어나야 할 민족해방의 공간’ 이자 ‘인민민주주의화 해야 할 공간’이며 남한정부는 ‘혁명을 위한 타도의 대상’ 일 뿐이다. 이러한 대남인식은 민족공동체의 건설을 전제로 북한을 ‘공존의 대상’으로 보는 우리의

시각과는 커다란 격차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적대적 대남인식으로 가득찬 ‘하나의 조선’ 논리와 주체사상으로 정치교화된 북한 주민은 대략 다음과 같은 의식성향을 나타내고 있다. 즉 우상화교육의 결과로서 ‘어버이 수령’ 을 절대적 존재로 숭앙하면서, 그에 대한 무조건적 지지와 충성을 맹세한다. 그리고 남한에 대한 인식은 ‘하나의 조선’ 논리에 따른 증오교육의 결과로서 “미제에 착취당하고 혈벗고 깎주리고 있어 하루빨리 해방시켜 주어야 한다.”는 기본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70

북한의 경제개방과 관련 외자유치를 위한 조치는 어떤 것 이 있으며 앞으로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 되리라고 보는가

북한은 현재의 심각한 경제난을 타개하고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1991년 12월 28일 정무원 결정 제74호로 나진·선봉지역 621km^2 일대를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설정하고 나진, 선봉, 청진 3개 항을 자유무역항으로 지정·발표하였다. 그후 북한은 1993년 중국의 경신평원과 연결되는 원정리 일대 125km^2 를 추가 편입시킴으로써 동면적을 총 746km^2 로 확대하였다.

북한은 동계획의 적극적 추진을 위하여 정무원의 대외경제위원회 산하에 개발추진 창구로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위원장 김정우)를 신설하여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개발과 관련한 제반업무를 총괄케 하고 있다.

북한당국은 동계획을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하되 사회간접자본시설부문, 공업부문, 관광·서비스부문, 도시정비부문 등 4부문으로 구분하여 약 70억달러를 들여서 동지역을 국제화물의 중계기지, 가공수출 위주의 제조업 기지, 국제적인 관광기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종합적인 기능을 갖춘 자유경제무역지대로 가꾼다는 구상이다.

북한은 동지역의 자본유입과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20여가지 이상의 외국인 투자유치 관련법령들을 제정 및 개정하였는데, 북한의 외국투자유치 관련 법체계는 '외국인 투자법'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북한이 지금까지 추진해 온 외자유치 관련법령의 대대적인 정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법령의 모호·경직성, 인프라 구조의 낙후 등 미흡한

부분들이 상존하고 있어 투자환경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당분간은 북한 내부의 정치적인 불안정성과 낮은 대외신용도, 투자여건의 미비 등으로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되기 위하여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71

북한이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설치하여 외국자본을 유치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북한의 투자유치 실적 및 전망은 어떠한가

1993년 3월 북한의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가 입안한 '나진·선봉지대 국토건설총계획'에 따르면 동지역을 3단계로 나누어 개발할 계획이다. 제1단계(1993~1995년)에서는 이 지역을 국제화물 중계기지로 육성하기 위한 인프라시설을 정비하고, 제2단계(1996~2000년)에서는 수출주도형 제조업에 외국인 투자를 본격 유치하고, 제3단계(2001~2010년)에서는 중계무역, 수출가공, 금융 등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국제교류의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나진·선봉지대와 청진항 개발을 위해 총투자규모 69억 8,900만달러의 사업을 외자유치를 통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나진·선봉지역에 대한 외국투자는 핵문제, 북한정세에 대한 불안감, 사회간접자본시설 미비, 각종 편의시설과 문화공간의 결여 등으로 매우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북한이 나진·선봉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선포한 1991년 12월 이후 1995년 11월까지 외국기업과 약 2억달러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실제로 투자된 금액은 2,000만달러 내외 정도로 알려져 있다. 그중에서 서방기업의 투자는 1995년 1월 네덜란드 ING은행이 합영기업 설립을 합의한 것과 최근 스웨덴의 통신업체 에릭슨과 기술협력관계에 있는 태국의 록슬리그룹이 나진·선봉지역에서의 통신사업에 독점계약을 맺은 것, 영국의 석유회사 셀이 10만톤 규모의 원유저장 및 공급시설 건설(200만 달러 규모)을 합의한 것 정도이며, 다

른 여러 나라들은 현재까지 관심을 표명하고 투자여건을 조사하는 단계로 동지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 활성화에 대한 전망은 매우 불투명한 상태이다.

72

북한은 대외무역 부진으로 외화난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북한의 대외 무역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무역제일주의'를 관철하기 위한 정책은 무엇인가

북한은 지금까지 대외무역을 자급자족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간주해 왔다. 따라서 수입에 필요한 외화획득을 위해 수출을 추진하는 등 대외교역을 국가계획과 통제에 따라 소극적으로 임해왔다. 그러나 1989년 이후 동구와 구소련의 붕괴에 따른 사회주의권 시장의 상실과 중국, 소련이 과거의 구상무역체계 대신에 현금, 즉 달러에 의한 경화결제를 요구함으로써 북한의 무역은 심각한 타격을 입기 시작하였다.

1994년 북한의 무역총액은 21.1억달러(수출 8.4억달러, 수입 12.7억달러)로 1990년 북한의 무역총액 46.4억달러에 비해 절반이상이 감소하였다. 이러한 무역의 격감은 외채의 누증현상을 초래하여 1994년의 경우 북한의 외채총액은 106.6억달러로 경상GNP 212억달러의 50.3%를 점하게 되었다.

따라서 북한은 과거의 자력갱생의 보조수단으로서의 무역개념 대신 1992년 북한 사회주의헌법 개정시 대외경제 관련조직을 개편하면서 대외교역이 대외경제위원회를 비롯하여 기타 위원회와 부(部) 중심의 국가무역과 도행정경제위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소위 '새로운 무역체계'를 수립하는 것을 계기로 대외교역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방향전환을 모색하게 하였다.

새로운 무역체계는 생산을 담당한 위원회 및 부(部)와 도행정경제위원

회들이 자체 무역관리부서와 무역회사를 두고, 자기부문, 자기지방에서 생산한 수출품들을 직접 내다 팔고 필요한 제품들을 직접 사다 쓰게 하는 무역체계와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73

북한이 식량난을 겪고 있는 근본원인은 무엇이며 향후 식량문제의 해결전망은 어떠한가

북한은 제2차 7개년 계획기간의 마지막 해인 1984년에 알곡 1,000만 톤을 생산한 것으로 대내·외에 발표했다. 그리고 제3차 7개년 계획기간(1987~1993년)에는 1,500만톤(미곡 700만톤, 기타 잡곡 800만톤)을 생산한다는 계획이었는데 그 성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미발표 상태이다. 그러면서도 최근에 와서 극심한 식량난에 봉착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동안 북한의 각종 통계자료의 발표와 계획이 얼마나 허구였는가를 잘 나타내 주는 사례라고 하겠다.

북한의 총경지면적은 197.4만 정보로 그중 논은 31.1%인 61.4만 정보, 밭은 68.7% 136만 정보로 대체로 지세가 험준하고 평야지대가 협소할 뿐만 아니라 연평균기온도 남한지역보다 낮기 때문에 농업의 입지 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식량부족 문제는 이와는 다른 근본적인 원인에 기인하고 있다.

그 주요원인으로는 첫째, 공산주의 집단영농체제로부터 출발한다고 하겠다. 즉 북한의 주식인 벼, 옥수수의 육종수준이 세계적인 수준이면서 생산량이 그토록 낮은 것은 다름아닌 개인영농체제가 아닌 집단영농체제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비료, 농약, 농기계 등 농자재의 부족현상을 들 수 있다. 1970년대까지만 하여도 이들 물량이 그런대로 각 농장마다 공급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1980년대에 진입하면서 전반적인 산업의 위축과 함께

유류부족에 따라 관련 공장들의 가동률 하락으로 거의 생산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나아가 경화부족으로 외국으로부터 비료, 농약, 농기계 등을 수입도 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셋째, 소위 ‘주체농법’이 북한농업을 망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주체 농법은 김일성 교시에 의한 교조주의적 생산방식으로 김일성이 생전에 농촌현장지도에 의한 하나의 훈시에 불과하다. 주체농법의 주요내용은 한정된 토지에 수확량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밀식재배와 다락밭 조성정책인데, 동정책으로 논밭 경작지에 토사가 유입되어 작물피해와 경작지 관리보수에 많은 노동력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주체농법이 북한의 농업을 망치고 있다고 한다.

북한의 곡물생산량은 1990년대 이전까지만 하여도 500만톤을 상회하였으나(1989년 548.2만톤), 1990년도 이후 계속 감소하여 1994년에는 412.5만톤에 불과하였다. 이는 북한의 연간 곡물총수요량을 672만톤으로 추정할 경우 259.5만톤의 곡물이 부족하게 된다.

특히 북한은 1990년대 이후 구소련의 해체와 공산권의 개혁·개방으로 사회주의권 시장의 상실과 기존의 식량공급의 대부분을 점하고 있던 러시아와 중국의 경화결제 요구로 인한 외화부족으로 저렴한 식량 공급체제가 붕괴됨으로써 식량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더욱이 1995년에는 100년만의 대홍수 피해로 1996년의 식량사정은 최악의 상태에 직면하리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서방으로부터의 식량도입 보다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근본적인 개혁·개방을 통해 식량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74

북한의 경제가 6년 연속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제난의 근본원인은 무엇이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북한의 경제정책은 무엇인가

북한경제는 1990년도 이후 6년동안 연속적인 마이너스성장을 하고 있어 빈사상태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는 것이 북한경제 전문가들의 일치된 시각이라고 하겠다.

한국은행이 그동안 추정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경제는 1990년대 이후 1994년까지 5년 연속 성장이 후퇴했다. 즉 북한경제는 지난 1980년대까지만 하여도 2~3% 수준이지만 저율의 성장세를 유지해 왔으나, 1990년 이후 내리막길로 접어들기 시작했다.

즉 1990년 -3.7%, 1991년 -5.2%, 1992년 -7.6%, 1993년 -4.3%, 1994년 -1.7%로 한번 밀리기 시작한 북한경제는 겉잡을 수 없이 뒷걸음질을 했다.

지난해 1995년의 추정치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심각한 홍수피해를 고려할 때, 성장률이 가장 낮았던 1992년도(-7.6%)보다 더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많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북한경제가 이와 같은 파탄상태에 이른 것은 여러가지 원인들이 있지 만 가장 큰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구조적 모순의 누적 때문이라고 하겠다. 즉 주체경제라는 미명아래 비경제적이고 비능률적인 요소들이 많은 구조적인 문제들을 야기시켰다.

둘째, 무력증강을 위해 군수분야에 집중투자함으로써 경제전반에 걸쳐

심각한 비효율성을 초래하였다.

셋째, 동구권과 소련의 붕괴 등 사회주의 경제권의 퇴조가 큰 영향을 미쳤다.

넷째, 폐쇄경제체제로 인한 기술의 낙후 및 생산설비의 노후 등을 들 수 있다.

북한은 이러한 심각한 경제난 타개를 위하여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의 창설 및 완충기 경제전략으로 농업·경공업·무역제일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개혁·개방 없이는 현재의 심각한 경제난을 타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75

북한의 1995년 여름 수해는 어느 정도이고 국제기구 등 의 원조활동 상황은 어떠한가

북한이 1995년 8월 UN의 인도적지원국(DHA)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북한은 1995년 7월 7일부터 15일, 7월 26일부터 8월 12일, 8월 17일부터 20일, 이렇게 3번에 걸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토의 75%에 해당하는 8개도내 145개 시·군이 수해를 당했으며, 520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그중 약 10만~50만 가정이 집을 잃고 갈곳이 없으며, 이번 수해로 인한 총피해액도 150억달러가 초과할 것으로 북한 당국은 추산했다.

이러한 보고에 따라 1995년 8월 29일부터 9월 9일까지 10일간에 걸쳐 유엔평가단이 북한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활동을 벌였다. 유엔평가단에 의하여 발표된 피해는 크게 다음 3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직접적 피해로서 약 10만 가정이 집을 잃었으며, 둘째, 농업생산에 대한 피해로서 북한당국의 추산에 의하면 190만톤의 유실이 예상되며, 셋째, 생산시설 및 사회기반시설의 파괴로 인한 북한 경제 전체에 대한 장기적 피해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 3가지 범주 중에서 평가단은 첫번째와 두번째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그중에서도 최우선 순위는 첫번째 범주에 속하는 10만가정, 즉 약 50만명의 직접적 피해자들에 대한 구조활동을 중심으로 지원활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UN은 산하의 인도적지원국(DHA)이 중심이 되어, 유엔아동기금(4,462,000달러), 세계보건기구(2,000,000달러), 세계식량계획

(7,250,250달러), 유엔개발계획(2,000,000달러) 등이 총 15,712,000달러의 구호금품을 모금, 북한에 전달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북한의 황시천 조선기독교도연맹 국제부장은 1996년 1월 말 마카오에서 열린 세계교회협의회(WCC) ‘동북아평화를 위한 나눔과 연대회의’에서 1996년 1월 10일까지 해외수재의연금(물자 포함)은 총 2,567만달러 규모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실제 북한에 전달된 구체적인 지원실적은 국제기구는 물론 국가단위에서 직접 지원하는 등 각종 경로를 통하여 식량, 의약품, 현금 등 의 형태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추계가 어려운 실정이다.

76

북한의 협동농장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결산분배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북한의 협동농장은 토지 및 기타 생산수단들을 통합하여 농민들의 공동노동에 의한 농업생산 활동의 기초단위로서, 행정구역상의 리(里)·동(洞) 단위로 구성되어 있고, 군(郡)협동농장 경영위원회의 지도·통제 아래 약 80~500정보의 농경지를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매 가구마다 부업차원에서 개간하여 생산하는 덧밭이 대략 20~30 평 정도씩 허용되어 있으나 이는 협동농장과는 별개이다.

북한 협동농장의 연간 결산분배는 협동적 토지소유제에 기초한 “농업의 협동적 경리(경영)에서 개인적 소비몫의 분배과정을 동반하는 연간 사업의 결산”이라고 설명되고 있는 북한 특유의 소득분배 방식으로서, ‘기본적 분배방식’에 따르면 연간 총생산량 가운데 국가납부와 생산적 지출(생산비) 및 공동 축적기금을 먼저 공제한 다음 농장원 각자의 연간 ‘노력점수’에 따라 분배몫(현금·현물)을 책정하게 된다. 여기에서 ‘노력점수’는 협동농장의 ‘기준작업정량표’에 의거한 ‘노력일수’와 작업내용에 책정된 단위점수로 산정한다. 예를 들어 작업내용이 종자파종이면 1점, 살충제 살포이면 1.25점, 모심기면 1.5점 등으로 설정하고, 이에 따라 작업일을 평가하여 점수를 산출한다. 또한 분배몫 중 연간 소비량을 초과하는 곡물은 국가에서 ‘국정수매가격’으로 거두어들인다. 협동농장원에 대한 분배결정 방법은 ①기본적 분배, ②작업반 우대제 실시하의 분배, ③분조도급제 적용시의 분배 등으로 구분되는바, 각 분배방식의

분배공식은 다음과 같다.

○ 기본적 분배공식

$$\text{개인분배량} = \frac{\text{총생산량} - \text{총공제량}}{\text{전체농장원의 노력일 총수}} \times \text{개인별 연간 노력일}$$

○ 작업반 우대제 분배공식

$$\begin{aligned} \text{개인분배량} &= \frac{\text{기본 분배몫 총량}}{\text{전체농장원의 노력일 총수}} \\ &+ \frac{\text{작업반 우대몫 총량}}{\text{작업반 노력일 총수}} \times \text{개인별 연간 노력일} \end{aligned}$$

○ 분조도급제 분배공식

$$\begin{aligned} \text{개인분배량} &= \frac{\text{기본 분배몫 총량}}{\text{재평가된 농장원노력일 총수}} \\ &+ \frac{\text{작업반 우대몫 총량}}{\text{재평가된 작업반 노력일 총수}} \\ &\quad \text{분조원개인 노력일수} \times \frac{\text{분조계획 노력일}}{\text{분조 전체 노력일 실적}} \end{aligned}$$

$$* \text{ 재평가된 노력일수} = \frac{\text{노력 실제투입 계획일수}}{\text{실제 노력투입 실적}} \times \text{노력일 총수}$$

이와 같은 분배는 공히 생산계획 목표의 90% 이상 달성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량에 미달된 경우 기본적인 분배몫에서 5~15%를 삭감하도록 되어 있다.

협동농장의 결산분배 시기는 일반적으로 추수와 탈곡이 끝날 시점에

실시되며, 결산시 공제되는 항목과 그 구성비중은 다음과 같다. 생산비는 총생산액의 28.7%~32%로서 종자대(2~3%), 사료대(0.7~1%), 비료대(2~4%), 농기계 사용료(7%), 관개수로(물) 이용대(7%), 농기구 구입비(10%) 등이다. 그리고 공동축적기금은 협동농장 시설확장비용으로서 10% 정도를 공제하고 공동 소비기금으로 사회문화기금(10%), 원료기금(3%) 등이다.

77

생산수단의 국가 및 협동적 소유를 기본원칙으로 하는 북한에서 개인소유가 인정되는 재산의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

북한의 소유제도는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의 기초가 되는 생산수단과 생산물의 전사회적 또는 집단적 소유’라고 하는 사회주의적 소유형태를 특징으로 한다. 전인민적 소유는 국가소유의 형태로 나타나며 자연자원의 전부, 공장기업소의 절대다수, 운수, 은행 및 체신기관의 전부, 상업수매기관의 기본부분, 도시와 노동자구의 기본적인 주택폰드나 공공시설 그리고 국가기업소의 생산물 전부 등이 전인민적 소유에 속한다.

협동적 소유는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체제로의 과도기에 발생하는 사회주의적 소유의 한 형태이며, ‘당과 국가의 지도와 방조 밑에 농민과 수공업자, 그리고 중소상공업자들이 그들의 사적 소유인 생산수단’을 통합하여 형성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북한에서도 극히 제한적이나마 개인소유가 인정되고 있다. 북한의 개인소유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의 토대에서 발생한다고 하여 ‘사회주의에서의 개인소유’라고 강조한다. 따라서 개인소유의 대상은 근로자들이 받은 임금이나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 받는 분배몫과 그 것으로 구입한 소비품들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근로소득과 저축, 가정용품, 일상소비품 등이 개인소유의 대상에 포함된다. 협동농장원들의 ‘부업경리의 생산물’과 그 생산을 위한 약간의 소농기구들도 개인소유가 허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개인소유물은 그 소유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상속권도 인정하고 있다. 북한의 각종 수매기관과 농민시장은 개인 소유물을 처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로 이용되고 있다고 한다.

73

북한의 ‘농민시장’이란 어떤 것이며 배급체제인 북한에서 시장의 등장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북한의 농민시장이란 국영농장이나 협동농장 이외의 개인의 텃밭(통상 30~50평 내외)에서 생산하는 농작물이나 부업경리의 생산물을 매매·교환하는 농촌의 시장터로, 통상 10일 정도마다 협동농장이 쉬는 날에 주민들이 모여서 이루어진다.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농민시장이 1980년대부터는 중소도시지역까지 확대되고 있는데 이를 통상 ‘장마당’이라고도 부르며 주민들이 가정부업으로 생산한 물품(뜨개제품, 달걀 등)등이 거래됨으로써 주민들의 생필품 문제를 간접적으로나마 해소하고 있다고 한다.

계획경제체제는 배급제도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농민시장이 존재한다는 것이 이율배반적으로 느껴질지 모르지만 완전한 배급제도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농민시장이 이의 보완적 기능을 수행해 주고 있다고 보면 된다. 즉 북한의 농민시장 또는 장마당은 국영상업망이나 협동단체의 상업망과 함께 상품유통체계의 하나이며, 그중 국영상업망은 도매소와 소매소로 구분되며, 도매소는 중앙에 ‘중앙도매소’ 각 도에 ‘도도매소’, 시·군에 ‘지역도매소’로 나누어지며, 소매소로는 대도시의 백화점, 지방의 종합상점·직매점, 리·동 소매점 등이 있다.

협동단체상업망은 최근 농민시장에 의하여 그 기능이 약화되었으며, 농민시장은 군단위로 대략 2~3개소가 지정되어 있는데 식량, 담배, 술 등을 거래가 금지되고 있다. 최근 암시장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암시

통일문답

장은 특별히 따로 존재한다기 보다는 기존의 농민시장에서 생필품이나 물자가 공급부족현상으로 인해 높은 가격으로 암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부르는 이름이다.

79

북한의 화폐금융제도는 어떠하며 화폐는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가

실물공급경제인 북한에 있어서 화폐·금융부분은 재정의 한 부분으로서 올바른 독립채산제 시행을 위한 감독 등 재정통제적인 기능이 매우 강한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재정부문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렵다. 북한의 화폐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일반화폐’와 무역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와 바꾼 돈표’ 등 2가지로 구분된다.

일반화폐는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화폐이고 외화와 바꾼 돈표는 외국인이 외화를 북한내에서 사용할 때 바꾸어주는 교환용 화폐이다. 북한에서는 외화를 직접 사용할 수 없다. 일반화폐의 종류는 1원, 5원, 10원, 50원, 100원 등 지폐 5종류와 1전, 5전, 10전, 50전, 1원 등 주화 5종류로 구분된다.

북한은 화폐에 대해 “상품세계에서 모든 상품들의 가치를 표현해 주고 교환을 중개해 주는 일반적 등가물의 역할을 하는 특수한 상품”으로 정의하고 가치척도와 유통수단, 축재수단, 지불수단 등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북한의 가격체계 자체가 국가에서 경제부문 별 균형유지를 위하여 정책적으로 결정하고 있으므로 실제의 가치를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유재산제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화폐의 가치척도기능이나 축재기능은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하겠다.

북한에서 금융이란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화폐자금의 융통”을 말하며 지역적 범위에 따라 국내금융과 국제금융으

로 구분된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금융의 주임무를 맡고 있는 은행들이 화폐자금의 수입과 공급과정에서 기관·기업소를 강력히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은 오히려 재정의 한 부분으로서 재정 통제적 기능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80

최근 북한 주민들의 사회일탈행위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데 그 원인과 실태는 어떠한가

북한의 선전자료에 의하면 북한사회는 모든 주민들이 지상낙원에서 물질적, 정신적 풍요를 누리고 부러움없이 살고 있기 때문에 부정과 부조리, 범죄 등 부정적인 사회현상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되어 있다. 그러나 북한에 오랫동안 상주한 외교관 그리고 북한을 다녀온 여행자(러시아·연변 동포 등), 탈북귀순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실제로는 폭력과 범죄, 유괴, 절도, 강도 등 온갖 사회병리적 사건들이 끊임없이 빈발하고 있다 한다.

또한 당·정간부의 '사업작풍'을 비판하는 북한의 신문, 방송을 분석해 보면 반사회적, 반체제적 일탈행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공산권의 붕괴가 시작된 1990년 이후부터는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한 경제정책의 실패로 인한 생활고 등으로 경제관련 일탈행위가 크게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최근에는 식량난과 생필품 부족 때문에 생존수단의 일환으로 절도행각이 더욱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당·정·군 간부들의 뇌물수수행위도 크게 성행하고 있으며, 국경탈출자들의 증가로 중·북 국경경비가 강화되면서 북한 경비대원들이 밀무역업자들에게 요구하는 뇌물의 단위도 높아졌다는 것이 연변조선족 상인들의 증언이다. 또 식량난 해결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여행제한이 다소 완화되면서 철도안전원, 사회안전원들이 빼돌린 신분증, 여행증명서 등을 변조해주는 암거래도 극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청소년들의 사회일탈현상은 위험수위에 이르러 체제유지의 한계성이 노정되고 있는 것 같다. 청소년 범죄는 전체범죄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50% 이상이 22~25세의 청년 등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 청소년들은 주로 평양역, 개천역, 신천역 등지를 중심으로 3~4명씩 짹을 지어 배회하면서 소매치기, 빙집털이, 상점약탈, 여행자를 상대로 한 절도 등의 범죄활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 청소년들의 범죄형태는 날이 갈수록 조직화, 횡포화 양상을 띠어 가고 있는데 최근에는 200여명으로 구성된 범죄조직까지 출현하여 일반 가정과 상점, 물자창고 등을 습격하여 물건을 약탈하고 부녀자까지 성폭행하는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북한에서 각종 유형의 일탈행위가 만연한 것은 악화된 생활고와 김일성 사망으로 인한 기강해이와 사회의 불안정성이 표출된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공산주의의 획일화된 가치체계와 이에 바탕을 둔 전체주의적 사회체제를 구축하려는 반인간적 과정 자체가 반사회주의적 사고와 태도 및 행동성향을 유발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폐쇄적인 통제된 집단주의 조직생활에서의 아킬레스 건은 외형상 일심단결된 모습을 보이던 사회가 사회관리능력의 약화를 기화로 주민의 일탈 성향을 극대화한다는 데 있다.

81

최근 북한 주민들 사이에 자본주의적 가치관이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며,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가 북한체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북한사회의 구석구석에서 주민들이 재물을 모으려는 등 자본주의적 가치관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공산권 붕괴 등 국제적인 환경의 변화와 북한식 사회주의의 모순이 한계에 이르렀고 또 주민들의 삶의 가치의식이 깨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국제적으로 공산권이 붕괴되는 등 사회주의·공산주의가 허황되고 자본주의가 인간의 기본적 생존을 보장할 수 있다는 사실이 역사적으로 입증되었고 이같은 사실을 북한 주민들이 인식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의 사회주의 혁명이 50년간 지속되었으나 주민들의 생활형편은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서 회의를 느낀 때문이며 자본주의로 살아온 남한이 경제적으로 고도성장하여 선진국의 대열에 진입했다는 성공사실이 북한사회에 구전으로 전파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의 북한은 김정일 중심의 북한식 정치가 ‘인민을 위한 정치’라고 선전하지만 실제로는 인민들의 먹는 문제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당이나 행정당국을 의지할 수 없고 저마다 자신의 생존과 안전을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노력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다. 이뿐 아니라 자본주의적 사조가 중국의 연변 조선족 등 방북동포들에 의해 더욱 확산되고 있다.

북한사회에 확산되는 자본주의적 가치관은 결국 북한의 정치체제의 변화를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될 것이다. 주민들의 생활속에 자본주의

적 사조가 확산되면 주민들의 물질적 수요가 팽배해지고 또 체제불만요인이 증폭될 수 있으며 주민들의 생활습관에서도 통제와 폐쇄된 사회주의적 의식주생활 패턴이 파괴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정치지도층에도 그 영향이 확산될 수 있고 또 주민들의 욕구충족을 위해서는 정책상 변화가 불가피 하며 결국에는 개혁이 수반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82

북한주민들의 주거생활 실태는 어떠한가

북한의 모든 건물은 국가와 협동단체의 소유이고 개인소유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북한의 주택은 우리의 사택이나 임대주택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다른 점이 있다면 주택선택을 행정당국이 신분과 직위에 따라 등급별로 책정하여 규격화된 독립가옥이나 연립주택 또는 아파트를 할당해준다는 것이다.

1970년대 이후 평양, 남포, 원산, 함흥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고층아파트를 신축하고, 농촌에도 문화주택을 2층(3세대용), 3층(5세대용)으로 지어 다양화하고 있으며, 외형도 현대식 모양을 갖추게 하는등 겉치장에도 관심을 쏟고 있다.

1980년대 초부터는 도시의 경우 8~15층 아파트가 들어서기 시작했고, 특히 평양의 통일거리, 광복거리 등에는 20~30층 규모의 중앙난방식 고층아파트도 건설되기 시작했으며 농촌지역에서는 2~3층에서 5~7층에 이르는 연립주택이 건설되고 있다.

북한의 연간 인구증가에 따른 주택수요는 6~7만 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2만여 세대밖에 건설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주택보급률은 일반노동자가 57%, 초급간부계층이 68%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하여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주택을 신청한 후 4~5년을 기다려야 배정받을 수 있다 한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의 경우 결혼하고서도 신혼부부가 주택을 배정받지 못해 부부가 떨어져 사는

예가 많을 정도로 주택사정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이 주택사정이 어려워지자 최근에는 궁여지책으로 개인이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즉 자재의 일부(시멘트, 벽돌 등)는 당국에서 실비로 지원해 주고, 기타 자재는 개인이 부담하여 건축(방 1칸, 부엌 1칸 정도)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주택 자체는 원칙적으로 개인소유로 볼 수 있으나 매매는 허용되지 않는다.

주택은 당·정 부부장 이상이 거주하는 특호주택으로부터 말단 근로자나 협동농장원에게 배정하는 1호주택에 이르기까지 다섯종류로 나누어 지는데 자세한 것은 다음과 같다.

계층별 주택구조

구분	주택형	가옥 구조	입주 대상자
특호	고급단독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식 단층 또는 2층주택 • 정원, 수세식 변소 • 냉온방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당 부부장급 이상, • 정무원 부부장급 이상, • 인민군 소장급 이상
4호	신형고층 아파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2개 이상 • 목욕탕 및 수세식 변소 • 베란다, 냉온수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당 및 정무원 과장급 이상, • 대학교수, 인민군 대좌, • 문예단체 간부, 기업소 책임자
3호	중급 단독주택 및 신형아파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2개, 부엌, 창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기관 지도원, • 도단위 부부장급, 기업소 부장
2호	일반아파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1~2개 • 마루방, 부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민학교 · 고등중학교교장, • 일반노동자, 사무원
1호	집단공영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1~2개, 부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단 근로자 및 사무원
	농촌문화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층연립, 방2개, 부엌, 창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농장원
	구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2~3개의 농촌기준 구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두리 농민

* 출처 : 통일원, 『95북한개요』(1995), p.290.

83

북한의 노동당 당원(간부 및 일반당원)과 일반주민들의 생활수준을 비교하면 어떠한가

북한의 주민들은 모든 분야에서 중앙의 계획과 통제하에서 살아가는 형태이다. 이같은 중앙의 계획과 통제는 노동당의 방침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노동당원에게 모든 생활의 우선권이 부여될 수 밖에 없고 일반주민, 특히 하층 노동자들의 생활은 당원이나 지도간부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할 수 밖에 없다.

첫째, 노동당원이나 간부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혁명사상과 신분에 따라 고위직급이나 관리·감독직을 독점하게 된다. 이로 인해 사회생활의 모든 면에서 유리하며 사회주의적 혜택이 우선적으로 보장되고 이같은 우선권은 일평생 보장된다.

둘째, 사회주의적 혜택측면에서 보면 식량배급, 주택배정 등에서 당간부와 일반주민들은 제도적으로 차등화되어 있다.

식량배급의 경우, 당간부들에게는 규정된 배급량을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일반주민들에게는 형편에 따라 공급하며 공급량이 적든 많든 불평할 수 없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 북한의 식량사정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은 배급량이 부족하여 굶주림을 면치못한다는 국제적 여론이 부각되고 있다. 그런데 TV 화면에 비치는 당간부들의 모습에서는 이같은 빈곤의 그림자를 찾아 보기 어렵다. 이처럼 당간부들과 일반주민들의 식생활의 차이는 심각하다.

주택의 경우, 북한의 주택건설은 간부들이 거주하는 도시중심으로 추

진되며, 주택배정에서도 당간부와 일반주민들에게 차등화하고 있다. 즉 당간부에게는 특호(독립식 단독, 수세식 변소, 냉·난방시설 등)나 고급 아파트(수세식 변소, 냉·난방시설 등)가 지급되지만 일반주민들에게는 개량형 주택(방 1~2칸, 공동변소 등)이나 소형 연립식 주택(방 1~2칸, 공동변소 등)이 배정되나, 이것도 운이 좋아야 배정받을 수 있다. 일반주민에 속하는 신혼부부중에는 수년간 방 한칸도 얻지 못해서 각기 헤어져 생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리고 생필품을 공급받는 데도 당간부에 비해 차별받는다. 당간부는 별도의 공급소를 두고 질적·양적으로 우선 공급받지만 일반주민들은 그렇지 않다. 자녀교육에 있어서도 당간부의 자녀에게는 특수학교에 입학하거나 진학의 기회가 우선 주어진다.

이처럼 북한사회는 당간부들과 하층주민들의 생활형편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 더욱이 주민들을 사상적으로 구분하여 차등화시켜 놓았기 때문에 한번 소속된 계층을 초월하기 어렵고 한평생 규정된 계층에 따라 생활해야 하는 모순이 있다.

34

북한의 보건의료정책의 실상은 어떠한가

북한헌법 제56조에는 “국가는 전반적 무상치료제를 공고발전시키며 의사담당구역제를 강화하고 예방의학적 방침을 관철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에서 무상치료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것은 최고인민회의 제2기 7차회의(1960.2.27)에서 ‘보건사업강화에 관한 결정’이 채택된 이후부터이다.(그 이전에는 특정대상에게만 선별적으로 실시)

이에 따라 치료비와 수술비를 비롯하여 입원비, 요양비, 건강검진비, 예방접종비, 분만비, 불구자를 위한 교정기구비, 보철기 등 의료경비 일체를 개인이 부담하지 않고 치료받게 되었다고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무상치료제는 그들의 선전과는 달리 의료요원의 부족과 시설의 미비, 의료수준의 낙후성, 계층간의 의료시혜차별 등으로 인해 초보적인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주민들은 매달받는 임금(생계비)에서 사회보장비 명목으로 1%, 복지후생비라는 명목으로 10%씩 공제하기 때문에 유료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의사담당구역제는 1명의 의사가 4~5개 작업반 규모(2~3백명)의 구역을 맡는 일종의 순환진료제 방식으로 시작하였는데, 평소에는 소속병원에서 근무하다가 일정한 날을 잡아 한꺼번에 보건의료사업을 펼치므로 정상적인 진료가 불가능하다. 현재 도시지역의 경우 주민 4,000여명을 기준으로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의 전문의들이 조를 짜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형식적인 진료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북한의 모든 의료시설은 국가소유로 국가가 관리하는데, 중앙에 특권층을 대상으로 하는 봉화진료소와 남산병원이 있고, 그외에는 적십자중앙병원, 평양의대부속병원, 김만유병원, 동의중앙병원, 산업병원, 평양산원 등이 있으며, 시(구역)·군 단위에 병원 1~2개씩 리·동에는 2~3개단위로 진료소, 인민병원 등이 있는데 준의사 1~2명이 가벼운 외상치료를 비롯한 초보수준의 의료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85

남녀평등권을 보장받고 있다는 북한 여성들의 가정과 사회에서의 지위와 역할은 어떠한가

일반적으로 북한 사회에서는 마치 여성의 지위가 신장되어 남녀가 평등한 것으로 이해되기 쉽다. 이같은 현상은 북한이 사회주의라는 막연한 이상론과 북한의 일방적인 정치선전으로서 사실이 호도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의 여성정책을 체계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북한의 여성정책은 역사적으로 다음과 같이 전개되었다.

1946년 2월 북한에 공산정권이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전통적인 사회질서가 파괴되었다. 토지개혁, 산업의 국유화 등으로 사회적 생활구조가 전면 바뀌어졌다. 북한은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을 제정(1946.6)하여 여성의 지위를 법적으로 변화시켰다. 우선 여성에게 선거권, 피선거권 등 참정권이 주어졌고 가정에서 남성의 축첩행위를 불법화하여 여성의 지위를 강화시켰다. 그리고 강제결혼을 불법화하여 여성의 결혼권을 확립시켰으며, 사회적으로도 동등한 노동과 보수를 받도록 하는 등 여성의 지위와 역할에서 변화가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어린이 양육면에서도 탁아소를 두어 여성에게 편리하도록 했고 밥공장을 설치하여 부엌일을 줄여주는 등 여성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법적·제도적 조치들을 마련하였다.

이는 분명히 여성의 권리를 신장한 조치로 보여진다. 그런데 이와 같은 조치는 부정적인 효과도 수반되었다. 즉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의무를

부담할 뿐 아니라, 정책적 보호도 받지 못함으로써 여성의 본질적인 권리면에서 부작용이 나타났는가 하면 제도와 현실의 괴리로 인해 권리의 실질적 신장을 보장받지 못하였다.

정치적 권리에서 보면 북한을 지도하는 중앙의 권좌에는 여성이 진출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 최고 권력기관인 노동당 정치국(정위원 10명, 후보위원 8명 내외)에는 여성이 1명(이선실) 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도 엄격한 의미에서 제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형편이며 노동당 핵심권력기구인 비서국(비서 10명)에는 아예 여성이 한명도 없다. 지방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평양을 비롯하여 9도, 2직할시의 당·정 책임자는 전부 남성이다.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여성의 진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여성의 사회적 진출 또한 노동현장에서 남성들과 함께 일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여성은 노동현장에서 남성에 비하여 특별한 보호를 받는 것도 아니며 힘들고 험한 조건에서도 남성들과 같이 노동할 뿐이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아이를 책임지고 길러야 하며 가사노동을 해야하는 등 여성에게는 직장과 가정에서 이중고통을 겪어야 한다.

이뿐 아니다. 폐쇄된 사회, 충성만이 강요된 엄격한 북한식 정치풍토는 가정에서 가장의 지위를 오히려 완고하게 만들었고 여성의 종속성은 그대로 남아있게 했다. 이러한 여성의 불리한 지위는 사회생활에서도 남성에 비하여 뒷전으로 밀리게 된다. 따라서 북한의 남녀평등이라는 선전은 여성의 권리신장이라기 보다는 여성들에게 노동의 의무만을 부과한 것으로서 여권의 신장면에서는 허구적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한다.

(3) 6

북한주민들의 관혼상제 실태는 어떠한가

북한은 가족법 제1조에서 '가족'을 "사회주의 혁명리론의 실습장이며 생산의 최저단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주의 가족관에 따라 북한의 관혼상제 의식은 오늘날 남쪽의 의례와는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혼인 및 장례 등의 대사를 치를 때 이웃, 친척이 상부상조하는 전통이라든가 장례의식으로 화장보다 매장을 선호하는 풍습 등은 남과 북에 공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결혼'에 관해 1990년 10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에서 채택된 가족법 제9조는 결혼연령을 남자 18세, 여자 17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는 청년들이 조국과 인민을, 사회와 집단을 위해 보람있게 일한 다음 결혼하는 사회적 기풍을 장려한다."는 규정에 따라 일반적으로는 남자 30~31세, 여자 28~29세에 결혼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는 김일성이 1971년 6월 21일 사로청 6차대회 연설에서 청년 남녀들이 한창 일할 수 있는 나이에 결혼을 하면 혁명과업수행에 지장을 준다고 지적하면서 "남자는 30세, 여자는 28세가 된 다음에 결혼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언급한 데서 비롯된다.

둘째, '장례'는 사회주의 생활방식에 따라 지극히 간소화되어 있다. 일체의 종교의식은 거부되고 양초나 향이 사용되지도 않는다. 장례식과 매장은 도시의 경우 녹화사업소나 편의협동조합에서 맡아 처리해 주며 농촌에서는 협동농장에서 함께 치러준다. 특권층 간부가 사망했을 때는 장

의위원회가 조직되며 수많은 주민들과 학생들이 동원되어 성대한 장례식이 치러지고 비석도 세워진다. 그러나 묘지는 지정된 공동묘지만 사용할 수 있고 개인이나 문중묘지 등은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

셋째, ‘제사’는 휴전이후 금지되었다가 1960년대 말부터 부분적으로 허용되었지만 제사방식이 ‘사회주의적 제사’라는 새로운 식으로 바뀌었다. 그것은 김일성이 1974년 1월 13일 전국농업대회에서 “제사지내는 것은 죽은 사람을 잊지 않기 위한 것이므로 제사날에 무덤에다 꽃을 가져다 놓던가… 그가 다하지 못한 일을 살아있는 사람들이 마저 하기 위하여 노력하자는 결의를 다지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강조한 아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사상교양의 한 방편으로 허용되어 왔다. 한편, 1980년대 이후에는 추석에 한해서 통행증 없이도 갈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추석성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87

자본주의적 가치관이 확산되면서 북한 주민들의 직업관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최근 북한을 탈출하여 귀순한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 주민들의 직업관은 크게 변하고 있는 듯하다. 즉 과거 북한주민들의 직업관이라면 무엇보다도 당원이 되어 당간부로 진출하여 이른바 혁명의 영웅칭호를 받는 것을 선호했으나, 최근 주민들의 직업관은 현실적으로 개인의 의식주생활에 도움이 되는 직종을 바라는 경향으로 바뀌어 가는 추세이다. 다시 말해서 생활필수품을 생산하는 경공업 분야나 이를 판매 공급하는 편의봉사분야를 선호하며, 외국산 물품을 쉽게 확보하여 이를 암거래함으로써 외화 등 돈을 모을 수 있는 무역상사나 외교관 등이 선호대상 직종이다.

이러한 경향은 북한 청소년들의 진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바, 최근 북한의 고등중학교 6년생들의 대학선택에서도 잘 나타난다. 즉 북한의 많은 고등중학교 학생들 가운데는 장래 상업분야로 진출하기 위해서 평양상업대학(1990.10 장철구 대학으로 개칭)에 입학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전공과목 역시 대외봉사학부, 고려의학부(의약품 취급)가 인기학과이다. 특히 이 대학의 대외봉사학부는 졸업후 호텔종업원이 되며 월급 여액의 5% 정도는 외화로 지급받는 특혜가 있다. 그리고 평양상업대학 이외에 국제관계대학, 경공업대학, 외국어대학 등도 인기대학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이들 학교를 나오면 무역상사나 외교관, 통역 등으로 진출할 수 있으며 외국의 문물, 외화벌이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한편 북한 주민들이 싫어하는 직종은 광산, 어장, 농장, 토목공사장 등 힘든 노동을 해야하는 직업이다. 북한 관계 소식통에 의하면 1980년대 중반부터 농어촌의 청년들이 힘든 일을 싫어하여 도시로 진출하려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북한 당국은 도시의 대학생들로 구성된 3대혁명소조를 농어촌에 파견하여 농촌 청년들의 이동현상을 막으려 했으며 도시의 처녀들을 집단으로 농어촌 등지에 무리배치(집단배치)하거나 농촌청년과의 결혼을 권장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 주민들의 직업관이 변하고 있는 원인은 물론 서구 자본주의·개인주의 의식이 북한사회에 전파된 때문일 수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정책의 실패와 이로 인해 당국이 주민들의 의식주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한 데 기인된 것이며 이로 인한 생활난이 주민들의 직업관을 바꿔놓았다고 볼 수 있다.

88

북한 청소년문화에 서구식 문화가 유입된 실태와 이에 대한 북한당국의 대책은 어떠한가

1980년대이후 북한 주민들의 생활속에 서구식 문화가 확산되기 시작하였고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층에서 이같은 현상은 더욱 두드러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오늘의 북한 청소년 문화속에는 북한식 혁명적 문화와 함께 서구식 개인주의 자유화바람이 공존한다고 느껴진다.

북한 청소년들의 생활에서 나타나는 서구적 문화로는 다음과 같다. 청소년들의 평상시 복장은 남녀구분 없이 양복과 양장차림이 예사이며 사회주의적 복장인 ‘인민복’(노동복)을 입은 모습은 특별한 정치집회나 노동현장에서나 보이는 정도이다. 더욱이 평양 등 대도시의 청소년 가운데는 청바지에 T셔츠를 입고 운동화(농구화형) 대신 구두(비날론)를 착용한 모습도 나타난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두발 역시 장발하는 모습이 흔히 확인되는 등 개인주의 자유화바람이 청소년의 문화속에 확산되고 있는 느낌을 준다. 이뿐 아니라 북한 청소년들은 애정문제, 결혼문제에서도 자유로운 남녀교제나 연애결혼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결혼하여 주택사정이 허락하면 가급적 부모와 떨어져서 독립가정을 이루는 등 핵가족화하는 풍조, 직장에서의 혁명투쟁보다는 가정에서 가족들간의 화목한 생활을 선호하는 가족주의 등 개인주의적 사조가 널리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현상은 북한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주민들의 의식구조 변화

현상의 한 단면이라 할 수 있고, 이러한 변화는 북한 체제의 변화를 촉진 시키는 요인으로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북한 당국은 청소년 등 주민들의 생활공간에 서구화 바람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당·정·군의 모든 조직력을 통하여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우선 청소년들이 소속되어 있는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김일성사회주의 청년동맹)을 통하여 집체교육, 집단훈련을 강화하고 김정일과 체제를 옹호·보위하고 사회주의 우월성을 신봉하게 하며 혁명투쟁에서 선봉대가 된다는 맹세를 거듭 다짐하게 하는 등 정치사상교양을 집중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당국의 노력은 현실적으로 서구식 문화와 가치관의 확산을 방지하기 보다는 부정적인 효과를 놓는다고 한다. 왜냐하면 오늘날 국제정세의 변화와 북한식 혁명체제의 모순을 북한의 청소년들이 잘 알고있으며 따라서 북한의 청소년들도 대세의 흐름에 따라 북한체제가 개화·발전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이다.

89

북한 젊은이들의 결혼관은 어떠한가

북한 젊은이들은 1970년대 말까지만 해도 중매결혼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1980년대부터는 점차 연애결혼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왔으며, 최근에는 이같은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북한 가족법 제8조: '공민은 자유결혼의 권리를 가진다').

실제로 최근 평양, 청진 등 대도시에서는 남녀들의 데이트 장면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그리고 결혼 연령도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의 가족법(1990년 제정) 제9조는 혼인적령기를 남자 18세, 여자 17세로 규정하고 있다. 과거에는 남자 32세, 여자 28세 이상이 되어야 결혼하는 것이 상례였으나, 최근에는 남자 27~28세, 여자 23~24세 정도로 낮아지고 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남자 24~25세, 여자 20~21세에 결혼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배우자 선택의 경우도 많이 바뀌었다. 종래에는 배우자 선택에 있어 당원이나 권력기관(국가안전보위부, 사회안전부 등)에 종사하는 배우자나 또는 그런 집안이 인기였으나(적대계층 배제) 최근에는 젊은 여성들의 경우 해외에 자주 드나드는 외교관이나 무역회사 직원, 선원 같은 직업을 가진 남자들을 선호하고 있으며 또한 운전사, 요리사도 인기다.

그리고 월남자가족의 경우 종래에는 결혼상대자로 기피하는 현상이었으나 최근에는 그들중 해외(미국, 카나다 등)에서 경제적 여유가 있고, 재북가족에게 경제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가정을 택하여 결혼하려는 경

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결혼날짜도 종래의 길흉을 가리는 풍습은 사라졌고, 주로 생산에 지장이 없는 공휴일이나 일요일을 택하고 있는 실정이다.

90

북한 주민들이 남한의 대중가요를 부르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의 대중문화가 북한에 유입되는 경로와 실태는 어떠한 가

북한 주민들사이에 우리의 대중가요가 불리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탈북자들이나 북한을 다녀온 해외동포들에 의해 전해지고 있다. 북한 주민들에 전해졌다는 우리의 대중가요로는 '노란 셔츠입은 사나이', '돌아와요 부산항', '바람 바람 바람', '사랑의 미로', '우리의 소원은 통일' 등이며, 이외에도 분단 이전에 유행했던 '황성옛터', '봉선화' 등도 불리어진다고 한다.

그런데 이와같은 대중가요들은 대체로 가사의 일부가 변조되어 불리어지고 있으며, 이들 가요가 한국의 대중가요라는 사실 또한 모르고 있는 듯하다. 어쨌든 북한에서 남한의 대중가요들이 불리어 진다는 사실에서 우리의 대중문화가 북한사회에 침투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며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북한사회에 남한의 대중가요 등이 전파되는 경로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대체로 해외동포들의 방북시 가요를 불러주는 경우도 있으나, 더 많은 영향을 준 것은 중국연변의 동포들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을 왕래하면서 생필품 등을 사고 파는 행상인들이 우리의 가요를 배워서 북한 주민들에게 쉽게 전파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 북한 주민들은 중국 조선족들의 가요로 믿고 부담없이 배우게 된 듯하며 주민들 상호간에도 전파시킨 것으로 보인다.

91

북한 주민들의 여가생활의 형태와 실상은 어떠한가

북한 주민들은 남한과 같은 여가문화가 존재하지 않는다. 스포츠나 오락을 개인의 도락이나 체력증진, 여가선용 등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집단전체를 위한 공동목적의 달성수단으로 인식한다.

북한에서는 공장, 기업소와 협동농장 등 모든 일터와 직장에 종사하는 사무원, 근로자들은 계획된 일과표에 의해 생활하게 된다. 특히 노동과 생산분야의 종사자는 매일 완수해야 할 작업책임량이 책정되어 있고, 휴일이나 휴가기간에도 각종 회의, 학습, 근로봉사, 군사훈련 등 사회정치 활동에 동원되는 예가 허다하므로 여가시간을 개인이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상태이다.

간혹 직장에서 휴가를 얻으나 이를 여가생활로 활용하기는 어렵다. 또한 여가의 수단이 다양화되어 있지 못할 뿐 아니라 여행의 자유가 없고, 한가족의 휴가 및 방학일정이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한가족이 함께 휴가 여행을 떠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일반 노동자나 사무원들은 분기당 배당되는 휴양권을 타기 위해 모범 노동자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한다. 이렇게 하여 얻은 휴양권은 금강산, 송도원 등 경치 좋은 곳과 주을, 신천 등 온천지역에 위치한 휴양소를 찾는데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100명의 종업원을 가진 공장에 분기당 2~3명분의 휴양권이 할당되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휴양소에 가 볼 기회란 사실상 그만큼 제한된다.

대부분 주민들은 휴가를 받으면 고된 직장생활과 긴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집에서 편히 쉬고 싶어한다. 그리고 집수리 등 가사잡무를 휴가기간에 한다. 평양시에서는 휴가기간에 어린이를 데리고 지하철로 대성산 유희장으로 나들이를 하는 등 어린이를 위해 하루를 보낸다. 지방에서는 오락시설이 없기 때문에 직장사람들이나 동네 사람들끼리 각자 먹을 것을 장만하여 인근 산이나 강가를 찾아 피서를 즐긴다.

취미생활이나 오락수단으로 영화관람이나 음악감상 등이 있으나 이것마저도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등에서 매주 ‘문화의 날’로 정해진 수요일에 단체로 ‘영화실효투쟁’ 이란 명목을 붙여 의무적으로 이루지는 것이 보통이다. 북한에서 일반인들이 가장 손쉽게 즐길 수 있는 오락수단으로서는 장기놀이와 주侪놀이(서양식 카드놀이)가 가장 널리 보급되어 있다.

92

남북한 언어이질화 실태와 극복방안은 무엇인가

분단 50년은 우리에게 언어이질화 50년을 의미하고 있다. 그동안 남북한은 사회 곳곳에서 적지 않은 이질화를 보이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남북언어의 이질화는 점점 심화되고 있어 이 부분의 민족동질성 회복이 시급한 실정이다.

남북한 언어이질화의 근본적 원인은 북한이 평양말을 중심으로 함경도 사투리를 가미한 ‘문화어’를 새로 만든 데 있다. 문화어는 1966년 5월 14일 김일성 교시로 정립되었다. 즉 문화어는 “사회주의 사회 언어발전의 합법칙성에 맞게 건설된 사회주의적 민족어이며, 자연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근로 인민대중이 목적의식적으로 건설한 세련된 언어”라는 것이다. 우리가 언어를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서 그리고 사고의 바탕이며 인품을 가늠하는 척도로 보는 것과 달리 북한은 언어를 공산혁명과 주민동원 및 통치수단으로 간주한다. 이처럼 이질화는 본질적으로 언어관이 다른 데서 비롯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언어정책의 차이도 이질화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북한의 언어정책은 한자폐지, 한글전용과 ‘말다듬기 운동’이라는 어휘정화작업에 역점을 두었다. 그 결과로서의 언어이질화는 어휘분야에서 가장 심각하게 나타난다. 물론 우리 사회의 외래어 남용도 남북 언어이질화에 한 몫을 하고 있다.

언어가 인간의 사고와 행동양식 및 의식구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한간의 언어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마련은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언어이질화의 극복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한 교류확대를 통해 이질화의 심각성을 체감하도록 한다.

둘째, 남북한 언어학자들의 공동연구의 기회를 확대시켜 나가는 것도 하나의 극복방안이 될 것이다.

셋째, 남북간 언어동질화를 위해서 북한은 언어관과 언어정책에 정치적 의도를 포함시키지 않고, 남한은 무분별한 외래어 남용을 지양해야 할 필요가 있다.

93

북한의 언론실태와 그 기능은 무엇인가

북한에도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들은 존재한다. 그런데 이들 언론매체들은 노동당의 혁명노선과 방침을 해설·선전하고 체제의 정당성을 선전하며 남한을 비판하는 일을 주된 임무로 삼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북한에서 발간된 각종 자료에서 확인된다. 북한 사회과학원에서 발간된 ‘백과전서’(6권)에는 북한의 언론이 “김일성 교시와 김정일의 방침을 해설 선전하고 그의 명령과 지시를 응호 관철하며 프롤레타리아독재를 가일층 강화하고 인민들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는데 복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1995년 11월 각급 선전매체들에게 보낸 ‘김정일의 친필 서한’에서도 언론매체는 사상교양과 통제기능을 강화하여 체제결속을 다지는 데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북한의 언론매체는 정치선전의 도구일 뿐, 주민들의 어려운 고충이나 사회 각 분야의 문제들을 지적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말하는 언론의 기능과는 전혀 다르다.

〈신문〉

북한에는 노동당 기관지 ‘로동신문’을 비롯하여 중앙과 지방에 30여종의 신문이 발행 보급되고 있다. 이들 신문들은 모두 당과 행정부, 그리고 이를 산하의 정치신동단체나 문학·예술 선전조직 등이 발간하는 공식매체들이며 개인이 발행하는 신문은 없다.

중앙에는 로동신문(노동당 기관지), 민주조선(정무원 기관지), 평양신문(평양시 인민위원회 기관지), 로동청년(사로청 기관지) 등 9개 일간지와 2종의 주간지가 발행되고 있다. 지방에는 각 도별로 당·정(도행정경제위원회) 기관지가 12종 있으며, 영자신문으로는 매주 토요일마다 발행되는 'The Pyongyang Times'가 있다.

〈방송·통신사〉

북한의 방송선전사업을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은 조선중앙방송위원회이며 그 산하에 3개의 TV방송과 라디오 방송이 송출되고 있다. 조선중앙방송위원회는 편제상 정무원에 소속되어 있으나 그 역할은 당의 선전선동담당비서(비서국)의 지휘아래 각 방송매체의 프로그램 제작, 방송의 지도·감독 등이다. 또한 동 위원회는 각 도의 방송위원회와 군의 방송위원회, 유선방송중계소를 관리·감독한다.

TV방송으로는 조선중앙TV방송국과 오락을 가미한 평양 만수대TV방송국, 대남선전용 개성TV방송국이 있다.

라디오 방송국으로는 중앙에 2개국, 특수방송 2개국, 그리고 11개의 지방방송국 등이 있는데, 이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 평양 FM방송, 그리고 남한사회를 왜곡하고 북한의 정치선전을 위한 '구국의 소리방송' 등이 있다.

통신사로는 정무원 직속의 조선중앙통신사가 있는데, 여기서는 외국의 통신들을 독점 수신하여 북한에 불리한 자료를 골라내고 정치선전에 필요한 부분을 각색하여 각 선전매체에 전파하며 노동당이 정치적으로 대외에 선전할 보도자료를 이 통신사가 맡아서 전송하는 창구역할을 한다.

94

북한의 반종교정책은 과연 변하고 있으며, 진정한 의미의 신앙의 자유는 허용되고 있는가

북한은 해방이후 '종교는 미신이고 아편이다'라는 극단적인 종교부정을 통해 지상에서 유일하게 종교가 없는 나라로 만들었다. 그런데 1980년대 초부터 조선불교도연맹, 조선기독교도연맹 등은 활발한 활동을 통해 마치 북한에 종교가 있는양 대외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는 한마디로 말해 그들의 체제선전과 남한내의 종교단체들과의 통일전선 형성을 목적으로 위장 종교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필요시 국제사회에 대한 정치적 성명발표에 이들 단체를 활용하고 있으며, 반한·친북성향의 해외기독교인들이 북한의 통일정책을 지지하는 집회를 가지면서부터 조선기독교도연맹의 정치적 활동이 유난히 활발해지고 있다.

그리고 공산권의 몰락이 구체화된 1980년대 말부터 평양에 봉수교회, 칠골교회, 장충성당을 신설하고 사찰을 복원하는 등 종교시설을 확대하고 있으며, 비록 형식적이지만 1991년 3월 부활절 예배, 1992년 5월 석탄절 기념법회 등의 종교의식을 거행한 바 있다.

1992년 4월에 개정된 북한헌법 제68조에는 '반종교 선전의 자유' 조항(구헌법 제54조)을 삭제하고,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종래의 원칙적 부정태도에서 종교의 존재를 인정하는 변화된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누구든지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 사회질서를 해치는데利用할 수 없다."는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아

직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와 같은 진정한 신앙의 자유가 허용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관제 종교활동이라고 하더라도 종교가 기능할 수 있는 짹이 움트기 시작했다는 데에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 왜냐하면 북한당국자들의 의도대로 종교가 이용 대상물로만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종교가 정치적으로 이용되기도 하지만 역으로 정치가 종교에 애속되거나 종교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95

북한 주민들의 종교생활 실태는 어떠하며, 북한내에 지하 종교는 존재하고 있는가

오늘날 북한에서 과연 진정한 신앙, 종교생활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다. 그러나 아직 북한에는 진정한 의미의 종교가 존재할 수 없고, 단지 명목상 종교단체와 교회, 사찰, 신도가 존재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해방이후 북한은 '반종교선전의 자유'를 내걸고 종교탄압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1970년대 초부터 종교단체들의 명칭이 다시 나타나고 국제종교행사에 대표가 참가하기 시작했으며,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종교단체들의 활동이 빈번해지기 시작했고, 이를 계기로 북한 당국은 북한에도 종교가 있으며 종교인들이 종교집회를 갖는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선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북한의 조선말대사전(1992년판)에서는 종교에 대한 비난과 비판을 모두 삭제했고, 최근의 문헌이나 언론에서도 종교자체를 비판하지 않고 있다. 이런 변화를 보면서 종교를 용인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아직은 속단하기 어렵다. 북한의 종교단체들이나 종교인들의 활동을 보면 주로 북한의 정책이나 입장을 지지하고, 대남비방 성명서를 발표하는 데 그치고 있으며 순수한 종교활동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종교단체와 종교인들의 활동을 종교별로 살펴보면 천도교는 아직도 북한에서 가장 많은 신도(15,000여명)를 갖고 있으며, 유미영 위원장이 김일성 사망시 장의위원 273명중 39위로 되어 있었고, 최고인민회

의 대의원에 선출된 천도교 청우당원이 22명이나 되고, 지방인민회의에도 300명의 대의원이 활동하고 있고, 북한의 모든 종교단체가 참여한 종교인 협의회를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것이 조선천도교중앙위원회이며 그 협회장도 천도교중앙위원장이 맡고 있다.

불교는 1980년대 중반부터 사찰을 복원하면서 본격화되었다. 1991년 2월에는 김일성이 평양근교의 대성산 광법사를 들러 복원현장을 시찰하기도 했으며, 그후 많은 사찰이 복원되어 현재 60여 개의 사찰이 복원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신도수도 10,000여명에 달한다고 한다. 그리고 400여명의 승려들이 사찰에 상주하지는 않지만 석탄절, 열반절, 성도 절 예불을 집전하고 있으며, 불교학원을 설립해 승려를 양성하기도 한다 한다.

현재 종교인들중 가장 활발한 국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기독교인들이다. ‘조선기독교도연맹’은 1974년 세계교회협의회(WCC)에 가입하려했으나 거부당했다. 그 이후에도 WCC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꾸준히 접촉을 시도했고, 1986년 9월 스위스에서 남한의 기독교 교회협의회(KNCC) 대표들과 만난이래 미국이나 일본 등지에서도 여러번 회합을 갖기도 했다.

평양에 봉수교회(1988년 건립)와 칠골교회(반석교회, 1989년 건립) 등 2개의 교회가 있고, 최근 또하나의 교회를 신축중에 있으며, 앞으로 몇개의 교회를 더 건립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리고 500여개의 가정교회가 있으며, 목사 30여명에 신도수도 10,000여명에 이른다고 한다.

천주교는 개신교나 불교, 천도교에 비해 교인수(700~800여명)도 매우 적고, 조선천주교인협회도 1988년에야 결성되는 등 비교적 늦게 활동을 재개했다. 1988년에 건립된 장충성당에서는 매주 100~200여명의 신도가 모여 약식으로 미사를 올린다고 한다.

북한의 종교교체나 종교에 대한 당국의 태도가 과거에 비해 크게 달라진 것이 사실이다. 물론 북한 종교인들의 활동이 순수한 종교활동 보다는 정치선전에 치우치고 있지만 종교행사도 병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남한의 종교인들과도 교류를 시도하고 있어, 앞으로 북한의 종교계도 조금씩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96

북한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할 때 선발기준은 무엇이며, 학생들은 어떤 학과를 선호하는가

현재 북한에서 대학에 입학하려면 통상 2차에 거쳐 추천을 받아야 하고, 두 차례의 시험을 치뤄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80년부터 대학입학 대상자는 교육위원회의 고등교육부 학생소집국이 주관하는 대학입학 자격고사인 국가판정시험을 3월에 치른다.

대학입학 자격고사제는 대학입학 추천이 학력보다는 출신성분 위주로 이루어 진다는 일반주민의 불만과 인력관리상 모순이 있다는 비난이 일자 시행된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대학진학은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고 2~5년간 직장생활을 하거나 7년 이상의 군복무를 마치고 난 후에 이루어진다. 그러나 특권층 자녀들은 고등중학교 졸업과 동시에 대학진학의 특권이 부여된다.

대학생 선발 약 2개월 전에 각 고등중학교나 직장 등에 대학입학 인원 수가 할당되며, 이곳의 대학추천위원회가 출신성분, 당성, 정치조직생활, 성적 등을 종합평가하여 1차 추천하면, 재차 시·군과 도·직할시 대학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해당 지방대학에서 치르는 입학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각 대학의 학생선발기준은 당성을 고려한 출신성분 1/3, 정치조직생활의 평점 1/3, 시험성적 1/3의 비율로 평가한다. 여기에서 당의 추천이 결정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당·정 간부 등 권력층의 자녀들에게 대학진학의 기회가 넓기 마련이다. 결국 대학진학은 고등중학교의 학업성적이

나 국가판정시험 성적보다는 출신성분이나 당에 대한 충성도에 의해서 결정된다. 고등중학교 졸업과 동시에 대학에 진학하는 소수의 특권층 자녀들을 제외하면 군이나 직장에서 충성도가 인정되어야 대학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학에 진학하게 된다. 대학이나 전공학과의 선택도 입학 당사자의 희망에 따르기보다는 당의 인력양성계획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결정된다.

97

북한 학생들의 과외활동은 어떠한가

우선 과외활동의 개념이 남북간에 차이가 있음을 알 필요가 있다. 우리가 사용하는 과외활동은 학교교육과정의 일환으로서 학생 개개인의 잠재 능력의 개발이 일차적인 목표이고, 그 다음에 사회활동으로 확대된다. 이와 달리 북한의 과외활동은 혁명인재의 양성과 노력동원을 위한 철저한 조직활동이다. 따라서 과외활동의 내용도 우리와 판이하게 다름을 알 수 있다.

북한의 사회주의교육이 육성해야 할 혁명인재는 노동계급으로서의 혁명사상과 현대과학기술로 무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사상적, 조직적으로 단련된 견결한 혁명투사이며 산 정치활동가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청소년들을 백절불굴의 혁명투사, 정치활동가로 키우기 위한 방도로서 학교교육은 교육사업과 조직생활을 밀접히 결합시키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 학생들은 처음에 소년단 조직생활을 하고 소년단 조직생활을 끝마치면 사로청 조직생활을 하며 그다음에는 당 조직생활을 하든지 다른 근로단체생활을 하게 된다.

‘소년단’은 해당연령이 9세부터 13세까지의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 학생이 가입·활동한다. 주요활동은 ‘꼬마 5개년 계획’, ‘소년호 열차’, ‘소년호 비행기’ 등의 무기를 만드는 데 노력봉사를 해야한다. 그리고 녹화 근위대, 모범위생 근위대, 소년단팀의 조성, 토끼사육, 방학중에 소년 선전대를 조직하여 당의 정책과 해설 등의 활동을 한다.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1996.1.17,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으로 개칭)은 14세부터 30세까지의 청소년과 대학생들로 구성되어 있고 월별, 주별로 짜여진 일정에 따라서 각종의 봉사활동이나 생산활동에 참가한다. 주요활동은 당정책과 노선을 일반인민에게 전달하는 당의 후비 대로서 활동한다.

북한의 각급 학교 학생들은 ‘혁명소조’라는 이름아래 사회의 생산활동과 사상선전에 동원되고 있다. 인민학교 학생들로부터 대학생에 이르기 까지 여러가지의 명목으로 각 분야의 생산현장이나 교육장에 파견되어 노동자와 농민을 격려한다.

이상의 조직단체 이외에도 1968년에 시작된 ‘붉은청년근위대’가 있다. ‘붉은청년근위대’의 주요과업은 학생들 사이의 반항요소를 샐출하여 자아비판과 사상교육 활동을 강화하는 데 있다.

98

북한의 교원 양성제도 및 교원에 대한 처우는 어떠한가

북한에서의 교육자는 인민학교에서 대학까지 모두 ‘교원’이라고 불리고 있다. 이 교원을 양성하는 기관으로는 각 도와 시(직할시)마다 2개의 4년제 사범대학과 2개의 3년제 교원대학이 설치되어 있다. ‘제1사범대학’에서는 고등중학교 고등반 교원을, ‘제2사범대학’에서는 중등반 교원을 양성하고, ‘제1·2교원대학’에서는 인민학교 교원과 유치원 교양원을 양성하고 있다. 단 김형직 사범대학은 종전의 평양 제1사범대학을 김일성의 망부의 이름을 따 1975년에 개칭한 것으로 북한의 유일한 5년제 사범대학이다. 이외에 주요 교원양성기관으로 김정숙 사범대학, 삼홍대학이 있다.

한편 대학교원은 교수, 부교수, 상급교원, 교원 및 조교원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들은 3~4년제 과정의 연구원을 거쳐 2년제의 박사원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다. 상급교원까지는 ‘대학평의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위원회 고등교육부장의 내신, 인준을 받으면 승진된다. 그러나 부교수와 교수는 석사학위(연구원 수료)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전공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후, 정무원 직속의 ‘학위학적 수여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심사기준은 출신 및 정치적 성분이 가장 중요시된다.

북한에서 교원에 대한 물질적 처우는 다른 사무직종보다 좋은 것으로 보인다. 교원들이 수행하는 혁명가 양성사업의 중요성에 비추어 보아,

통일문답

교원들이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책임성과 충성심을 유발하고, 그들의 사회적인 위신과 지위를 높여줌으로써 교육성과를 높이려는 까닭이다.

북한은 해방 직후에 교원양성기관 학생들에게 국가장학제도를 실시하였으며(교원대학 학생의 50%, 사범전문대학 학생 전원), 현직 교원 대해서는 식량배급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등 교원에 대한 처우를 높여주었다.

99

북한의 특수교육 및 외국어교육 실태는 어떠한가

북한의 특수교육 및 외국어교육기관으로 과학영재교육을 위해 각 도에 설립된 '제1고등중학교', 혁명유족 및 특권층 자제의 교육을 위한 '만경 대혁명학원'과 '강반석혁명학원', 무용·음악·조형예술·교예 등의 특기자를 위한 예체능전문학교, 외국어를 중점교육하기 위한 '평양외국어학원' 등이 있다.

각 도(직할시)에 설립되어 있는 '제1고등중학교'는 정규 고등중학교과정으로서 1983년 9월 평양제1고등중학교 설립을 시발로 하여 전국에 12개가 설립되어 있고 주로 과학, 수학, 물리분야의 과학자 양성을 위한 교육이 중점 실시되고 있다.

'만경대혁명학원'은 7년제로서 1947년 10월 12일 인민무력부 산하 교육기관으로 설립, 인민학교 졸업후 입학할 수 있고, 입학자격은 혁명 유가족 및 당·정·군 고위간부의 자녀들로서 이들은 입학과 동시에 기숙사에 집단 수용되어 군사조직하에서 교육을 받는다.

'평양외국어학원'은 6년제 고등중학교 과정으로서 노어, 중국어, 일어, 영어 등 8개 외국어를 중점 교육시키고 있다. 기타 각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외국어학원은 9년제로 운영되고 있다.

북한은 1980년 이후 과학기술교육과 함께 외국어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김일성이 과학원 과학자들에게 한 연설(1983. 3. 23) 가운데 외국어 학습을 강조하면서 '당 7차대회가 열릴 때까지 한 가지 이상의 외국어를

완전히 소유할 것' 을 과업으로 제시한 바 있다. 또한 김정일도 1984년 7 월 전국 교육일꾼 열성자회의에 보내는 서한을 통해 "세계 선진 과학기술을 널리 받아들이고 과학문화분야에서 국제적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켜 나가자면 중등일반 교육단계에서 외국어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김일성과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현재 북한에서는 외국어 실력 향상 캠페인이 두드러지게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일성 사후 북한에서 군의 위상과 역할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북한군부의 위상이 김일성 사망과 더불어 두드러지게 부각되고 있다. 그러한 조짐으로 우선 1994년 7월 19일 금수산 의사당에서 진행된 발인식 때까지만 해도 장례의식에 참석한 국가장의위원회 위원의 서열은 최초 장의위원 발표시(1994.7.9)의 서열과 대동소이 하였으나, 그 다음날 김일성광장에서 치러진 추도대회에서는 그 서열에 변화를 보였다. 즉 장례식의 경우 연형목(21번째) 다음에 김기남이 거명되었으나 추도대회 때에는 연형목 다음에 인민군 차수 6명이 들어가고 그 다음 김기남(28번째)이 거명되는 등의 변화를 보였다. 그리고 1994년 9월 8일 만수대 김일성동상 앞에서 거행된 김일성 사망 두달맞이 화환증정식에서는 백학림, 김봉률, 김광진, 김익혁 등 인민군 차수들이 15~18위의 상위서열을 차지함으로써 북한군부의 위상이 크게 부상되고 있음을 직감케 하였다. 왜냐하면 북한에 있어서 각종 국가적 행사에 참가하는 고위인물 거명순위는 곧바로 북한의 권력서열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북한군부의 이러한 위상강화는 김정일이 1995년 새해 첫 행사를 군부대 방문으로 시작하여 연중 여타 부문에 비해 유독 군사부문에 대한 집중적인 정책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1995년도에 이어 1996년도에도 '공동사설'로 대치된 신년사에 이례적으로 군보(軍報)인 '조선인민군' 명의가 들어간 사실에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북한의 주요신문은 노동당 기관지인 '로동신문', 정무원 기관지인 '민주조선', 사

로청 기관지인 ‘로동청년’ 순이다. 그런데 신년사를 대신한 ‘공동사설’에 ‘민주조선’이 제외되고 군보(軍報)인 ‘조선인민군’이 들어간 것이다. 이는 북한에서 군의 위상과 역할이 얼마나 중시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반증해 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또한 내용면에서도 ‘공동사설’은 개방보다는 ‘우리식 사회주의 고수’ 등 보수적 입장을 주장하면서 ‘온 사회에 군사를 중시하는 기풍’, ‘군민일치의 미풍’ 등을 강조하고 있어 군부의 위세를 감지케 한다.

특히 우리의 주목을 요하는 것은 북한의 행정전반에 걸친 김정일의 각종 지시나 명령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의로 발하여지고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1994년 8월 9일 청류다리 건설명령도 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으로 정무원을 포함한 북한 전체에 미치는 내용을 지시한 것으로 북한에서의 군의 위상 내지 역할과 관련하여 시사해 주는 바 크다고 할 것이다.

한편 1980년대 권력부상 과정에서 발표한 김정일의 주요논문들을 분석해 보면, 김정일은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입각한 이른바 ‘계급전쟁 불가피론’, ‘혁명전쟁론’ 등을 기반으로 한 군사우선주의에 집착하고 있다. 이는 김정일이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군부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강하게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는 추론을 가능케 하는바, 이러한 김정일의 군부중시 인식과 함께 북한군부의 위상과 역할이 실질적으로 강화되어 북한의 외교, 경제 등 각종 대내외 정책에 영향을 끼칠 경우 남북관계 발전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101

북한의 전쟁 수행능력은 어느 정도인가

북한은 최근 수년간 계속적인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보이는 등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으면서도 매년 GNP의 20~25%를 군사비에 투입, 교전상태(交戰狀態)에 있지 않는 국가로서는 '군사비/예산' 비율이 세계 최고를 차지하고 있으며 양적인 군사력면에서도 1995년말 현재 병력이 104만여명으로 한국에 비해 약 1.6배이고 장비의 수량면에서 2배 정도의 우세한 군사력을 확보하고 있다.

물론 북한의 군사력은 계속되는 경제침체와 정밀기술과학의 후진성으로 인해 전투장비의 노후화 및 성능의 열세, 현대전 수행태세의 미비, 훈련부족 등으로 전투능력 발휘에 비효율적인 요인을 안고 있으며, 특히 총인구, GNP, 총예산, 군사비 등 전쟁 잠재역량면에서 남한에 비해 열세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점은 북한의 군사정책과 전략이 1960년대 이래 공세적 전력구조 구축에 초점이 맞추어져 추진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즉 북한은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라는 '4대군사노선'을 실천지침으로 하는 군사정책과 '3대혁명역량 강화'에 기초한 '결정적 시기 조성정책'을 추구하고 있으며, 군사전략면에서도 전쟁 잠재역량의 열세를 감안한 선제기습전략, 속전속결전략, 정규전과 비정규전의 배합전략을 기본으로 한 기존의 대남무력적화통일 전략에 변함이 없다.

북한은 이러한 군사정책 및 전략에 입각한 군사적 중점추진 과업으로 ①지상군의 기갑·기계화, 경량화, 기동화를 달성함으로써 ‘속도전’ 및 ‘선제기습’ 능력을 높였고, ②유사시 배합전으로 남한의 전·후방 전역을 동시에 전장화할 수 있을 정도의 대규모 특수부대(10만여명)를 보유하고 있는가 하면, ③전투장비면에서 T-62와 같은 경전차와 수륙양용 경전차의 다량확보, MIG-29기와 장거리 미사일 등 신예무기의 증강 및 화학무기와 같은 대량살상전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④부대 배치면에서도 대부분의 전력을 평양과 원산을 잇는 평원선(平元線) 이남으로 전진 배치(병력 65%, 함정 60%, 항공기 40%)해 놓음으로써 부대의 조정이나 재배치 없이 현위치에서 즉각 공격이 가능하도록 해놓고 있다.

또한 여기에다 현역에 준하는 훈련과 부대편성,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교도대를 비롯한 예비병력까지 고려한다면 북한은 이미 ‘동원된 상태’로 간주되고 있으며, 외부의 지원없이 일정기간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독자적 전쟁수행 능력을 구비한 것으로 평가된다.

102

북한의 준군사조직의 종류와 규모는 어떠한가

북한은 4대군사노선의 하나인 ‘전민무장화’에 따라 14세부터 60세까지 인구의 약 30%를 동원대상으로 한 준군사조직을 구축해 놓고 있는바, 그 종류로는 교도대, 노농적위대, 붉은청년근위대, 인민경비대가 있다.

‘교도대’는 우리의 예비군에 해당하는 북한의 가장 핵심적인 민간군사 조직이다. 만 17세 이상 45세까지의 주민(여자: 17~30세)을 대상으로 행정단위와 직장규모에 따라 사단과 여단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총 병력은 약 160만명이다.

‘노농적위대’는 우리의 민방위에 해당하는 준군사조직으로 41세이상 60세까지의 주민을 대상으로 직장 및 행정단위별 제대로 편성되어 있으며, 대원수는 약 390만명이다.

‘붉은청년근위대’는 고등중학교 5~6학년 남녀학생(15~16세)으로 조직되며 학교단위별로 중대 또는 대대급으로 편성되어 있다. 이들은 방학을 이용하여 7일간 붉은청년근위대 야영훈련소에 입영하여 훈련을 받기도 하는데, 주요임무는 ‘반혁명적 요소’를 제거하여 북한체제를 사수하는 친위대로서 유사시에는 군 하급간부 보완을 위한 후비대·결사대로서의 임무를 수행한다. 현재 약 90만명의 대원으로 조직되어 있다.

‘인민경비대’는 하전사의 경우 정규군 초보대상자 중에서 선발되어 사회안전부 신병훈련소에서 3~4개월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아야 하고, 군관의 경우 경비대 하사관 중에서 선발되어 인민경비대 군관학교 정규

통일문답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주요 임무는 중요지역 및 철도, 해안의 경비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며, 규모는 약 10만명으로 조직되어 있다.

통일문답

통연 96-2-6

인 쇄 일 1996년 2월 15일

발 행 일 1996년 2월 21일

발 행 처 통일원 통일연수원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TEL:901-7123 · 4 FAX:901-7024

표 치 메카디자인그룹

인 쇄 처 현대문예사

〈비매품〉

